최 종
연구보고서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The Effect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s Fishery Sector and Policy Implications

2005. 7.

연구주관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괄연구책임자 : 황 기 형
연 구 원 : 주 문 배
연 구 원 : 정 명 화
연 구 원 : 유 동 규
연 구 원 : 마 창 모
연 구 원 : 한 경 숙

요 약 문

Ⅰ. 제목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Ⅱ.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경제가 다자체제(多者體制)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의 대두와 함께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 판도가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FTA 소외지역이었다는 점과 농어업 등 국내 비교열위 부문의 발발로 FTA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이 세계 각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FTA 추진이 외교통상 분야의 주요 정책현안으로 부상되었으며, 최근에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일본, 아세안,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인도, MECOSUR(남미공동시장) 등 세계 각 지역 혹은 국가와 FTA 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역내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 역시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놓고 역내 국가와의 FTA 추진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특히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질서 및 국가간 경제적 역학관계는 FTA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도 국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역내 국가와의 FTA 체결을 모

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국내 비교열위 산업부문의 반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 환경과 함께 지역주의가 대두하는 현실에서는 우리나라도 수출시장에서의 소외를 피하기 위하여 FTA 체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아세안과 같은 역내 국가는 우선적인 FTA 체결 대상국가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아세안은 2002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어업 생산량의 12.7%를 차지하는 수산거대 세력으로서, 아세안과의 FTA 체결시 국내 수산부문은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아세안과의 FTA 추진에 있어서 수산업과 같이 비교열위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전략을 준비하여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업 발전전략, 수산물 수출입 구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수산부문 협상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Ⅲ. 연구개발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 체결이 국내 수산업 및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FTA 추진시 수산부문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의 수산업 현황 및 잠재력, 수산물 수출입 구조,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등 아세안과의 FTA 추진시 수산부문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둘째, 아세안과의 FTA 체결시 어업생산, 수산물 수급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셋째,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산부문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태국 및 베트남 정부기관 및 수산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아세안 수산업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업 실태와 동향을 분석하는 데에 이용하였다. 또 국내 수산물 수출입 통계자료 및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수산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시장비교우위지수 및 무역특화지수 등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수산업의 경쟁력을 품목별로 평가하였다. 또 수급모형과 수출입모형 추정을 통해 아세안과의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수출입, 어업생산, 소비자 잉여 등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대학 등의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고,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한-아세안 FTA 수산부문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

Ⅳ-1. 아세안의 수산업 실태분석

Ⅳ-1-1. 어업생산 및 수산물 수출입 동향

아세안의 어업 생산량은 2002년도 현재 총 1,689만 톤으로 세계 전체 어업생산량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도 이후 연평균 어업생산 증가율은 3.8%로서 세계 전체 평균 증가율 1.6%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5개국이 2002년도 기준으로 아세안 전체 어업생산량의 88.4%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의 어업생산량 중 양식어업이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양식어업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6.0%로서 포획어업 생산 증가율 3.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 해역에서는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 아세안의 수산업은 포획어업이 정체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양식어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2002년도 기준으로 세계 5위와 8위의 수산대국으로서, 이들 두 나라의 어업생산량이 아세안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이 어업생산에 있어서 세계 20위 이내에 포함됨으로서, 전체적으로 아세안은 세계의 주요 어업 생산국을 포

함한 거대 수산세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수산업의 위상은 중국 수산업의 급격한 성장세에 의해 가려진 면이 있다. 세계 전체 어업생산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도 이후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아세안의 어업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에도 중국 어업의 급성장에 따라 아세안의 상대적 비중이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어업생산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간 14.2%에서 19.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본, 미국,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은 중국과 함께 수산업이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아세안은 세계 수산물 교역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새우의 주요 생산지역이다. 태국은 최근까지 양식새우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 새우양식에 있어서 세계 10위권 이내에 포진하고 있다. 2000년도 기준으로 이들 4개국이 세계 전체 양식새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새우양식이 급격하게 발전하여 그 비중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세안은 참치류 제품의 생산 대국이기도 하다. 2000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참치 생산국이었으며, 그 뒤를 일본, 중국이 잇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필리핀의 참치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수산전문가들은 필리핀이 2020년까지 세계 제1의 참치류 생산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밖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참치류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은 현재 세계 제일의 참치 통조림 생산국가이다.

아세안에는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틸라피아 양식이 매우 발달해 있다. 2000년도 현재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중국, 이집트 다음으로 많은 틸라피아를 생산하고 있다. 그밖에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해조류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전복양식이 시도되고 있다.

아세안은 세계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약 15%, 수입에 있어서는 4% 정도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 2002년도까지 세계 제일의 수산물 수출국이었던 태국의 경우에는 수산물 수출이 전체 농수산물(임산물 제외)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상품 수출의 6.4%를 점하고 있다.

아세안의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새우 제품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새우 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참치 통조림의 수출 비중도 15%에 달한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새우 냉동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45%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냉동어류, 신선냉장 어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새우류와 참치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참치통조림과 황다랑어 선어 등 참치관련 제품의 수출이 전체의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새우관련 제품의 수출도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조류 양식이 크게 발전하여 중국 등으로의 해조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새우제품의 수출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그밖에 두족류 제품과 어분, 관상어 등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

Ⅳ-1-2. 한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수산물 교역 현황

우리나라의 아세안 수산물 수입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총 141천 톤, 328백만 달러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규모는 2004년도 현재 59천 톤, 54백만 달러 정도이다. 아세안과의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27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는 태국으로서, 2004년도에 아세안 전체 한국산 수산물 수입액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태국은 세계 제1의 참치통조림 생산국으로서, 한국으로부터 원료용 다랑어를 대량 수입하였다. 한편 한국으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베트남으로서, 2004년 우리나라에 대한 아세안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45%를 차지하였다. 베트남은 한국에 쭈꾸미, 낙지 등 두족류와 쥐치포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그 다음은 태국으로 한국에 새우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2004년도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액 중 03류(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비중이 78.8%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 16류(조제품)의 비중이 18.9%에 이른다. 03류 중 장거리 수송으로 신선도 유지가 어려운 활어와 선어(신선·냉장 어류)의 수입은 0.5% 이하에 불과한 반면, 갑각류와 연체동물, 그리고 피레트, 어육과 같은 어류 가공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새우관련 제품이 전체 아세안산 수산물 수입액의 40%에 근접하며, 냉동 어류가 약 20%, 오징어, 낙지, 쭈꾸미 등의 두족류가 약 30%, 그리고 쥐치포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활선어 상태의 갑각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이 품목은 2004년 아세안으로부터의 전체 수산물 수입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연평균 39.5%의 폭발적인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수입급증 품목은 바지락(염장), 기타 연체동물(염장), 연어 조제품, 피조개(신선/냉장), 어류즙, 낙지(냉동) 등이다.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수출하는 주요 수산품목으로는 다랑어류 제품으로서, 대아세안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Ⅳ-2. 아세안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

국가간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 상대가격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여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국가간 상대적인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무역특화지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 간에 국제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각 수산품목별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며, 시장비교우위지수는 아세안산 수산물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그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시장에 나타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비용과 가격에 미치는 수많은 요인의 변화에 의해 시기적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즉 지표가 갖는 의미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무역특화지수를 바탕으로 아세안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랑어류 제품을 제외하고는 경쟁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 지역으로부터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못한 수산가공품이 주로 수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관세 인하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국내 연근해 어업이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다랑어류 제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이 매우 강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아세안 FTA 체결이 국내 원양어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횟감용 및 가공용 다랑어류의 교역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 수출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통조림 등 다랑어류 가공품에 있어서는 아세안이 한국에 대해 수출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공원료용 다랑어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양허하고 다랑어류 가공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미양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세안은 그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다. 한-아세안 FTA 협상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산부문의 상품양허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바탕으로 아세안으로 수입되는 수산품목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는 최근 들어 아세안 국가로부터 오징어, 갑오징어 등 연체동물 관련 품목과 쌍각 조개류 관련 품목, 활·선 상태의 새우제품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는 현재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체동물류 품목의 수입비중 증가는 국내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바지락, 피조개 등의 조개 제품과 활·선어 상태의 새우제품의 수입비중 증가도 국내 관련 양식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Ⅳ-3. 한-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분석

Ⅳ-3-1. 아세안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산물 품목 수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며, 그 뒤를 이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순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 가운데 역외국에 대한 관세율 적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태국으로써 역내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또는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40~60%의 고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산물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01류, 02류, 05류, 12류, 13류에

대해서는 역내국과 역외국에 모두 무차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지만 03류의 0305(건염훈)류와 0306(갑각류)류에 대해서는 역내국은 0% 또는 5%를 적용하고 역외국은 0%, 7%, 8%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류(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의 1603류는 역외국에 대해서 역내국의 4배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1604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어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는 역내국은 0% 또는 5% 관세를 적용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0%, 5%, 6%, 8%, 20% 등 5등급의 관세율로 분류해 적용하고 있어 역외국 차별이 가장 크게 적용되고 있다.

아세안 6개국의 03류는 전체 수산물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03류 품목수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순이다. 하지만 전체 수산물 대비 03류의 비중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미얀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03류의 적용관세율은 역내국에게 대해서는 아세안 선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는 무관세 또는 3%, 5%의 저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아세안 후가입국인 베트남는 역내국에 대해서는 15%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역외국에 대해서는 아세안 선가입국, 후가입국에 상관없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태국은 03류에 대해서 일괄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태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역외국은 아세안 경제무역지역으로 가장 큰 차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베트남이 10%, 3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은 역외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가장 세분화시켜서 부과하고 있다.

Ⅳ-3-2. 한국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

현행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종가세 중심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극히 일부 물품에 한하여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종량세, 종가세와 더불어 종가종량선택세와 종가종량복합세(병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대비된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식품의 경우 농산물의 곡류, 서류, 채소류, 특작류, 축산물의 천연꿀, 임산물의 산림부산물, 수산물(종가종량선택세) 등이며, 공산품의 경우는 영화용 필름과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전체 수입품의 0.2%에 지나지 않아 그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종가세 위주의 관세체계는 관세운영이 투명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저가·저질의 수입급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조정관세품목 중 7개 품목에 종가종량선택세 제도를 도입·운영하였으나,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입관리 및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조정관세제도는 수산물 이외에도 일부 식료품 및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수산물에 부과되는 조정관세는 기본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03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HS품목은 총 406개 품목이다. 그 중에서 03류가 265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6류 66개(17%), 12류 39개(9.8%)로 3개 부류가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406개 수산물 품목(HS 분류)의 기본관세는 3%~5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7.58%이다. 그 중 92%에 해당하는 373개 품목이 중심 세율인 8%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전체 수산식품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 (HS 03류, 265개 품목)는 3단계(5%, 10%, 20%)의 관세율 구조로 매우 단순하며, 그 중에서 굴치패(0307-10-1010) 1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10%(100개), 20%(164개)라는 2단계의 균등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산가공식품류인 16류는 관세율 20%를 적용받는 품목이 63개, 30%의 관세율에 해당하는 품목이 3개로 다른 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한국의 전체 수산물 가운데 03류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03류의 품목 수는 265개이며 수입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 구조는 9단계이며, 고차 가공될수록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실행평균 관세율은 18.3로써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적용된다. 특히, 0305류인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의 관세율은 다 평균 관세율보다 월등이 높은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가공수산물의 경우,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저질의 저가 수산물 수입은 제한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Ⅳ-3-3. 아세안의 수산물 비관세제도

아세안의 비관세제도는 국가별로 품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수입허가제, 수입승인제, 수산물 정밀검사 요구, 기술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아세

안의 특정상품이 CEPT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품목이 아세안 역내에서 제조되어 아세안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아세안 특혜원산지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비관세 장벽은 직접 수입제한조치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베트남의 비관세제도도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수입허가 대상품목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수입허가제도(Approval Permit)가 대표적인 수입규제 장벽이다. 말레이시아는 총 관세대상품목의 약 17%가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허가 기준이 모호하고 수입허가권을 가진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태국은 정부조달 측면에 비관세장벽이 집중되어 있고 기술장벽, 투자장벽에서 외국인 차별이 두드러진다. 정부조달시 입찰에서 사후까지 겹겹이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실상 자국산 원자재 사용, 자국산 업체와의 제휴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사업법, 외국인 지분한도 축소, 산업표준원 인증 획득 요구 등 각종 명문화된 규제 장치가 비관세 장벽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비관세 제도는 주로 정부조달, 서비스, 투자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필리핀은 특정제품에 대한 수량제한 및 사전 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Ⅳ-3-4. 아세안 FTA와 원산지 규정

아세안은 외국인 투자유치확대와 역내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아세안 자유무역지대(FTA)를 강화・발전시켜 왔다. 1992년 1월에는 '아세안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기본협정'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공동특혜관세(CEPT) 협정'이 체결되었다.

아세안의 특정상품이 CEPT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품목이 아세안 역내에서 제조되어 아세안 특혜원산지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CEPT의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개 국가 또는 아세안내 부가가치비율의 누계가 40% 이상이어야 한다. AFTA 출범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역외국가의 상품이 관세가 거의 없는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고관세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원산지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

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원산지비율과 관련하여 아세안내 40%와 최종 수출국 25%의 원칙을 요구한 반면, 싱가포르는 아세안내 부가가치 누계 40%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AFTA 출범이전에 적용되던 특혜무역협정(PAT)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CEPT협정 제2조 4항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싱가포르가 주장한 역내 부가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 : RVC) 40% 이상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아세안 컨텐츠의 RVC 계산방식은 어느 제품의 제조를 위해 수입된 비아세안 재료의 가격과 원산지불명의 재료의 가격의 합계액을 FOB가격으로 나누어, 이 값이 60%미만이면 해당제품은 아세안원산지로 간주된다. 그러나 수산부문의 경우 가공품보다는 원어상태로 수출·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원어상태의 수산물의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AFTA(아세안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지역 내 관세가 축소됨에 따라 CEPT 협정을 활용한 무역이 급증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2003년 CEPT 협정을 통한 수출이 250%나 증가하였다.

Ⅴ-5. 한-아세안 FTA의 수산부문 영향분석

Ⅴ-5-1. 관세인하의 사회경제적 영향

FTA에 따라 물품 관세가 인하될 경우, 대체적으로 해당 물품의 소비는 증가하고 국내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되고, 생산자 잉여와 정부의 관세 수입은 감소하게 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즉 관세 인하는 순수 후생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는 경제의 완전고용 상태와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에 완전대체성을 가정한 경우이다. 현실적으로는 수산업에 고용되었던 생산요소가 이탈될 경우 다른 생산활동에 재고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므로, 생산 감소로 이탈된 생산요소

가 전량 유휴화된다면 사회적으로 그만큼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어선 등 생산요소가 생산활동에서 이탈될 경우 유휴화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관세인하에 따라 국내생산이 줄어들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도 잉여가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다수 어업인들의 실업 발생으로 지역 정주체제가 위협받고 도시로의 이주가 발생하는 등 사회가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Ⅴ-5-2. 수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

FTA 체결에 따라 아세안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고 가정할 경우, 아세안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 연간 3,500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금액으로는 연간 1,800만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아세안에서 수입한 연평균 수입액의 7% 수준이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은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 쥐치포(통조림외 조제품), 갑오징어(냉동) 등으로, 이들 3개 품목이 전체 수산물 수입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수입량이 많지 않지만 관세 철폐로 인해 새로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건조 멸치, 새우와 보리새우(염장, 염수장), 기타 연체동물(염장, 염수장), 냉동 황다랑어 등으로 분석되었다.

FTA 체결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일부 수산품목의 수입이 급증한다 하더라도,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을 제외하고는 국내 어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무역통계에 나타난 품목이 국내생산 품목과 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간에는 가공단계와 신선도, 맛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장이 서로 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국내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어서, 수입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단 기간에는 국내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상당수에 이른다. 즉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다수의 수산식품은 시장에서 국내산보다는 다른 국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식품과 일차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산 양식새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의 경우에는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증가가 국내 어업생산을 연간 137억원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Ⅴ-5-3.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은 연간 100만 달러, 1,400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연평균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액의 2%에 해당한다. 이처럼 수입증대 효과에 비해 수출증대 효과가 작은 것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아세안의 수산물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데다, 우리나라가 현재 주로 수출하는 품목의 관세율은 5%에 불과해 관세철폐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Ⅵ-6. 한-아세안 FTA 수산부문 대응방안

Ⅵ-6-1. 상품양허안 설정

앞에서 수행한 수산품목별 경쟁력 분석 및 FTA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와 품목별 연간 수입금액,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규모, 품목별 국내생산액 및 종사자수 등을 참고하고, 아세안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체계 및 소비형태에 관해 별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아세안과의 FTA 협상시 제시할 수 있는 수산부문의 민감품목 34개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새우관련 제품, 다랑어류 제품, 멸치가공품, 오징어 가공품, 꽃게 제품, 낙지 및 쭈꾸미 등의 연체동물 제품, 바지락, 피조개 등의 조개류 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또 이와 별도로 향후 국내어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일본과 중국과의 FTA를 고려하여,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50개 품목을 선정하였는데, 활어 10개 품목, 선어 11개 품목, 냉동 어류 4개 품목, 어류 가공품 5개 품목, 패류 및 연체

동물 10개 품목, 그리고 해조류 제품 10개 품목 등이 포함되었다.

한-아세안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이 제시할 수산부문의 상품 양허안에는 수입 급증에 따라 국내 어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34개의 민감품목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전략적 보호품목은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대해 제시할 전체 민감품목 바스켓 중 수산부문에 배당되는 품목 수에 따라 그 중 일부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Ⅵ-6-2. 기타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방향

이러한 상품 양허안 외에 수산물 교역과 관련된 비관세제도에 대한 협상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 협상시 수산부문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원산지 기준과 위생・검역관련 규정, 통관절차 등이다.

먼저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아세안 측은 A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40% 이상)을 관철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HS code 6단위의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산물에 있어서는 세번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격한 HS code 2단위 기준의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데, 이 경우에도 03류 품목에서 16류 품목의 세번 변경은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수산가공업이 발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원산지 판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 사례를 볼 때, 아세안측이 한국 측이 제안하는 완전생산 기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끝까지 부가가치 기준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이 한-아세안 FTA 협상 타결을 지연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아세안 측이 농・수산물에 대해 끝까지 부가가치 기준을 고수할 경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완전생산 기준에서 HS 코드 2단위의 엄격한 세번변경 기준 적용(단, 03류에서 16, 21류 등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예외규정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제안도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되 기준 부가가치율을 50%

이상으로 최대한 높이고, 원산지 확인과정을 가급적 철저히 적용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원산지 규정과 함께 수산부문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위생·검역 관련 규정이다. 아세안 측은 우리나라의 위생·검역 규정을 완화하여 아세안 국가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식품 위생·안전에 관한 규제강화로 수산물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정책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원산지 기준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측으로서는 원산지 판정규정과 연계하여 협상에 임하더라도,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위해 위생검역 기준에 있어서 아세안 측에 양보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Summary

(영문요약)

Ⅰ. Title

Effect of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s Fishery Sector and Policy Implications

Ⅱ. Reseach Background and Objectives

The ten ASEAN-member countries, as a whole, are one of major powers in the world fishery sector, which account for about 13% of world total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and 15% of world total trade of fishery products. They have been major sources of fishery products imported to Korea, accounting for 15% of Korea's total imports of fishery products as of the year 2004. In this regard, entry into the force of FTA between two parties would necessarily introduce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s fishery sector. This study is accordingly carried out to develope possible options for Korea to make in negotiations for FTA with the ASEAN to minimize negative impact on the Korea's fishery sector due to liberalization of trade.

Ⅲ. Results of Research

Korea and major ASEAN-member countries are turned out to be largely complementary to each other in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according to Trade Specialization Index analysis of each fishery commodity. The ASEAN-member countries tend to have

competitive advantages in processed products, while Korea in live, fresh and chilled products. Both parties, however, compete in trade of tuna and tuna-like products.

ASEAN-member countries have been rapidly gaining market shares in Korea of some molluscs products such as squid-, cuttlefish-, and baby clam-based ones. Thailand and Philippines recently introduced live, fresh and chilled prawn and shrimp into the Korean market owing to newly developed transportation method which met the cost-efficiency requirement. Imports of live, fresh and chilled prawn and shrimp from those countires to Korea have recently skyrocketed, threatening the local shrimp farmers's interests.

ASEAN FTA tariff structure of fisheries products shows that Singapore and Brunei apply zero tariff rate to all imports. Malaysia has a plenty of fisheries and fisheries products in tariff table within ASEAN, followed by Thailand, Philippine, Indonesia, Vietnam and Myanmar.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 which is signed in Singapore on 28 January 1992 reduced their tariffs on intra-regional trade to no more than five percent for all products in the Inclusion List or removed them altogether. Among ASEAN member countries, Thailand imposes 40~60 % of tariff rates on non-ASEAN countries, which is the applied highest tariff rate to non-ASEAN, but applied zero to 5% of tariff rate to ASEAN countries.

ASEAN has a different type of non-tariff measures. Specifically, there are import licensing, import permit, prohibited import, quantity control measure prohibition, quota for sensitive fisheries categories and technical measures.

Removal of tariffs is expected to cause trade of fishery products between both parties to rise moderately. According to Import- and Export-demand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mports of ASEAN-produced fishery products to Korea would increase by 7%, and exports of domestically produced fishery products to the ASEAN region by 2% due to removal of tariffs.

Effect of increased imports of fishery products from ASEAN countries would not induce significant impact on domestic production of fishery products, except for farmed shrimps which compete with ASEAN-produced live, fresh and chilled prawn and shrimp. With a tariff on this product removed, reduction of annual incomes from farming shrimps is estimated up to 13,700 million Wons, corresponding to 14 million US dollars.

Based on all the analyses made so far, this study finally proposed a list of fishery commodities to be protected from tariff concessions, which includes 34 items.

<CONTENTS>

Summary ····· xvii

Chapter 1 Introduction ····· 1

Section 1. Background and Objectives ····· 3

Section 2. Scope and Approach ····· 5

Chapter 2 Current Status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in ASEAN Region ····· 7

Section 1. Overview of ASEAN Economies ····· 9

Section 2. Fisheries and Aquaculture of ASEAN Countries ····· 13

Section 3. Trade of Fishery Products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 21

Section 4. Recent Development in ASEAN Fishery Sector ····· 30

Section 5. Korea's Direct Investment in ASEAN Fishery Sector ····· 39

Chapter 3. Competitiveness of ASEAN Fisheries and Aquaculture ····· 43

Section 1. Methodologies ····· 45

Section 2. Measuring Competitiveness of Fishery commodities ····· 49

Section 3. Summary and Implication ····· 61

Chapter 4. Analysis of Korea-ASEAN Fisheries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 ····· 63

section 1.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ASEAN fisheries tariff system and tariff rate structure ····· 65

section 2.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ASEAN Fisheries non-tariff measures ····· 79
section 3.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 118

Chapter 5. The Effect of Korea-ASEAN FTA on Korea Fishery Sector ····· 121
Section 1. Socio-Economic Impact of Tariff Reduction ····· 123
Section 2. The Effect of Korea-ASEAN FTA ····· 125

Chapter 6. Concession Alternatives ····· 133
Section 1. Agenda and Issues ····· 135
Section 2. Alternatives for Tariff Concessions ····· 136
Section 3. Alternatives for Other Concessions ····· 166

Chapter 7. Conclusions ····· 169

References ····· 175

Appendix ····· 179
<Appendix 1> ····· 181
<Appendix 2> ····· 192

<제목 차례>

요약문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 5

1. 연구방법 ····· 5
2. 연구내용 ····· 6

제2장 아세안 수산업 실태 분석 ····· 7

제1절 아세안 국가의 개황 및 FTA 추진 실태 ····· 9

1. 아세안 국가의 경제 개황 ····· 9
2. 아세안의 FTA 추진 실태 ····· 11

제2절 ASEAN의 수산업 실태분석 ····· 13

1. 생산 동향 ····· 13
2. 수출입 동향 ····· 17

제3절 한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수산물 교역 현황 ····· 21

1. 개요 ····· 21
2.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동향 ····· 23
3. 아세안으로의 수산물 수출 동향 ····· 28

제4절 아세안 주요 국가의 수산부문 최근 동향 ····· 30

1. 베트남 ····· 30

2. 태국 ····· 33
3. 인도네시아 ····· 37
4. 필리핀 ····· 38
5. 말레이시아 ····· 39
제5절 아세안 수산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동향 ····· 39

제3장 아세안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 ····· 43

제1절 방법론 ····· 45
1. 무역특화지수(TSI) ····· 46
2. 시장비교우위지수(MCA) ····· 48
제2절 품목별 경쟁력 측정 ····· 49
1.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별 경쟁관계 분석 ····· 49
2.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품목별 경쟁력 분석 ····· 53
제3절 분석결과 종합 ····· 61

제4장 한-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분석 ····· 63

제1절 한-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 ····· 65
1. 아세안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 ····· 65
2. 한국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 ····· 70
제2절 한-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비관세제도 ····· 79
1. 아세안의 수산물 비관세제도 ····· 79
2. 아세안 국가별 수산물 관련 비관세 제도 ····· 80
3. 아세안 FTA와 원산지 규정 ····· 93
4. 아세안 FTA의 국가별 HS 품목별 수산물 비관세 제도 ····· 97
제3절 아세안 수산물 무역제도의 시사점 ····· 118

제5장 한-아세안 FTA의 수산부문 영향분석 ····· 121

제1절 관세인하의 사회경제적 영향 ····· 123

제2절 한-아세안 FTA에 따른 영향 분석 ····· 125

1. 모형설정 ····· 125
2. 분석결과 ····· 126

제6장 한-아세안 FTA 수산부문 대응방안 ····· 133

제1절 현재까지의 협상 경과 및 쟁점사항 ····· 135

제2절 수산부문 상품 양허안 ····· 136

1. 민감품목 선정기준 ····· 136
2. 품목별 아세안으로부터의 연간 수입금액 ····· 138
3. 품목별 우리나라 수출액 ····· 141
4. 어종별 국내 생산금액 ····· 142
5. 품목별 국내 종사자 수 ····· 146
6. 품목별 경쟁력 지수 ····· 147
7. 아세안산 수입 수산품목의 국내 품목과의 경쟁도 평가 ····· 147
8. 수산부문의 민감품목 선정 ····· 161

제3절 기타 쟁점에 대한 협상방향 ····· 166

제7장 요약 및 결론 ····· 169

참고문헌 ····· 175

부 록 ····· 179

<부록 1> ····· 181

<부록 2> ····· 192

<표 차례>

<표 2-1> 아세안 국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2003년 기준) ····· 10
<표 2-2> 우리나라의 교역 현황(2003년) ····· 10
<표 2-3> 아세안 회원국별 FTA 추진 동향 ····· 12
<표 2-4> 아세안 회원국별 어업생산 동향 ····· 13
<표 2-5> 2002년도 국가별 어업 생산량 순위 ····· 14
<표 2-6> 세계어업 생산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변화 ····· 15
<표 2-7> 중국을 제외한 세계어업 생산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변화 ····· 15
<표 2-8> 양식새우 생산량 국가별 순위(2000년) ····· 16
<표 2-9> 참치류 생산 국가별 순위(2000년) ····· 17
<표 2-10> 세계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변화 ····· 17
<표 2-11> 세계수산물 수입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변화 ····· 18
<표 2-12> 베트남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 18
<표 2-13> 태국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 19
<표 2-14>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 19
<표 2-15> 필리핀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 20
<표 2-16>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 20
<표 2-17> 한국과 아세안간 수산물 교역 동향 ····· 22
<표 2-18> 품목그룹별 우리나라의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실적 (2004년) ····· 24
<표 2-19> 아세안으로부터의 주요 수산물 수입 품목(2004년) ····· 25
<표 2-20> 주요 수산물 수입 품목의 국가별 비율(2004년) ····· 26
<표 2-21>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급증 수산품목 ····· 27

<표 2-22> 품목그룹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실적(2004년) ····· 28
<표 2-23> 대아세안 주요 수출 품목의 국가별 비중(2001~2003 평균) ····· 29
<표 2-24> 베트남의 주요품목별 수출 현황 ····· 31
<표 2-25> 베트남 수산업 현황 ····· 31
<표 2-26>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실적(1968~2005. 8.) ····· 40
<표 2-27> 1968년 이후 아세안 국가의 어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 ····· 41
<표 2-28> 1991년 이후 아세안 국가의 어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 ····· 42
<표 2-29> 2001년 이후 아세안 국가의 어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 ····· 42
<표 3-1> 무역특화지수의 평가기준 ····· 47
<표 3-2>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별 국가간 경쟁관계 판단기준 ····· 47
<표 3-3>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베트남의 경쟁 품목 ····· 49
<표 3-4>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태국의 경쟁 품목(2004년) ···· 50
<표 3-5>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쟁 품목 ····· 51
<표 3-6>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필리핀의 경쟁 품목 ····· 52
<표 3-7>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쟁 품목 ····· 53
<표 3-8> 베트남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 ····· 54
<표 3-9> 베트남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 ····· 54
<표 3-10> 태국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 ····· 55
<표 3-11> 태국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 ····· 56
<표 3-12>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 ····· 57
<표 3-13>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 ····· 58
<표 3-14> 필리핀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 ····· 59
<표 3-15> 필리핀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 ····· 60
<표 3-16> 말레이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 ····· 60
<표 3-17> 말레이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 ····· 61

<표 4-1> ASEAN 회원국의 CEPT 관세인하품목(2003년) ····· 66
<표 4-2> ASEAN 회원국의 역내 관세율 인하추이 ····· 67
<표 4-3> ASEAN 6개국의 수산물 관세 총 품목수와 적용관세율 ····· 68
<표 4-4> 아세안 6개국의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03류 기준) ····· 69
<표 4-5> 한국의 수산물 전체 관세 체계 (HS 2단위 기준) ····· 74
<표 4-6> 03류의 한중일 수산물 관세 체계 비교 (HS 4단위 기준) ····· 74
<표 4-7> 03류의 실행 관세율 (HS 4단위 기준) ····· 75
<표 4-8> 아세안 주요국의 03류 수산물의 관세율체계 ····· 76
<표 4-9> WTO의 비관세 장벽 분류 ····· 79
<표 4-10>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제도 유형 ····· 80
<표 4-11>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제도 유형 ····· 85
<표 4-12> 태국의 비관세제도 유형 ····· 87
<표 4-13> 필리핀의 비관세제도 유형 ····· 90
<표 4-14> 브루나이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98
<표 4-15> 인도네시아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101
<표 4-16> 캄보디아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105
<표 4-17> 라오스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105
<표 4-18> 말레이시아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109
<표 4-19> 필리핀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110
<표 4-20> 싱가포르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111
<표 4-21> 태국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112
<표 4-22> 베트남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113
<표 5-1> 주요 품목별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변화 ····· 127
<표 5-2> 주요 품목별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변화 ····· 131
<표 5-3> 관세철폐 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가능 품목 분석표 ····· 132

<표 6-1> 한-아세안 FTA3차협상에서 한국측이 제안한 상품양허방식 ····136
<표 6-2> 한-아세안 FTA 수산부문 민감품목 선정 방법 ····138
<표 6-3> 아세안으로부터 연평균 10만 달러 이상 수입되는 수산품목 ····139
<표 6-4>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수산품목 ····141
<표 6-5> 국내 연근해어업 주요 생산어종(2002~2004년) ····144
<표 6-6> 국내 양식어업 주요 생산어종(2002~2004년) ····145
<표 6-7> 우리나라 원양어업 주요 생산어종(2002~2004년) ····145
<표 6-8> 주요 품목별 국내 종사자수(2001년) ····146
<표 6-9> 연도별 전국 새우양식 현황 ····148
<표 6-10> 지역별 새우양식 현황(2004년) ····149
<표 6-11> 새우제품(냉동) 국가별 수입실적 ····150
<표 6-12> 새우제품(산 것, 신선, 냉장) 국가별 수입실적 ····150
<표 6-13> 새우제품(염장, 염수장) 국가별 수입실적 ····151
<표 6-14> 꽃게(산 것, 신선냉장) 국가별 수입실적 ····152
<표 6-15> 냉동 꽃게 국가별 수입실적 ····152
<표 6-16> 어류 피레트 및 어육제품 (HSK 코드 0304류) 국가별
수입실적 ····156
<표 6-17> 건조·염장 어류제품 (HSK 코드 0305류) 국가별 수입실적 ····157
<표 6-18> 낙지 냉동품 국가별 수입실적 ····158
<표 6-19> 쭈꾸미 냉동품 국가별 수입실적 ····158
<표 6-20> 한국측의 수산부문 민감품목 중 초민감품목 1차 선정 결과
(13개 품목) ····161
<표 6-21> 한국측의 수산부문 일반 민감품목 1차 선정 결과(21개 품목) ···162
<표 6-22> 국내 조정관세 부과대상 수산품목 ····164
<표 6-23>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수산품목(50개 품목) ····164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체계 ····· 6
<그림 5-1> 관세인하의 영향 ····· 124
<그림 6-1> 국내 갈치 생산 추세 ····· 154
<그림 6-2> 국내 가오리류 생산 추세 ····· 155
<그림 6-3> 국내 전갱이류 생산 추세 ····· 155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세계경제가 다자체제(多者體制)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자유무역협정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의 대두와 함께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03년 5월 현재 총 153개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국가간 혹은 지역(regional) FTA 협상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 2005년 말 경에는 300여개의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FTA 체결국간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31개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에는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2002년에 95.8%에 이르러, FTA 비체결국과의 무역은 사실상 소멸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TA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세계 무역 판도가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FTA 소외지역이었다는 점과 농어업 등 국내 비교열위 부문의 발발로 FTA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이 세계 각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FTA 추진이 외교통상 분야의 주요 정책현안으로 부상되었으며, 최근에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일본, 아세안,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인도, MECOSUR(남미공동시장) 등 세계 각 지역 혹은 국가와 FTA 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역내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 역시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놓고 역내 국가와의 FTA 추진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특히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을 포함하는 중화 경제권을 형성하고,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아세안 및 한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즉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질서 및 국가간 경제적 역학관계는 FTA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도 국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역내 국가와의 FTA 체결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국내 비교열위 산업부문의 반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 환경과 함께 지역주의가 대두하는 현실에서는 우리나라도 수출시장에서의 소외를 피하기 위하여 FTA 체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아세안과 같은 역내 국가는 우선적인 FTA 체결 대상국가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아세안은 세계 전체 어업 생산량(2002년)의 12.7%를 차지하는 수산거대세력으로서, 아세안과의 FTA 체결시 국내 수산부문은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아세안과의 FTA 추진에 있어서 수산업과 같이 비교열위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전략을 준비하여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업 발전전략, 수산물 수출입 구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수산부문 협상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 체결이 국내 수산업 및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FTA 추진시 수산부문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의 수산업 현황 및 잠재력, 수산물 수출입 구조,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등 아세안과의 FTA 추진시 수산부문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둘째, 아세안과의 FTA 체결시 어업생산, 수산물 수급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셋째,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산부문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하되, FTA 및 수산관련 전문가, 국내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대학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각 연구 내용과 관련된 자문을 요청하여 연구과정에 적극 반영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태국 및 베트남 정부기관 및 수산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아세안 수산업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업 실태와 동향을 분석하는 데에 이용하였다. 또 국내 수산물 수출입 통계자료 및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수산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시장비교우위지수 및 무역특화지수 등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수산업의 경쟁력을 품목별로 평가하였다. 또 수급모형과 수출입모형 추정을 통해 아세안과의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수출입, 어업생산, 소비자 잉여 등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대학 등의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고,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한-아세안 FTA 수산부문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아세안 및 각 회원국의 수산업 실태와 최근의 동향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와의 수산물 교역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산정하여 수산품목별로 아세안 회원국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한국과 아세안 각 회원국간의 수산품목별 경쟁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지수분석 결과는 제6장에서 수산품목별 양허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보호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중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시장장벽 등을 파악함으로서 아세안 각 회원국의 수산물 시장 개방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수급모형과 수출입모형 추정을 통해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수출입 변화, 어업생산, 소비자 잉여 변화 등을 추정하고 평가였다. 제6장에서는 모든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상품양허안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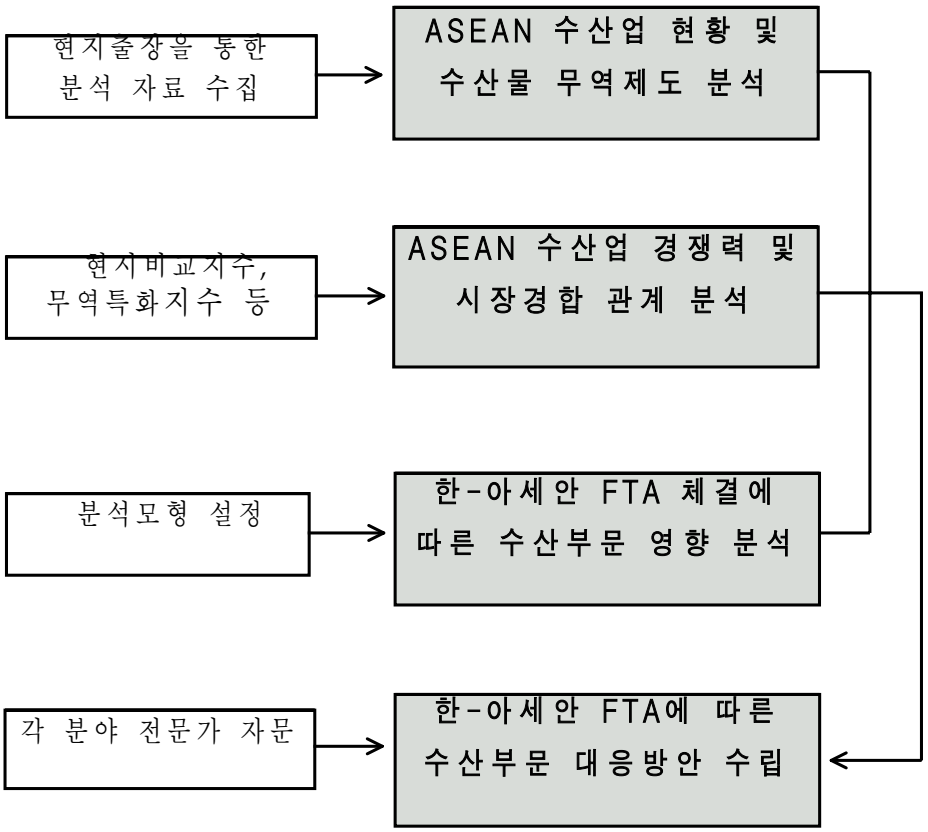

제2장 아세안 수산업 실태 분석

제2장 아세안 수산업 실태 분석

제1절 아세안 국가의 개황 및 FTA 추진 실태

1. 아세안 국가의 경제 개황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1] 10개 회원국의 총 GDP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5,547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GDP 6,080억 달러의 92% 수준이다. 그러나 지리적 면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44.8배, 인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11.4배에 이르며, 무역규모에 있어서도 연간 수출입 총액이 8,429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3,726억 달러의 2.3배에 이른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경제규모에 비해 무역규모가 커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의 10.4%를 차지하는 5대 교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아 우리나라에 있어서 3대 투자대상 국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GDP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요한 교역 상대이자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1) 1967년 8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 최초 회원국가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브루나이는 1984년 1월 8일, 베트남은 1995년 7월 28일, 라오스와 미얀마는 1997년 7월 23일, 그리고 캄보디아는 1999년 4월 30일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아세안 선언문에 의하면, 아세안의 목적은 첫째, 동남아국가들의 평화 · 번영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등성과 파트너쉽의 정신으로 공동 노력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성장, 사회발전, 문화발전을 촉진시키고, 둘째, UN 헌장(Charter)의 원칙에 입각하고 지역국가들간의 법칙과 정의를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즉 아세안 그 자체는 경제통합보다는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평화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표 2-1> 아세안 국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2003년 기준)

국 가	GDP (백만 달러)	면 적 (천㎢)	인 구 (천명)	수 출 (백만 달러)	수 입 (백만 달러)	일인당 GDP
인도네시아	143,602	1,890	215,960	63,450	39,011	973
태 국	115,601	513.3	64,470	78,416	74,214	2,291
말레이시아	88,001	330.3	23,671	105,000	79,289	4,198
싱가포르	84,909	0.7	4,198	157,851	128,528	20,987
필리핀	71,985	300	82,664	34,985	36,100	973
베트남	32,647	330.4	82,222	19,500	21,600	481
미얀마	8,281	676.6	54,745	592	373	179
브루나이	4,176	5.8	363	NA	NA	11,503
캄보디아	3,702	181	13,798	1,394	1,844	310
라오스	1,754	236.8	5,618	359	482	362
아세안 합 계	554,658	4,465	547,709	461,547	381,441	1,013
한 국	608,000	99.6	47,849	193,817	178,826	12,707

자료 : www. aseansec.org

<표 2-2> 우리나라의 교역 현황(2003년)

	ASEAN	미국	중국	일본	EU	전체
교역액	38,711	59,033	57,019	53,589	44,270	372,644
수 출	20,253	34,219	35,110	17,276	24,887	193,817
수 입	18,458	24,814	21,909	36,313	19,383	178,827
비 중	10.4%	15.8%	14.4%	11.9%	11.9%	100%

자료 : 외교통상부, "한·아세안 FTA 공동연구 추진경위 및 현황," 「한·아세안 FTA 추진 관련 공청회 자료집」, p. 4, 2004. 8.

아세안 초기 6개 회원국은 1990년대 초에 NAFTA, EU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와 대중국 투자열풍,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등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역내 과세장벽을 점차 낮추어 2003년까지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AFTA)[2]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한 뒤, 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동실효특혜관

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3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AFTA 회원국의 1인당 평균소득은 2003년 기준으로 1,013달러로서 우리나라의 8% 수준에 불과하다. 회원국 중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말레이시아의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미얀마의 1인당 소득은 179달러로서 세계 최빈국 수준에 있다. 이와 같이 AFTA는 개발도상국간의 남-남 협력에 의한 수평적 통합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역내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여 통합체내의 경제적 자립이나 내부결속력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아세안의 FTA 추진 실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경제적 주도권을 놓고 아세안과의 시장통합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개별적으로 FTA를 타결한 이후, 최근에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여 선발 6개국과는 2012년, 후발 4개국과는 2017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완성할 계획이다.

중국은 2002년 11월 중-아세안간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4년 10월에는 상품분야에 대한 협상을 타결시켰다.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조기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개시하고, 선발 6개국과는 2010년, 후발 4개국과는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완성할 계획이다.

아세안 역시 회원국간의 연대를 통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역내 경제대국간의 역학관계를 이용해 FTA 협상에 인근 국가들을 계속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패권을 놓고 중국과 잠재적 경쟁 관계에 있는 인도를 FTA 협상에 끌어들이고 있다. 인도와는 2002년 11월 FTA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10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선발 6개국과는 2011년, 후발 4개국과는 2016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

2) 주요 내용은 역내 거래에서 공산품 등 관세 인하 대상 상품 관세율을 평균 5% 이하로 낮추고, 이후 점차 관세율을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무관세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과 국가안보 관련 품목 등은 제외되었다.

하였다. 아세안과의 FTA를 적극 희망하는 호주에 대해서는 우호협력조약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을 등에 업은 호주가 동남아 지역에의 군사적 개입이나 내정간섭을 시도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주변부로 간과됐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시장통합을 통해 자신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면서 역내 무역질서 개편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표 2-3> 아세안 회원국별 FTA 추진 동향

국 가	진행 상황
싱가포르·뉴질랜드	○ 2000년 11월 Closer Economic Partnership(CEP)체결
싱가포르·일본	○ 2002년 1월 FTA 체결
싱가포르·EFTA	○ 2002년 6월 FTA 체결
ASEAN·중국	○ 2002년 11월 정부간 공식적인 합의, 2010년을 목표로 협상중 - 선자유화조치 2004년 추진 개시, 2004년 10월 협상 타결
ASEAN·인도	○ 2002년 11월 FTA 추진 합의
태국·인도	○ 2002년 11월 FTA 협상 개시, 2004년 9월 조기자유화 실시
싱가포르·호주	○ 2003년 2월 FTA 협상 체결
싱가포르·미국	○ 2003년 5월 FTA 협상 개시, 2005년 4월 FTA 합의 예정
싱가포르·인도	○ 2003년 5월 FTA 협상 개시, 2005년 4월 FTA 합의 예정
중국·ASEAN	○ 2003년 10월 포괄적 연대협정 체결
일본·ASEAN	○ 2003년 10월 포괄적 연대협정 체결
인도·ASEAN	○ 2003년 10월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
한국·일본	○ 2003년 10월 공동연구 완료, 협상 중
한국·싱가포르	○ 2003년 10월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 2004년 11월 협상 종료
한국·ASEAN	○ 2004년 8월 공동연구 종료, 2005년 4월 2차 협상
태국·미국	○ 2004년 6월 FTA 협상 개시
태국·호주	○ 2004년 7월 FTA 추진 서명, 2005년 발효
태국·뉴질랜드	○ 2005년 7월 FTA 발효
일본·필리핀	○ 2004년 11월 FTA 협상 타결
중국·인도	○ 2005년 3월 FTA 공동연구보고서 제출
중국·호주	○ 2005년 3월 FTA 공동연구 종료
ASEAN·CER	○ 2005년 2월 FTA 1차 협상
ASEAN·일본	○ 2005년 4월 FTA 협상 개시
일본·말레이시아	○ 2005년 5월 FTA 협상 타결

자료 : 정성춘·권율, 『일본·말레이시아 FTA 타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주: 2005년 5월 현재.

제2절 ASEAN의 수산업 실태분석

1. 생산 동향

아세안의 어업 생산량은 2002년도 현재 총 1,689만 톤으로 세계 전체 어업생산량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도 이후 연평균 생산 증가율은 3.8%로서 세계 전체 증가율 1.6%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 아세안 회원국별 어업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국 가	1997년			2002년			연평균 증가율(%)
	포획어업	양식어업	합계	포획어업	양식어업	합계	
베트남	1,276 (10.8)	405 (18.7)	1,681 (12.0)	1,508 (10.8)	519 (18.0)	2,027 (12.0)	3.8
태 국	2,903 (24.5)	540 (25.0)	3,443 (24.5)	2,921 (20.9)	645 (22.3)	3,566 (21.1)	0.7
인도네시아	3,791 (32.0)	663 (30.7)	4,454 (31.8)	4,505 (32.2)	914 (31.7)	5,419 (32.1)	4.0
필리핀	1,806 (15.2)	330 (15.3)	2,136 (15.2)	2,031 (14.5)	443 (15.3)	2,474 (14.7)	3.0
말레이시아	1,173 (9.9)	108 (5.0)	1,281 (9.1)	1,276 (9.1)	165 (5.7)	1,441 (8.5)	2.4
미얀마	780 (6.6)	83 (3.8)	863 (6.2)	1,313 (9.4)	121 (4.2)	1,434 (8.5)	10.7
기타 4개국	136 (1.1)	33 (1.5)	169 (1.2)	444 (3.2)	80 (2.8)	524 (3.1)	25.4
아세안 합 계	11,865 (100.0)	2,162 (100.0)	14,027 (100.0)	13,998 (100.0)	2,887 (100.0)	16,885 (100.0)	3.8
세 계	94,216	28,636	122,852	93,191	39,799	132,989	1.6

자료 : FAO, 「Fishery Statistics 2002」, 2004.
주 : 괄호 속의 숫자는 아세안 회원국 어업 생산량이 아세안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5개국이 2002년도 기준으로 아세안 전체 어업생산량의 88.4%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의 어업생산량 중 양식어업이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양식어업 생산의 연간 증가율은 6.0%로서 포획어업 생산 증가율 3.4%를 상회하고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 해역에서의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 아세안의 수산업은 양식어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2002년도 기준으로 세계 5위와 8위의 수산대국으로서, 이들 두 나라의 어업생산량이 아세안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이 어업생산에 있어서 세계 20위 이내에 포함됨으로서, 아세안은 주요 어업 생산국을 포함한 거대 수산세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

<표 2-5> 2002년도 국가별 어업 생산량 순위

순 위	국 가	합 계	포획어업	양식어업
1	중 국	44,320 (33.3)	16,553	27,767
2	페 루	17,207 (12.9)	8,767	8,440
3	인 도	5,963 (4.5)	3,771	2,192
4	미 국	5,434 (4.1)	4,937	497
5	인도네시아	5,419 (4.1)	4,505	914
6	일 본	5,271 (4.0)	4,443	828
7	칠 레	4,817 (3.6)	4,271	546
8	태 국	3,566 (2.7)	2,921	645
9	러시아	3,333 (2.5)	3,232	101
10	노르웨이	3,297 (2.5)	2,743	554
11	필리핀	2,474 (1.9)	2,031	443
12	아이슬랜드	2,134 (1.6)	2,130	4
13	베트남	2,027 (1.5)	1,508	519
14	한 국	1,966 (1.5)	1,669	297
15	방글라데시	1,891 (1.4)	1,104	787
16	멕시코	1,525 (1.1)	1,451	74
17	덴마크	1,474 (1.1)	1,442	32
18	말레이시아	1,441 (1.1)	1,276	165
19	미얀마	1,434 (1.1)	1,313	121
20	대 만	1,373 (1.0)	1,043	330

자료 : 상게서.
주 : 괄호 속의 숫자는 세계 전체 어업 생산량에 대한 점유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수산업의 위상은 중국 수산업의 급격한 성장세에 의해 가려진 면이 있다. 세계 전체 어업생산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도 이후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아세안의 어업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에도 중국 어업의 급성장에 따라 아세안의 상대적 비중이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어업생산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간 14.2%에서 19.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본, 미국,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은 중국과 함께 수산업이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표 2-6> 세계어업 생산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변화

단위 : 천 톤

		1992년	1997년	2002년
포획어업	아세안(A)	10,436	11,865	13,998
	전세계(B)	85,802	94,216	93,191
	비중(A/B,%)	12.2	12.6	15.0
양식어업	아세안(A)	1,602	2,162	2,887
	전세계(B)	15,413	28,636	39,799
	비중(A/B,%)	10.4	7.5	7.3
전 체	아세안(A)	12,038	14,027	16,885
	전세계(B)	101,215	122,852	132,990
	비중(A/B,%)	11.9	11.4	12.7

자료 : 상게서.

<표 2-7> 중국을 제외한 세계어업 생산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변화

단위: 천 톤

		1992년	1997년	2002년
포획어업	아세안(A)	10,436	11,865	13,998
	전세계(B)	77,479	77,494	76,638
	비중(A/B,%)	13.5	15.3	18.3
양식어업	아세안(A)	1,602	2,162	2,887
	전세계(B)	7,157	9,320	12,032
	비중(A/B,%)	22.4	23.2	24.0
전 체	아세안(A)	12,038	14,027	16,885
	전세계(B)	84,636	86,814	88,670
	비중(A/B,%)	14.2	16.2	19.0

자료 : 상게서.

아세안은 세계 수산물 교역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새우의 주요 생산지역이다. 태국은 최근까지 양식새우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 세계 10위권 이내에 포진하고 있다. 2000년도 기준으로 이들 4개국이 세계 전체 새우양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새우양식이 급격하게 발전하여 그 비중은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양식새우 생산량 국가별 순위(2000년)

순 위	국 가	생산량(톤)
1	태 국	299,700
2	중 국	217,994
3	인도네시아	138,023
4	베트남	69,433
5	방글라데시	58,183
6	인 도	52,771
7	에콰도르	50,110
8	필리핀	41,811
9	멕시코	33,480
10	브라질	25,000
	기 타	100,606
	세계 전체	1,087,111

자료 : Anderson, J. L., The International Seafood Trade, Woodhead Publishing Ltd., 2003, p. 29.

아세안은 참치류 생산 대국이기도 하다. 2000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참치 생산국이었으며, 그 뒤를 일본, 중국이 잇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의 참치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수산전문가들은 필리핀이 2020년까지 세계 제1의 참치류 어획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밖에 말레이시아의 참치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은 세계 제일의 참치 통조림 생산국가이다.

또 아세안에는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틸라피아 양식이 매우 발달해 있다. 2000년도 현재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중국, 이집트 다음으로 많은 틸라피아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에서의 해조류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전복양식이 시도되고 있다.

<표 2-9> 참치류 생산 국가별 순위(2000년)

순 위	국 가	생산량(톤)
1	인도네시아	776,504
2	일 본	709,776
3	중 국	551,153
4	대 만	510,771
5	필리핀	366,424
6	한 국	256,290
7	스페인	236,684
8	에콰도르	181,147
9	미 국	164,980
10	프랑스	152,693
	기 타	1,830,340
	세계 전체	5,736,762

자료 : 상게서, p. 35

2. 수출입 동향

아세안은 세계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약 15%, 수입에 있어서는 4% 정도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 2002년도까지 세계 제일의 수산물 수출국이었던 태국의 경우에는 수산물 수출은 전체 농수산물(임산물 제외) 수출의 약 3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상품 수출 중 6.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0> 세계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변화

단위: 천 달러

	1992년	1997년	2002년
아세안(A)	6,495,460	8,142,565	8,572,962
전세계(B)	41,177,683	53,420,234	58,211,139
비중(A/B,%)	15.8	15.2	14.7

자료 : FAO, 「Fishery Statistics 2002」, 2004.에서 계산.

<표 2-11> 세계수산물 수입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변화

단위: 천 달러

	1992년	1997년	2002년
아세안(A)	1,863,435	2,102,526	2,206,650
전세계(B)	44,566,558	56,661,188	61,445,613
비중(A/B,%)	4.2	3.7	3.6

자료 : 상게서.

아세안의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새우 제품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새우 냉동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45%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어류(냉동), 어류(신선냉장) 등의 수출이 많다. 태국의 경우 새우 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참치 통조림의 수출 비중도 15%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새우 제품 다음으로 참치류(황다랑어 제품 포함) 제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2> 베트남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품 목	수출액(천 달러)	비율(%)
새우류(냉동)	915,000	45.0
어류(냉동)	408,000	20.0
어류(신성냉장)	285,000	14.0
오징어(건조)	137,000	6.7
두족류(냉동)	78,000	3.8
참치(냉동)	55,000	2.7
갑각류, 연체동물(냉동)	48,000	2.4
문어(냉동)	34,000	1.7
어류(건조)	30,000	1.5
게(냉동)	26,800	1.3
합 계	2,034,995	

자료 : FAO, Fishstat+ Database, www.fao.org.

<표 2-13> 태국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품 목	수출액(천 달러)	비율(%)
새우류 통조림	918,927	24.9
새우류(냉동)	774,078	21.0
참치 통조림	562,601	15.2
가공용 어류	288,725	7.8
어 육	164,941	4.5
갑오징어	160,936	4.4
어류 피레트	128,637	3.5
오징어(냉동)	113,773	3.1
게살 통조림	93,515	2.5
가공용 두족류	46,238	1.3
합 계	3,692,158	

자료 : 상게서.

<표 2-14>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품 목	수출액(천 달러)	비율(%)
새우류(냉동)	784,392	51.7
어류 피레트	82,370	5.4
참치통조림	75,121	5.0
게(염장, 건조)	65,419	4.3
황다랑어(신선냉장)	63,434	4.2
멸치(건조)	41,157	2.7
어류(냉동)	31,699	2.1
참치(신선냉장)	26,614	1.8
어류(신선냉장)	25,112	1.7
가재(냉동)	22,400	1.5
합 계	1,516,537	

자료 : 상게서.

필리핀의 경우에는 새우 제품과 함께 참치류(황다랑, 가다랑어 제품 포함)의 수출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최근에는 해조류 양식이 크게 발전하여 중국 등으로의 해조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새우제품의 수출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그밖에 두족류 제품과 어분, 관상어 등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

<표 2-15> 필리핀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품 목	수출액(천 달러)	비율(%)
새우류(냉동)	119,127	26.3
참치통조림	52,925	11.7
가다랑어 통조림	40,248	8.9
새우류(신선냉장)	35,904	7.9
해조류	33,860	7.5
문어(냉동)	31,895	7.0
황다랑어(신선/냉장)	25,243	5.6
게살 통조림	16,554	3.7
황다랑어(냉동)	15,740	3.5
활 어	10,628	2.3
합 계	453,030	

자료 : 상게서.

<표 2-16>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품 목	수출액(천 달러)	비율(%)
새우류(냉동)	143,465	37.6
두족류(냉동)	34,022	8.9
새우류(신선냉장)	26,059	6.8
새우류(가공-미포장)	19,332	5.1
어 분	18,800	4.9
관 상 어	17,559	4.6
가공용 어류	16,425	4.3
활 어	16,422	4.3
어류 통조림	10,585	2.8
새우류 통조림	6,693	1.8
합 계	381,983	

자료 : 상게서.

제3절 한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수산물 교역 현황

1. 개요

우리나라의 아세안 수산물 수입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총 141천 톤, 328백만 달러로, 금액을 기준으로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물량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규모는 2004년도 현재 59천 톤, 54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세안과의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27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는 태국으로서, 2004년도에 아세안 전체 한국산 수산물 수입액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태국은 세계 제1의 참치통조림 생산국으로서, 한국으로부터 원료용 다랑어를 대량 수입하였다.

한편 한국으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베트남으로서, 2004년 우리나라에 대한 아세안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45%를 차지하였다. 베트남은 한국에 쭈꾸미, 낙지 등 두족류와 쥐치포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그 다음은 태국으로 한국에 새우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표 2-17> 한국과 아세안간 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1~'04)
수산물 수출 합계 (한국 → 아세안)	51,097 (100.0)	53,141 (100.0)	56,047 (100.0)	54,154 (100.0)	2.0
베트남	1,083 (2.1)	1,279 (2.4)	3,162 (5.6)	4,885 (9.0)	65.2
태 국	32,943 (64.5)	34,492 (64.9)	38,354 (68.4)	37,565 (69.4)	4.5
인도네시아	4,628 (9.1)	4,999 (9.4)	5,502 (9.8)	4,337 (8.0)	-2.1
필리핀	5,681 (11.1)	3,659 (6.9)	1,783 (3.2)	849 (1.6)	-46.9
말레이시아	2,199 (4.3)	2,922 (5.5)	3,032 (5.4)	2,630 (4.9)	6.1
기 타	4,563 (8.9)	5,789 (10.9)	4,214 (7.5)	3888 (7.2)	-5.2
수산물 수입 합계 (아세안 → 한국)	243,729 (100.0)	267,385 (100.0)	294,304 (100.0)	321,176 (100.0)	9.6
베트남	101,486 (41.6)	121,733 (45.5)	129,878 (44.1)	143,524 (44.7)	12.2
태 국	83,288 (34.2)	84,737 (31.7)	95,616 (32.5)	106,521 (33.2)	8.5
인도네시아	25,175 (10.3)	22,718 (8.5)	26,630 (9.0)	29,008 (9.0)	4.8
필리핀	18,021 (7.4)	19,421 (7.3)	26,773 (9.1)	28,097 (8.7)	16.0
말레이시아	5,013 (2.1)	6,058 (2.3)	6,302 (2.1)	8,797 (2.7)	20.6
기 타	10,747 (4.4)	12,719 (4.8)	9,106 (3.1)	5229 (1.6)	-21.3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4」, 2005.
주 : 괄호 속의 숫자는 한국과 아세안간 수산물 수출 및 수입에 있어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임

2.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동향

2004년도 현재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액 중 03류(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비중이 78.8%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 16류(조제품)의 비중(18.9%)이 높다. 03류 중에서는 장거리 수송으로 신선도 유지가 어려운 활어와 선어(신선·냉장 어류)의 수입은 0.5% 이하에 불과한 반면, 갑각류, 연체동물, 그리고 피레트, 어육과 같은 어류 가공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연근해산 어류가 상당량이 활선어 상태로 유통·소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류 제품에 있어서는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품과 경합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3)]

주목할 점은 최근에 활선어 상태의 갑각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품목의 수입은 아세안산 전체 수산물 수입을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연평균 39.5%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송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것이다[4)].

2004년도 기준으로 수입액이 큰 품목을 살펴보면, 냉동새우(전체의 15.7%), 어류 피레트 및 어육(12.0%), 활·선 새우 제품(10.1%), 쥐치포(9.5%), 냉동 쭈꾸미(7.1%) 순이며 오징어, 갑오징어 등 두족류 제품과 냉동 갈치의 수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새우관련 제품이 전체 수입액의 40%에 근접하며, 냉동 어류가 약 20%, 오징어, 낙지, 쭈꾸미 등의 두족류가 약 30%, 그리고 쥐치포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3) 고등어, 갈치, 꽁치 등 대중 어종의 경우에는 연근해산이라 하더라도 선상에서의 급속 냉동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선상냉동 제품의 경우에는 신선도가 비교적 잘 유지되므로 국내산 냉동 어류의 신선도는 아세안으로 수입되는 냉동 어류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4) 칸막이가 된 용기에 활 새우를 넣고 얼음을 덮어 활 새우를 가수면 상태로 만든 다음 항공편을 이용해 수송하는 방법이 2000년대에 들어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활선 새우는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중국의 하이난섬(海南島)과 필리핀, 태국 등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수송기술은 근래에 수입이 급증하였던 바다가재의 수송방법을 새우에 적용한 것이다.

<표 2-18> 품목그룹별 우리나라의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실적(2004년)

품목번호	품 명	중량(kg)	금액(달러)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01~'04)
제1류	산동물	165	2,435	0.0	-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	0	0.0	-
제3류	어류, 갑각류 등	115,430,464	258,586,605	78.8	7.7
	01 활어	89,048	1,730,634	0.5	5.0
	02 신선, 냉장 어류	31,245	189,200	0.1	-21.4
	03 냉동어류	20,714,813	31,733,346	9.7	6.2
	04 피레트, 어육	40,653,800	41,076,142	12.5	1.7
	05 건조, 염장, 훈제	1,439,747	3,661,061	1.1	-4.2
	06-1 냉동 갑각류	12,838,008	75,216,877	22.9	6.9
	06-2 비냉동 갑각류	8,386,079	32,544,254	9.9	39.5
	07 연체동물	31,563,127	72,038,479	22.0	13.4
제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50,806	436,069	0.1	35.1
제12류	식물성	6,251,850	5,636,043	1.7	2.0
제13류	액즙, 엑기스	286	6,599	0.0	262.6
제15류	유지 등	292,800	1,215,027	0.4	52.6
제16류	조제품	19,241,320	61,971,461	18.9	23.7
제21류	각종 조제 식품	13,646	13,179	0.0	253.8
제23류	잔유물, 웨이스트, 사료	228,000	108,279	0.0	46.3
합 계		141,508,987	327,975,165	100.0	9.2

자료 : 상게서.

<표 2-19> 아세안으로부터의 주요 수산물 수입 품목(2004년)

품목번호	품 명	2004년 수입액 (백만 달러)	관세율	비율 (%)	누적비율 (%)
0306-13-9000	냉동새우	46.9	20	15.7	15.7
0304-90-1090	냉동피레트,어육(기타)	35.8	10	12.0	27.6
0306-23-1000	새우,보리새우(산것,신선,냉장)	30.2	20	10.1	37.7
1604-19-9010	쥐치포(조제/저장처리한 것)	28.4	20	9.5	47.2
0307-59-1030	쭈꾸미(냉동)	21.4	20	7.1	54.3
0307-49-3000	갑오징어,오징어(건조)	21.1	10	7.1	61.4
0306-13-1000	새우살(냉동)	19.8	20	6.6	68.0
1605-20-9090	새우,보리새우 (기타조제/저장처리한 것)	17.0	20	5.7	73.7
0303-79-3000	갈치(냉동)	12.6	10	4.2	77.9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10.1	10	3.4	81.2
0307-59-1020	낙지(냉동)	9.5	20	3.2	84.4
0303-79-7000	전갱이(냉동)	7.5	10	2.5	86.9
0306-14-3000	꽃게(냉동)	6.5	20	2.2	89.1
1212-20-9019	코토니 및 스피노잠	6.2	20	2.1	91.1
0307-99-3930	해파리(냉동)	5.4	20	1.8	92.9
0304-20-9000	냉동피레트(기타어류)	5.0	10	1.7	94.6
1605-90-9090	연체동물(기타조제품)	4.1	20	1.4	96.0
0303-79-9099	아귀,먹장이,홍어,가오리, 밀크피쉬를 제외한 냉동어류	3.4	10	1.1	97.1
1605-90-9020	해삼	3.1	20	1.0	98.1
0303-79-9096	가오리	2.2	10	0.7	98.9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4」, 2005.
주 : 새우 염장, 염수장 제품에는 55% 또는 363원/kg 중 고액의 조정관세가 부과됨

주요 수산물 수입 품목의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냉동 새우 제품 및 새우 가공제품은 주로 태국에서, 활·선 새우는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태국과 필리핀에서 주로 수입되며, 갈치, 전갱이 등 냉동 어류는 인도네시아에서, 냉동 어류 가공품은 태국과 베트남에서, 오징어, 갑오징어, 낙지, 쭈꾸미 등 두족류는 베트남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 그리고 쥐치포는 거의 전량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며, 코토니, 스피노잠 등 식품첨가물용 해조류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표 2-20> 주요 수산물 수입 품목의 국가별 비율(2004년)

품 명	2004년 수입액 (백만 달러)	국가별 비중(%)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냉동새우	46.9	6.9	66.0	7.9	14.0	2.2
냉동피레트,어육(기타)	35.8	58.4	29.7	0.9	0.1	10.8
새우,보리새우(산것,신선,냉장)	30.2	0.3	61.1	5.0	33.7	0.0
쥐치포(조제/저장처리한 것)	28.4	99.6	0.4	-	-	-
쭈꾸미(냉동)	21.4	95.3	2.3	0.7	-	1.7
갑오징어, 오징어(건조)	21.1	89.0	10.5	-	0.0	-
새우살(냉동)	19.8	44.7	39.6	0.8	0.1	4.6
새우,보리새우 (기타조제/저장처리한 것)	17.0	16.1	83.0	0.2	0.1	0.3
갈치(냉동)	12.6	31.5	15.2	51.9	-	1.0
갑오징어(냉동)	10.1	57.7	36.0	1.7	1.1	3.1
낙지(냉동)	9.5	85.4	11.0	2.4	0.1	1.2
전갱이(냉동)	7.5	-	-	88.8	9.1	2.1
꽃게(냉동)	6.5	79.9	7.2	1.1	1.4	0.8
코토니 및 스피노잠	6.2	1.9	-	12.2	75.6	-
해파리(냉동)	5.4	12.9	64.7	15.5	-	6.8

자료 : 상게서.

또한 연간 수입액이 100만 달러 이상으로서 2000년대 이후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은 바지락(염장), 기타 연체동물(염장), 연어 조제품, 피조개(신선·냉장), 어류즙, 낙지(냉동), 새우류(산 것, 신선·냉장), 새우류(염장, 염수장) 등으로 나타났다. 즉, 포장 및 수송수단의 발달로 갑각류, 연체동물, 패류의 신선·냉장 및 염장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21>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급증 수산품목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	2003년 수입금액	연평균 증가율 ('00~'03)
0307-99-3120	바지락(염장)	20	1,329,722	-
0307-99-3190	기타 연체동물(염장)	20	1,218,871	-
1604-11-9000	연어 조제품	20	1,086,118	-
0307-99-1150	피조개 (산 것, 신선/냉장)	20	1,371,139	1682.7
1603-00-4000	어류 즙	30	989,613	399.7
0307-59-1020	낙지(냉동)	20	6,909,252	193.9
0306-23-1000	새우, 보리새우 (산 것, 신선/냉장)	20	19,243,663	184.1
0306-23-3000	새우, 보리새우 (염장, 염수장)	20	2,481,555	130.8
0303-79-9096	가오리(냉동)	10	2,007,603	48.3
1605-90-9090	기타 연체동물(조제)	20	3,449,546	41.2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10	7,778,637	41.1
1504-10-1000	상어 간유	3	1,061,946	36.5
1605-20-9020	새우와 보리새우 (브레드한 것)	20	908,183	33.0
1604-90-9010	쥐치포	20	28,094,769	27.9
0307-59-1030	쭈꾸미(냉동)	20	16,102,322	21.5
0304-90-1090	기타 어류(연육)	10	41,145,930	20.5
0303-79-3000	갈치(냉동)	10	9,275,620	18.4

자료 : 상게서.

3. 아세안으로의 수산물 수출 동향

2004년도 아세안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액 중 03류(69%)와 23류(잔유물, 웨이스트, 사료용, 22%)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03류 중에서는 냉동 어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23류에는 사료용 수산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2-22> 품목그룹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실적(2004년)

품목번호	품 명	중량(kg)	금액(달러)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01-04)
제1류	산동물	0	0	0.0	-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	0	0.0	-
제3류	어류, 갑각류 등	36,094,650	37,808,812	69.8	2.2
	01 활어	0	0	0.0	-
	02 신선, 냉장 어류	0	0	0.0	-100.0
	03 냉동어류	34,143,550	31,671,514	58.5	2.6
	04 피레트, 어육	127,740	164,989	0.3	-29.9
	05 건조, 염장, 훈제	28,253	169,283	0.3	-16.3
	06-1 냉동 갑각류	116,036	453,307	0.8	26.6
	06-2 비냉동 갑각류	20,944	328,592	0.6	107.5
	07 연체동물	2,388,350	4,094,330	7.6	-6.3
제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1,932,090	993,710	1.8	-11.8
제12류	식물성	159,922	840,136	1.6	2.6
제13류	액즙, 엑기스	16,205	73,579	0.1	-22.6
제15류	유지 등	2,244,740	1,484,450	2.7	33.7
제16류	조제품	818,209	1,528,727	2.8	2.5
제21류	각종 조제 식품	181,790	917,817	1.7	32.9
제23류	잔유물, 웨어스트, 사료	17,157,274	10,505,795	19.4	-1.0
합 계		58,604,880	54,153,026	100.0	2.0

자료 : 상게서.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수출한 수산물의 59%를 다랑어류가 차지하는 등 수출품목이 특정 품목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랑어류 수출도 90% 이상이 태국에 집중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의 50% 이상을 태국으로의 다랑어류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태국이 다랑어 통조림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공에 필요한 원료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그밖에 냉동 오징어가 태국과 인도네시아로, 냉동 고등어가 필리핀으로, 건조 굴이 싱가포르로 주로 수출되고 있다.

<표 2-23> 대아세안 주요 수출 품목의 국가별 비중(2001 ~ 2003 평균)

품목	평균 수출액 (백만 달러)	국가별 비중(%)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전체	38.6	69	11	8	6	5	1
가다랑어, 줄무늬버니토우(냉동)	13,7	99	0	0	0	1	0
황다랑어(냉동)	4.4	95	0	0	0	5	0
날개다랑어, 긴지느러미다랑어 (냉동)	3.8	94	0	0	6	0	0
고등어(냉동)	3.6	7	14	57	14	6	1
오징어(냉동)	2.8	35	8	21	3	32	2
굴(건조)	2,7	0	71	0	29	0	0
기타어류(냉동)	1.1	50	22	0	21	2	5
기타다랑어(냉동)	0.9	87	8	0	4	1	0
갑오징어(냉동)	0.6	99	1	0	0	0	0
이빨고기(냉동)	0.5	100	0	0	0	0	0

자료 : 조정희, 김봉태, 「한·아세안 FTA 협상전략 및 시사점」, 해양수산 현안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제4절 아세안 주요 국가의 수산부문 최근 동향

1. 베트남

가. 수산업 개황

베트남은 3,200Km의 긴 해안을 따라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여 수산업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새우, 오징어, 미역 등 수출 유망품목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우는 수산품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현대적인 기술에 새우양식업이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농어촌 지역 경제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기아 문제의 해결, 빈곤의 감소와 농어촌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양식어업 및 해면어업, 내륙 습지에서의 양식업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베트남의 어업생산량을 살펴보면, 2003년 기준으로 해면어획생산과 양식생산을 합한 수산물 총생산량은 2,536천 톤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면어획생산의 비중은 56%인 1,426천 톤으로 나타났는데, 해면어획생산량 비중은 1990년 약 69%에서 13% 정도 감소했다. 반면 양식생산은 1990년 수산물 총생산량의 약 31%인 306천 톤에서, 2003년에는 1,100천 톤으로 수산물 총 생산량의 44%를 차지해 1990년보다 그 비중이 약 13% 증가하였다.

어선 수는 1990년 총 72,328척에서 2003년에는 83,100척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였다. 양식업의 개발로 인한 양식면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 727천 ha에 달하던 양식면적은 2000년 3,204천ha, 2003년에는 4,100천ha를 이르러, 1990년보다는 무려 563%가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총 수출액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에 10.9%에 달했으나, 2004년에는 타 산업부문의 수출 호황으로 그 비중이 9.2%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베트남에 있어서 수산업은 여전히 국가 무역수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수출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24> 베트남의 주요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품목명	2003년	2004년	전년동기비(%)
총 수출액	20,176	26,003	28.9
원 유	3,821	5,666	48.3
섬유 의류	3,687	4,319	14.8
수산물	2,200	2,397	9.0
신 발	2,268	2,604	14.8
쌀	721	941	30.6
커 피	505	594	17.7
목재제품	567	1,054	85.9
전자 및 PC부품	407	1,077	60.2
고 무	378	579	53.2

자료 : 베트남 통계청, 2004.

<표 2-25> 베트남 수산업 현황

구분	1990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90~'03))
수산물 총생산(톤)	978,880	2,003,700	2,226,900	2,410,900	2,536,000	159
해면어획생산(톤)	672,130	1,280,590	1,347,800	1,434,800	1,426,000	112
양식생산(톤)	306,750	723,110	879,100	976,100	1,110,000	262
어선수(척)	72,328	79,017	78,978	81,800	83,100	15
양식면적(ha)	727,585	3,204,998	3,722,577	4,038,365	4,100,000	464

자료 : Vietnam Deputy Minister of Fisheries

나. 최근의 동향

베트남 수산부는 2005년 수산물 수출 목표를 당초 26억 달러로 설정하였는데, 이

는 2004년도 실적 24억 달러에 비해 8%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5년도 상반기 수산물 수출실적은 1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연간 목표액의 43% 달성에 그쳤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이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는 미국이 2004년도에 인도, 중국, 태국, 브라질, 에콰도르,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생산된 새우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2004년 11월에 베트남산 새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2007년까지 회사에 따라 4.15~25.76%로 부과하였고, 같은 해 4월에는 베트남 새우수출회사에 수출 예치금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미국으로의 새우 수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까지 미국으로의 새우 수출은 2004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기준으로 36.5%, 금액 기준으로 35.9% 감소하였다. 새우는 베트남 수산물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오던 품목이며, 또 베트남 새우제품 수출의 절반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베트남산 새우제품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는 베트남의 전체 수산물 수출과 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지난 8월에는 베트남 수산물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양식 메기(tra and basa)에 대해 루지애나주 등 미국의 일부 주정부가 항생제 검출을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같이 최대 수산물 시장이었던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자 베트남은 2005년 수산물 수출목표를 25억 달러로 당초보다 1억 달러 낮추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두 가지 방향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첫 번째 대응책으로 베트남은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양식어장 환경정화 프로그램(cleanup project)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친환경 양식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새우 제품이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자연 서식처를 재현한 환경에서 더욱 깨끗한 수질과 위생 관리 하에 생산된 새우제품에 신선도를 보증할 수 있는 최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서, 2004년도에 이미 호주, 일본, EU 등 선진국 시장에 약 200톤 정도 수출된 바 있다. 베트남 남단에 위치한 Ca Mau 지역에서는 약 20,000㏊에 이르는 친환경 새우양식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친환경 새우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20% 정도 높은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브랜드화 전략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두 번째 대응책은 시장 다변화이다. 베트남은 주요 수산물 수출이던 미국, 일본 외에 EU, 한국, 호주, 러시아, 중동 등 시장을 다변화하

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시장으로의 수산물 수출은 2004년에 1억 1천만 달러에 이르러 금액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3배나 급증한 바 있다. 시장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시장정보 수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에 대한 대체 수출시장으로서 한국 시장이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진 저급 수산물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검역 및 통관이 비교적 용이한 한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베트남 수산부는 연안 어업자원의 급감에 대비하여 어업구조정책과 수산자원증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베트남의 수산학자들은 과잉어획으로 인해 현재 배트남의 연안 어족자원은 생태계 내에서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고갈 상태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3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수산자원증강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어류,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등의 종묘를 대량 방류하고 종묘배양장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태국

가. 개황

태국의 연간 어업생산량은 350~380만 톤이며, 수산부문의 GDP는 2002년에 1,060억 바트(미화 약 26.5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태국 전체 GDP의 1.9%, 농어업 전체 GDP의 20.7%에 해당된다. 수산부문 종사자 수는 모두 826,98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161,670명은 해면포획어업에, 77,870명은 연안 양식업에, 404,340명은 내수면 어업에, 그리고 183,100명은 수산관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태국 수산업은 무역수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2002년도 수산부문의 무역 흑자는 1,228억 바트(미화 약 3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도와 2004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1) 어업생산 현황 및 문제점

2002년도 어업 총생산량 380만 톤 중 해면포획어업 생산량이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면양식어업이 17.4%, 내수면 양식어업이 7.8%, 내수면 포획어업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가) 해면포획어업

2002년도 해면포획어업 생산량은 26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총 수입은 583.7억 바트(미화 약 15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 중 태국 연안 해역에서의 어획량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양에서의 어획량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부터 해면포획어업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어획물의 구성은 식용 어류가 60%, 산업용 어류 26%, 두족류 8%, 새우류 5%, 그리고 게류 등 기타 어종이 1%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된 어선 수는 총 15,983척에 달하며, 이 중 트롤선이 43.5%, 자망어선이 20.6%, 선망어선이 10.2%, 그리고 기타 어선이 25.7%를 차지하고 있다.

해면포획어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태국 연안해역에서의 과도어획으로 수산자원의 상태가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어업인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 연료비의 급등으로 어업비용이 상승하였으며, 어선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연안양식어업

연안양식어업은 1988년 이후 새우양식기술의 보급으로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2002년도 생산은 물량 기준으로 66만 톤, 금액으로는 567억 바트(미화 약 14억 달러)에 달하였다. 주요 양식 품종은 새우인데, 2002년도에 물량 기준으로 264,924톤, 금액기준으로 629억 바트(미화 약 13억 달러) 정도 생산되었다. 새우양식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면적당 생산성이 1987년 ha당 623kg에서 2002년도에는 3,500kg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조개류 중에는 쌍각조개류가 양식품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2년도 생산량은 382,918톤에 이르며 홍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류양식 품종으로는 그루퍼와 농어류가 있으며, 2002년도 생산량 12,202톤 중 농어가 90%를 차지

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새우양식의 경우 많은 종류의 질병이 퍼져 있으며, 그밖에 어장관리 부실에 따른 환경오염, 홍수림 잠식에 따른 사회적 비판, 양식비용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다) 내수면어업

내수면 포획어업 생산량은 2002년에 198,700톤에 이르며, 총수입은 629억 바트(약 15.5 억 달러)에 달했다. 내수면 포획어업은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영 규모가 영세하다. 내수면 양식어업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1963년 이후 호르몬 주입에 의한 육성기술의 발달로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주로 잉어와 매기류가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내수면 양식 품종은 15종에 이르며 2002년도 생산은 물량기준으로 294,501톤, 금액기준으로 110억 바트(2.7억 달러)에 이른다. 금액기준으로 내수면 양식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의 10%에 불과하지만, 지난 20년에 걸쳐 연간 14%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어업이다. 최근에는 관상어 양식이 크게 성행하고 있는데, 생산된 관상어는 내수용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서 인기가 매우 높다. 동 어업의 경영규모는 크지 않으나 수익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수면 양식어업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영세 어가에 의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식업체의 자본과 기술, 경험이 부족한 편이며, 생산물의 판매시 가격 결정력(bargaining power)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어획물의 소비

전체 어업 생산량 중 89%는 식용으로 소비되고 11%는 사료로 사용된다. 해면 포획어업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23%가 사료용으로 소비되며, 나머지 식용으로 소비되는 77% 중 1/4은 활어와 선어 상태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되고 3/4은 냉장 및 냉동물, 통조림, 건조, 훈제, 염장물 등으로 가공되어 소비된다. 내수면 어업생산량은 거의 전량이 선어 상태로 식용으로 소비된다.

나. 최근의 동향

태국은 2004년도에 23만 톤이었던 새우 수출량이 2005년도에는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고, 금년 새우제품 수출목표로 30만 톤으로 설정하였었다. 태국 정부가 새우제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이 예비적으로 부과한 태국산 새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브라질과 중국보다 크게 낮아 미국으로 수출되는 태국산 새우제품이 연간 5만 톤 증가하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둘째, 1999년에 중단되었던 태국의 새우제품에 대한 EU의 일반특혜관세가 2005년 중에 재개됨으로써 EU로의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이 지난 수 년간에 걸쳐 양식새우 주요 품종을 블랙타이거새우에서 질병에 강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흰다리새우(Pacific White Leg Shrimp)로 바꿨다는 점이다. 태국은 흰다리새우가 2005년도 새우제품 수출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의 태국산 새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상향조정되고 경쟁국의 관세는 하향조정됨으로써, 새우제품에 대한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가 축소되었다. 또 2005년도 1분기에는 기대와는 달리 미국으로의 새우제품 수출금액이 작년에 비해 36%나 급감하였다. 또 쓰나미 태풍의 영향으로 새우 부화장이 파괴되어 양식새우 생산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태국은 이에 따라 WTO에 미국의 새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새우제품의 품질관리와 수출시장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EU 시장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은 새우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우제품에 대한 생산이력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냉동 새우가공업자, 생산자, 정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회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태국 기술과학부 지원 하에 미국의 다국적 IT 기업인 IBM과 협력하고 있다.

태국은 일본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산지 규정과 위생·안전 관련 규정에 이견으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태국 상무부는 일본과 원산지 규정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과의 FTA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원산

지 규정과 관련하여 상품별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원산지 규정이 태국산 농·수산물의 일본시장 접근을 막는 중요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태국의 대일본 수출은 농·수산물을 합하여 연간 23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17억 6천만 달러가 FTA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또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농·수산물은 500개 품목으로서 금액으로는 10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이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태국측은 대체적으로 자국이 원하는 쪽으로 협상의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 협상과제로서 태국은 일본의 수입 농·수산물에 적용하고 있는 안전·위생 기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은 최근 전복양식 육성을 위해 노력해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태국의 전복 생산량은 1만 8,000톤에서 7,000톤으로 급감한 바 있다. 현재 태국의 전복 수요가 연간 2만 톤으로서, 태국의 전복양식 육성은 내수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복양식 개발을 위한 초기투자비가 높고 수익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전복양식 육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2004년 이후 미국에 의해 새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중국, 태국산 새우제품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물량이 늘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미국정부 역시 중국과 태국산 새우의 우회수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공된 새우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모든 수입업자들에게 수입산 새우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제하였다.

또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까지 자국해역에서 외국어선의 조업을 완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 태국, 필리핀과 양자간 어업협정에 따라 이들 국가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2005년 말에 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어업협정 종료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양자간 어업협정이 모두 종료된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2005년 6월에 자국 해역에서 조업한 외국 어선은 어획물의 70% 이상을 인도네시아에 반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여, 외국 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반출을 30% 이내로 규제함으로써 수산물 가공 원료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였다. 최근 FAO 가 인도네시아 해역을 비롯하여 남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어족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자국 해역에서의 외국 어선의 조업을 완전 금지하기로 한 것은 어족자원을 관리하고 자국의 양식어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필리핀

최근 참치어업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필리핀이 인도네시아와의 어업협정 종결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2002년에 체결한 어업협정에 의해 필리핀 국적의 조업선 75척, 운반선 75척, 그리고 주낙어선 20척과 예인망 어선 10척이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조업하여 왔으며, 필리핀 참치산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급량의 상당부분을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충당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자국 해역에서의 어획량의 해외 반출을 규제함으로써 필리핀 참치업체들은 당장 원료 구매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금년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조업이 완전히 금지됨으로써 참치업체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필리핀의 참치 수출은 지난 3년간 매년 21%씩 급증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어업협정 연장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황다랑어 축양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필리핀 정부는 자국의 황다랑어의 산란장이 되고 있는 사랑기니만에서 황다랑어 축양사업을 시작할 투자자를 찾고 있다.

한편 최근 필리핀의 양식어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조류 양식이 도약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필리핀 해조류의 수출수요는 199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도 해조류 양식은 생산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호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주요 해조류 양식지역인 민다나오 지역에 양식시설 개발을 위해 0.25 ha당 6만 페소(한화 약 129만원)의 채묘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조류 양식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생산된 해조류는 주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필리핀에서 생산된 코토니, 스피노잠 등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페낭항이 최근 참치어업의 허브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페낭은 인도양의 주요 참치어장과 근접해 있고, 국제공항과도 가까워 신속한 선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과 일본의 참치 어선들이 페낭항을 중심으로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태국 등의 참치업체들도 페낭항 이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페낭항이 참치어업의 중추항으로 부상함에 따라 수산물 가공 공장 설립에 약 5,300만 달러의 해외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투자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5절 아세안 수산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동향

통계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8년도 이후 최근(2005년 8월)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실적은 총 558억 달러에 이른다. 이 중 회수금액을 제외한 순 투자금액은 435억 달러이다. 어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은 총액기준으로 2억 1천만 달러로서 전체 직접투자액의 0.38%, 순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억 700만 달러로 진체 순 투자금액의 0.2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는 총액기준으로 총 69억 달러 정도로서 우리나라 전체 해외 직접투자액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 투자금액은 약 48억 달러로 전체의 11%에 이른다.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 중 어업부문에 대한 투자 실적은 총 투자금액 기준으로 3,195만 달러, 순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634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어업부문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해외 직접투자액의 각각 15.0%와 24.6%에 해당한다.

<표 2-26>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실적(1968~2005. 8.)

단위 : 천 달러

지 역	업 종	투자건수	투자금액	회수건수	회수금액	순투자 건 수	순투자 금 액
전세계 (A)	농림어업	522	509,907	105	193,735	417	316,172
	어 업	241	212,773	82	105,525	159	107,248
	광업및제조업	16,221	33,237,301	841	7,689,949	15,380	25,547,352
	서비스업및기타	9,809	22,080,520	1,037	4,452,547	8,772	17,627,973
	합 계	26,552	55,827,728	1,983	12,336,231	24,569	43,491,497
아세안 (B)	농림어업	70	75,833	14	25,766	56	50,067
	어 업	33	31,946	5	5,552	28	26,394
	광업및제조업	577	1,711,467	70	633,774	507	1,077,693
	서비스업및기타	2,442	5,111,424	221	1,434,028	2,221	3,677,396
	합 계	3,089	6,898,724	305	2,093,568	2,784	4,805,156
비 율 (B/A, %)	농림어업	13.4	14.9	13.3	13.3	13.4	15.8
	어 업	13.7	15.0	6.1	5.3	17.6	24.6
	광업및제조업	3.6	5.1	8.3	8.2	3.3	4.2
	서비스업및기타	24.9	23.1	21.3	32.2	25.3	20.9
	합 계	11.6	12.4	15.4	17.0	11.3	11.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1968년도 이후 우리나라의 아세안 회원국별 어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금액의 92%인 2,937만 달러가 인도네시아 어업부문에 투자되었다. 이중 유림 Sari Co. Ltd. P.T. 한 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2,000만 달러를 넘고 있으며[5], 나머지는 16개 기업에 대한 2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아세안 회원국의 어업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는 대부분 새우양식과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5) 유림 Sari Co. Ltd. P.T.사는 제지산업을 위한 펄프제조 업체로도 알려져 있어서, 순수한 어업관련 기업이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7> 1968년 이후 아세안 국가의 어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

단위 : 천 달러

국 가	투자건수	투자금액	회수건수	회수금액	순투자 건 수	순투자 금 액
인도네시아	14	29,366	3	5,361	11	24,005
싱가포르	3	790	1	90	2	700
베트남	3	573	0	2	3	571
말레이시아	3	160	0	0	3	160
미얀마	1	506	0	0	1	506
필리핀	9	551	1	99	8	452
합 계	33	31,946	5	5,552	28	26,394

자료 : 상게서.

아세안 회원국의 어업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는 1990년대 이후에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아세안 국가의 어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1,000만 달러 수준이며, 특히 2001년도 이후에는 순 투자 금액 기준으로 61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남아시아 해역의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등이 관할해역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서 어선어업에 대한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양식어업이나 수산가공 산업에 대한 진출도 포화 기미를 보이는 현재의 시장상황으로 판단할 때 투자 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세안 국가의 어업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전망은 그리 밝다고 할 수 없다.

<표 2-28> 1991년 이후 아세안 국가의 어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

단위 : 천 달러

국 가	투자건수	투자금액	회수건수	회수금액	순투자 건 수	순투자 금 액
인도네시아	11	8,290	2	1,722	9	6,568
베트남	3	573	0	2	3	571
미얀마	1	506	0	0	1	506
필리핀	9	551	1	99	8	452
싱가포르	1	200	0	0	1	200
말레이시아	2	80	0	0	2	80
합 계	27	10,200	3	1,823	24	8,377

자료 : 상게서.

<표 2-29> 2001년 이후 아세안 국가의 어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

단위 : 천 달러

국 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베트남	투자건수	1	0	0	0	0	1
	투자금액	323	146	29	23	0	521
미얀마	투자건수	0	0	1	0	0	1
	투자금액	0	0	496	0	10	506
말레이시아	투자건수	0	0	1	0	0	1
	투자금액	0	0	63	0	0	63
인도네시아	투자건수	1	-1	0	0	0	0
	투자금액	0	-758	280	0	0	-478
합 계	투자건수	2	-1	2	0	0	3
	투자금액	323	-612	868	23	10	612

자료 : 상게서.

제3장 아세안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

제3장 아세안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

제1절 방법론

어떤 국가나 산업 혹은 기업이 갖는 경쟁력을 명쾌하게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상식적으로 '경쟁력'을 정의하자면, 금속시장과 같이 생산 제품이 균질할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 수준이나 규격을 만족시키면서 경쟁자에 비해 한 단위의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상이할 경우에는 동일한 생산비용으로 경쟁자에 비해 높은 품질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세분화된 시장을 놓고 다양한 제품으로 경쟁하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한 국가나 산업, 혹은 제품의 경쟁력을 이러한 정의에 따라 측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산비용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수출품의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그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조사·연구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경쟁력이란, 거의 예외 없이,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어떠한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높은 품질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장에서 그 제품의 판매 실적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측정된 경쟁력 지표가 엄밀한 의미에서 경쟁력에 관한 측정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산정방법이 단순하면서도 조사·연구에 따라서는 분석 목적에 맞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유사한 조사·연구에서 흔히 사용된 간단한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한국과 아세안 주요국의 수산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측정하고, 한-아세안 FTA를 위한 우리 측의 협상전력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간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 상대가격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여 수산품목의 교역에 있어서 국가간 상대적인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무역특화지수는 품목별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가 경쟁관계에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시적 비교우위지수는 아세안 국가가 한국에 수출하는 수산품목 중 국내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시장에 나타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비용과 가격에 미치는 수많은 요인에 의해 시기적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의 변동은 특정국가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에 의해 그 제품의 수출시장에서의 성과는 달라진다. 따라서 이와 같이 측정된 지표가 특정 품목에 있어서 국가간의 영구적인 경쟁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지표가 갖는 의미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1. 무역특화지수(TSI)

무역특화지수란 특정한 업종이나 상품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로서,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text{무역특화지수} = \left(\frac{X_{ij} - M_{ij}}{X_{ij} + M_{ij}} \right)$$

단, X_{ij} : j국의 i품목 수출액

M_{ij} : j국의 i품목 수입액

무역특화지수의 평가기준은 일반적으로 <표 3-1>과 같으며 동지수가 -1인 경우

는 완전수입특화, 0인 경우는 비교우위중립적인 상태, +1인 경우에는 완전수출특화를 나타낸다. 동지수의 값이 0~1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무역흑자 상태로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0~-1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무역적자 상태로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품목별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무역특화지수를 비교하여, 한국과 아세안 국가가 품목별로 어떠한 수준의 경쟁관계에 있는지를 <표 3-2>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무역특화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품목별 수출입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AO의 수산분야 데이터베이스인 Fiahstat+를 이용하여 HS code 6단위 분류 체계 하에서 2003년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특화지수를 산정하였다(<부록 1> 참조).

<표 3-1> 무역특화지수의 평가기준

무역특화지수(TSI)	무역특화정도
0.5 < TSI ≦ 1.0	무역특화가 매우 강함
0.0 < TSI ≦ 0.5	무역특화가 강함
-0.1 ≦ TSI ≦ 0.1	무역특화가 어느 정도 중립
-.05 ≦ TSI < -1.0	무역특화가 약함
-1.0 ≦ TSI < -.05	무역특화가 매우 약함

<표 3-2>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별 국가간 경쟁관계 판단기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평 가
한국 ≥ 0.5, 아세안 국가 ≥ 0.5	경쟁관계 강함
한국 ≥ 0.5, 0 < 아세안 국가 < 0.5	경쟁관계 있음
0 < 한국 < 0.5, 아세안 국가 ≥ 0.5	
0 < 한국 < 0.5, 0 < 아세안 국가 < 0.5	
한국 ≥ 0.0, 아세안 국가 < 0.0	보완관계 있음
한국 < 0.0, 아세안 국가 ≥ 0.0	
한국 < 0.0, 아세안 국가 < 0.0	경쟁관계 없음

2. 시장비교우위지수(MCA)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한 국가가 수출한 품목이 특정국가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당 품목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text{시장비교우위지수} = \frac{(KX_{ij})}{(WX_{ij})} / \frac{(KX_{j})}{(WX_{j})} ,$$

단, KX_{ij} : ASEAN 회원국으로부터의 품목 i의 수입액

WX_{ij} : 국내 시장에서 i품목의 총수입액

KX_{j} : 한국시장의 대ASEAN 회원국 수입

WX_{j} : 한국시장의 총 수입액

시장비교우위지수를 바탕으로 품목별 경쟁력을 평가할 때에는 지수의 절대치와 함께 지수의 변동성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절대치를 바탕으로 평가할 때에는 지수가 1보다 크면 일단은 해당 폼목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1보다 작으면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보다 이 지표가 갖는 의미는 변동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해당 품목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국내 수출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HS Code 10단위 분류 체계에서 산정하였다(<부록 2> 참조).

제2절 품목별 경쟁력 측정

1.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별 경쟁관계 분석

가. 베트남과의 경쟁관계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에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이지만, 교역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품목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냉동 가다랑어 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베트남의 경쟁 품목

품목번호	품목명	한국	베트남
0303-49	기타다랭어(냉동, 간장과 어란제외)	0.76	0.97

자료 : FAO, Fishstat+ Database, www.fao.org.

나. 태국과의 경쟁관계

무역특화지수를 바탕으로 할 때 국제시장에서 한국과 태국간에 경쟁관계에 있는 수산품목은 HS code 6단위 분류체계 하에서 모두 13개 품목으로, 한국과 태국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수산품목 73개 중 약 18%에 해당한다. 이 중 7개 품목이 강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완관계에 있는 품목은 49개로 나타났다 (<부록 1>). 또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의 경우에도 교역량이 많지 않아, 한국과 태국의 수산업은 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가 더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4>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태국의 경쟁 품목(2004년)

품목번호	품 목 명	한 국	태 국
0305-63	멸치(염장, 염수장한 것)	0.97	0.99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0.78	0.85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53	0.99
1604-13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스프랫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79	0.99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0.76	1.00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 제외)	0.82	0.98
1605-40	기타 갑각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93	0.97
0302-29	기타 넙치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제외)	0.05	0.84
0303-31	냉동넙치(간장과 어란제외)	0.07	0.40
0303-76	냉동뱀장어(간장과 어란제외)	0.02	0.63
0304-10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 어육(신선, 냉장)	0.96	0.05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0.77	0.10
1604-15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것)	0.35	1.00

자료 : 상게서

다. 인도네시아와의 경쟁관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경쟁관계에 있는 수산품목은 모두 19개 품목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수산품목 72개 중 약 1/4에 해당한다. 이 중 13개 품목이 강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완관계에 있는 품목은 46개로 나타났다(<부록 1>). 인도네시아와도 수산업에 있어서 보완관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다랑어류 제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매우 강한 경쟁관계에 있고, 일부 냉동어류 제품에서도 경쟁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조류에서도 경쟁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는 품목이 달라 실제로는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표 3-5>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쟁 품목

품목번호	품 목 명	한 국	인도네시아
0302-39	가타다랭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1.00	0.99
0303-41	날개다랑어, 간지느러미다랭어 (터너스 알라룽가)	0.99	0.65
0303-42	냉동황다랭어(간장과 어란제외)	0.95	0.91
0303-43	가다랭어, 줄무늬버니토우 (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93	0.73
0303-49	기타다랭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76	1.00
0304-10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어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96	1.00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0.77	1.00
0305-63	멸치 (염장 ,염수장한것)	0.97	1.00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0.78	0.73
1212-20	해조류와 기타 조류	0.74	1.00
1302-31	한천	0.86	0.97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것)	0.53	1.00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0.76	1.00
1605-40	기타 갑각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것)	0.93	0.46
0302-29	기타 넙치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0.05	0.10
0302-40	청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1.00	0.26
0303-31	냉동넙치(간장과 어란 제외)	0.07	0.17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산것 ,신선 ,냉장한것)	0.49	0.99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 제외)	0.82	1.00

자료 : 상게서

라. 필리핀과의 경쟁관계

한국과 필리핀 간에 경쟁관계에 있는 수산품목은 모두 11개 품목으로, 한국과 필리핀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수산품목 53개 중 약 1/5에 해당한다. 이 중 8개 품목이 강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완관계에 있는 품목은 37개로

나타났다(<부록 1>). 전반적으로 보완관계가 높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랑어류 제품과 일부 냉동어류 제품에서 경쟁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조류의 경우에는 생산 품목이 달라 지수에 의한 평가와는 달리 실제로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표 3-6>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필리핀의 경쟁 품목

품목번호	품 목 명	한 국	필리핀
0302-40	청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제외)	1.00	1.00
0303-42	냉동황다랭어(간장과 어란제외)	0.95	0.98
0303-43	가다랭어, 줄무늬버니토우 (냉동, 간장과 어란제외)	0.93	0.95
0304-10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어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96	1.00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0.74	0.99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0.76	1.00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 제외)	0.82	0.77
1605-40	기타 갑각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것)	0.93	1.00
0509-00	동물성해면	0.69	0.40
1604-13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스프랫 (조제 또는저장처리한것)	0.79	0.34
1604-15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것)	0.35	0.09

자료 : 상게서

마. 말레이시아의 경쟁관계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에 경쟁관계에 있는 수산품목은 모두 7개 품목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수산품목 61개 중 약 11%에 해당한다. 이 중 4개 품목이 강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완관계에 있는 품목도 30개로 나타나, 어업생산이 많은 아세안 주요 5개국 중 수산업에 있어서 한국과 경쟁관계뿐만 아니라 보완관계도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표 3-7>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쟁 품목

품목번호	품 목 명	한 국	말레이시아
0302-39	가타다랭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제외)	1.00	0.55
0302-40	청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제외)	1.00	1.00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0.78	1.00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0.77	0.70
0305-63	멸치 (염장, 염수장한것)	0.97	0.33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49	0.54
1604-13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스프랫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79	0.23

자료 : 상게서

2.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품목별 경쟁력 분석

가. 베트남

베트남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 상대적 비중이 높은 수산품목은 새우 제품과 쥐치포, 바지락, 피조개 등 쌍각조개 제품, 그리고 쭈꾸미,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등의 두족류 제품이다. 이 중 시장비교우위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제품은 냉동 피조개로서, 2004년도 한국에 대한 연간 수출실적은 385천 톤, 1,390 달러에 이른다. 2002년도 동 품목의 한국 수출실적은 11천 톤, 20천 달러로서 3년간 물량기준으로 무려 35배, 금액기준으로는 70배 정도 급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개류 수출의 빠른 증가는 국내 동일품목 양식 어가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점이다.

다만 베트남 현지 출장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의 쌍각류 조개 양식은 아직 국내 양식어가에 위협을 줄만큼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생산량의 상당량이 일본에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바지락의 경우에는 국산과 맛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쌍각류 조개의 수입 증가가 당분간은 국내 양식어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국내 시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이후에는 베트남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증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베트남으로부터의 쌍각류 조개 제품의 수입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3-8> 베트남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

품목번호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2~'04)
1605-20-9010	새우, 보리새우 (훈제,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5.48	15.10	15.76	0.90
1604-19-9010	쥐치포(조제 또는 저장처리)	15.17	14.51	15.27	0.33
0307-49-3000	갑오징어, 오징어(건조한 것)	12.94	13.44	13.66	2.74
0307-59-1030	쭈꾸미	13.63	12.91	13.65	0.07
1605-90-1030	바지락	15.02	8.79	12.41	-9.10
0307-99-1150	피조개(냉동)	5.47	9.98	12.23	49.53
0307-49-1010	냉동갑오징어	8.52	8.25	7.89	-3.77
0307-99-3190	기타연체동물(염장, 염수장)	9.89	14.03	5.39	-26.18
0304-90-1090	기타활어	4.02	4.84	5.25	14.28
0305-59-2000	건조문어	11.28	10.82	5.23	-31.91
0307-99-1130	바지락(냉동)	4.40	8.75	3.85	-6.46
0306-13-1000	새우살(냉동)	2.42	3.26	3.21	15.17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년도.

<표 3-9> 베트남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

품목번호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2~'04)
0307-99-1150	피조개(냉동)	5.47	9.98	12.23	49.50%

자료 : 상게서

나. 태국

태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 시장비교우위지수가 높은 품목은 주로 새우 제품과 다랑어류 가공품, 어류 가공품과 일부 연체동물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시장비교우위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제품은 냉동 문어와 활·선 상태의 새우제품, 밀폐용기에 저장처리한 어류제품, 기름에 담근 다랑어 가공품, 연체동물 가공품 등이다. 냉동 문어의 경우에는 2002년도 태국의 대한국 수출실적이 6,720톤, 75,338 달러에서 2004년도에는 75,338 톤, 271,800 달러로, 물량기준으로 11배, 금액기준으로 31배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활·선 새우제품은 1999년부터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도 이후 지난 3년간 태국으로부터의 활·선 새우제품의 수입실적은 96천 톤, 382천 달러에서 2,440천 톤, 18,442천 달러로, 물량기준으로 25배, 금액기준으로 48배나 증가하였다. 활·선 상태의 제품은 국내 연근해 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태국 수산품목에 대한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과거 새우제품과 다랑어 가공품 중심에서 최근에는 연체동물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태국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

품목번호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2~'04)
1604-14-1019	기타다랑어	22.14	20.42	20.02	-4.91%
1605-20-9020	새우와보리새우(브레드)	20.79	18.62	19.19	-3.93%
1604-14-1011	다랑어(기름담근 것)	4.86	17.39	17.7	90.84%
1603-00-4000	어류의 즙	9.82	16.57	15.27	24.70%
1605-10-1010	게살(밀폐용기에 넣은 것)	19.64	18.39	14.62	-13.72%
1604-13-1000	정어리(밀폐용기에 넣은 것)	11.9	11.81	13.78	7.61%
1603-00-3000	어류의 엑스	9.50	11.1	13.17	17.74%

자료 : 상게서

<표 3-10> 태국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 -계속

품목번호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2~'04)
0306-23-1000	새우,보리새우(산것/신선,냉장)	1.25	5.72	12.08	210.87%
0307-99-3930	해파리(염장,염수장)	13.54	12.57	11.18	-9.13%
0306-13-9000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11.17	11.46	10.23	-4.30%
1605-20-9090	새우,보리새우(기타)	15.71	13.95	10.13	-19.70%
1604-20-4090	생선묵(기타)	7.01	8.65	9.13	14.12%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4.13	6.70	6.64	26.80%
1604-19-10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어류(밀폐용기에 넣은 것)	0.08	0.67	4.35	637.39%
1604-16-9000	멸치(통조림외조제품)	4.31	1.51	3.87	-5.24%
0306-13-1000	새우살냉동)	6.45	4.57	3.83	-22.94%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넣은것)	3.37	2.96	3.78	5.91%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0.04	0.00	3.60	848.68%
0301-10-2000	열대어(관상어/활어)	1.20	3.02	3.33	66.58%
0307-59-1010	문어(냉동)	0.04	0.00	2.99	764.58

자료 : 상게서

<표 3-11> 태국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

품목번호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2~'04)
0307-59-1010	문어(냉동)	0.04	0.00	2.99	764.58
1604-19-10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어류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8	0.67	4.35	637.39
0306-23-1000	새우와보리새우(산것/신선,냉장)	1.25	5.72	12.08	210.87
1604-14-1011	다랑어(기름담근 것)	4.86	17.39	17.70	90.84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넣은것)	1.20	3.02	3.78	77.48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4.13	6.70	6.64	26.80
1603-00-4000	어류의 즙	9.82	16.57	15.27	24.70

자료 : 상게서

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 시장비교우위지수가 높은 품목은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상어 간유와 다랑어류 냉동품, 해조류, 연체동물 제품, 그리고 새우 제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시장비교우위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제품은 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냉동 문어와 횟감용 황다랑어(신선, 냉장), 해조류(코토니, 스피노잠), 기타 연체동물 제품과 냉동 황다랑어 등이다. 냉동 문어의 경우에는 2002년도 이후 지난 3년간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실적이 32천 톤, 42천 달러에서 79천 톤, 130천 달러로, 물량기준으로 2.5배, 금액기준으로 3.1배 증가하였다.

<표 3-12>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

품목번호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2~'04)
1504-10-1000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상어의간유)	72.00	67.71	73.98	1.37
0302-34-0000	눈다랑어(신선,냉장)	60.09	63.71	66.69	5.35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38.82	46.67	65.70	30.09
0305-49-9000	기타어류(훈제)	61.60	61.33	57.04	-3.77
0303-79-7000	전갱이(냉동)	54.91	41.23	50.13	-4.45
0302-32-0000	황다랑어(신선,냉장)	3.98	39.66	31.66	182.04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19.32	18.06	21.28	4.95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7.09	0.03	20.22	68.88
0307-99-3920	해삼(염장,염수장)	11.10	0.45	18.87	30.38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넣은것)	55.83	27.12	10.55	-56.53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14.42	11.15	9.86	-17.31
0307-99-3930	해파리(염장,염수장)	7.63	3.58	9.82	13.45
1212-20-9019	코토니 및 스피노잠(냉동이외기타)	2.18	12.36	9.76	111.59
0303-79-3000	갈치(냉동)	6.10	7.00	6.29	1.55

자료 : 상게서

<표 3-12>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 - 계속

품목번호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2~'04)
0301-10-9000	활어(금잉어, 열대어이외기타/관상용/활어)	4.26	2.97	6.02	18.88
0307-49-1020	오징어(냉동)	7.80	9.77	5.45	-16.41
0307-59-1010	문어(냉동)	0.64	1.48	5.24	186.14
0306-13-9000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3.61	3.06	4.51	11.77
0307-91-9090	기타수생동물	1.31	5.18	4.10	76.91
0306-23-1000	새우와보리새우 (산것/신선,냉장)	6.61	6.34	3.61	-26.10

자료 : 상게서

<표 3-13>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

품목번호	품목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2~'04)
0307-59-1010	문어(냉동)	0.64	1.48	5.24	186.14
0302-32-0000	황다랑어(신선,냉장)	3.98	39.66	31.66	182.04
1212-20-9019	코토니 및 스피노잠 (냉동이외기타)	2.18	12.36	9.76	111.59
0307-91-9090	기타수생동물	1.31	5.18	4.10	76.91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7.09	0.03	20.22	68.88
0307-99-3920	해삼(염장,염수장)	11.10	0.45	18.87	30.38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38.82	46.67	65.70	30.09

자료 : 상게서

라. 필리핀

필리핀이 한국에 수출하는 수산품목 중 시장비교우위지수가 높은 품목은 동물성 해면, 틸라피아 활어, 해조류(코토니, 스피노잠), 새우 제품, 냉동 어류 및 가공 제품, 관상용 열대어 등이다. 이 중 활·선어 상태의 새우제품의 지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어서, 수입선이 태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비교우위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제품은 밀폐용기에 넣은 전복 제품과 훈제 청어, 동물성 해면 등이다.

<표 3-14> 필리핀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

품목번호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2~'04)
0509-00-0000	동물성의 해면	54.34	24.47	80.48	21.70
0301-99-9030	틸라피아(활어)	97.04	73.25	80.40	-8.98
1212--20-9019	코토니 및 스피노잠 (냉동이외기타)	81.23	55.48	60.41	-13.76
1605-90-1091	전복(밀폐용기에 넣은 것)	19.16	14.27	53.98	67.85
0302-32-0000	황다랑어(신선,냉장)	86.96	33.44	45.35	-27.78
0305-42-0000	청어(훈제)	10.82	21.67	26.85	57.53
0306-23-1000	새우와 보리새우 (산것, 신선 또는 냉장)	66.31	38.98	25.28	-38.26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34.76	18.01	22.61	-19.35
1604-13-1000	정어리(밀폐용기에 넣은것)	14.42	29.13	19.89	17.45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45.39	22.92	10.93	-50.93
0306-13-9000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8.88	7.66	8.23	-3.73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7.30	3.86	7.41	0.75
0303-79-7000	전갱이(냉동)	8.57	2.90	5.31	-21.29

자료 : 상게서

<표 3-15> 필리핀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

품목번호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2~'04)
0305-42-0000	청어(훈제)	10.82	21.67	26.85	57.53
0509-00-0000	동물성의 해면	54.34	24.47	80.48	21.70

자료 : 상게서

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 시장비교우위지수가 높은 품목은 어류 가공품과 냉동 어류, 두족류, 해삼, 해파리 등을 포함하는 연체동물 제품, 새우가공품, 관성용 열대어 등이다. 이 중에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제품은 기타 연체동물, 냉동 새우살, 해삼 가공품, 관상용 열대어 등이다.

<표 3-16> 말레이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

품목번호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2~'04)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15.41	14.07	15.82	1.32
0307-99-3930	해파리(염장,염수장)	19.92	16.01	14.28	-15.33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2.52	9.74	7.02	66.90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5.62	4.45	6.98	11.44
0306-13-1000	새우살(냉동)	1.55	1.09	5.43	87.17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3.49	9.74	5.36	23.93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1.00	2.30	4.63	115.17
0306-13-9000	기타새우와 보리새우(냉동)	4.99	4.06	4.07	-9.69
0307-59-1030	쭈꾸미(냉동)	3.22	3.41	3.95	10.76
0303-79-7000	전갱이(냉동)	4.01	4.61	3.94	-0.88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20.05	3.99	3.75	-56.75

자료 : 상게서

<표 3-17> 말레이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

품목번호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02~'04)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1.00	2.30	4.63	115.17
0306-13-1000	새우살(냉동)	1.55	1.09	5.43	87.17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2.52	9.74	7.02	66.90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3.49	9.74	5.36	23.93

자료 : 상게서

제3절 분석결과 종합

무역특화지수를 바탕으로 아세안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랑어류 제품을 제외하고는 경쟁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 국가로부터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못한 수산가공품이 주로 수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러한 결과는 관세 인하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국내 연근해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다랑어류 제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이 매우 강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아세안 FTA 체결이 국내 원양어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횟감용 및 가공용 다랑어류의 교역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 수출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통조림 등 다랑어 가공품에 있어서는 아세안이 한국에 대해 수출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공원료용 다랑어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양허하고 다랑어류 가공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미양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세안은 그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다. 한-아세안 FTA 협상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산부문의 상품양허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바탕으로 아세안으로 수입되는 수산품목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아세안 국가로부터 오징어, 갑오징어 등 연체동물 관련 품목과 쌍각 조개류 관련 품목, 활·선 상태의 새우제품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는 현재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체동물류 품목의 수입비중 증가는 국내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바지락, 피조개 등의 조개 제품과 활·선어 상태의 새우제품의 수입비중 증가도 국내 관련 양식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4장 한-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분석

제4장 한-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분석

제1절 한-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

1. 아세안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

가. 아세안의 수산물 관세정책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하기 위해 공동특혜관세조치인 CEPT(Common Effective Preferrential Tariff, 이하 '공동관세율"이라 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1992년 4월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고위각료회의(SEOM)에서 역내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었고, 아세안 각국은 관세인하대상 공산품과 예외품목의 잠정리스트 그리고 관세인하 스케줄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부터 AFTA가 정식 개시하게 되었으며 동년 10월 제25차 경제장관회담회의에서 공동관세율 CEPT 적용품목목록을 확인하고, 11월부터 CEPT 관세인하를 개시하였다.

2003년 기존 6개국은 관세 인하 적용품목을 총 4만 9,445개로 설정하였고 5% 이하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전체 품목의 98.9%에 이르고 있고, 5%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1.1%에 불과하다. 국별 관세 인하 실행률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와

태국은 관세 인하 품목에 대해서 전 품목 모두 관세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전체 품목의 99.54%, 98.83%, 97.32%, 96.7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한편 후발가입국인 베트남은 전체 품목의 94.89%를 관세인하계획에 적용시켜 5% 이하로 관세를 낮추었으며, 라오스와 미얀마는 각각 71.3%, 76.43%이나 캄보디아는 아직 45.66%에 불과하다.

그러나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2010년 이내에 역내 수입관세를 완전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후발 가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5년 이내에 역내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하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2018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즉, AFTA는 CEPT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역내 상품 수입관세를 꾸준히 인하해 향후 역내 관세율을 5% 이하로 적용하고, 수입물량 규제 및 기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아시아 최초의 경제통합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4-1> ASEAN 회원국의 CEPT 관세인하품목(2003년)

	관세인하품목					비율(%)				
	IL	TEL	GEL	SL/HSL	계	IL	TEL	GEL	SL/HSL	계
브루나이	6,337	-	155	-	6,492	96.71	-	2.39	-	100.00
인도네시아	7,444	-	77	11	7,532	98.83	-	1.02	0.15	100.00
말레이시아	10,116	218	53	8	10,395	97.32	2.10	0.51	0.80	100.00
필리핀	5,632	-	16	10	5,658	99.54	-	0.28	0.18	100.00
싱가포르	10,705	-	-	-	10,705	100.00	-	-	-	100.00
태 국	9,211	-	-	-	9,211	100.00	-	-	-	100.00
선가입국	49,445	218	301	29	49,993	98.90	0.44	0.60	0.06	100.00
캄보디아	3,115	3,523	134	50	6,822	45.66	51.64	1.96	1.96	100.00
라오스	2,535	864	74	78	3,551	71.39	24.33	2.08	2.20	100.00
미얀마	4,182	1,224	48	18	5,472	76.43	22.37	0.88	0.33	100.00
베트남	10,143	41	416	89	10,689	94.89	0.38	3.89	0.83	100.00
후가입국	19,975	5,652	672	235	26,534	75.28	21.30	2.53	0.89	100.00
합 계	69,420	5,870	973	264	76,527	90.71	7.67	1.27	0.34	100.00

자료: ASEAN 사무국

주 : TEL(Temporary Exclusion List)은 일시예외품목, GEL(General Exclusion List)은 일반예외품목이며, SL/HSL(Sensitive/High Sensitive List)은 민감/고민감품목을 일컬음

<표 4-2> ASEAN 회원국의 역내 관세율 인하추이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싱가포르	0.00	0.00	0.00	0.00	0.00	0.00
태국	10.56	9.75	7.40	7.36	6.02	4.64
브루나이	1.35	1.29	1.00	0.97	0.94	0.87
인도네시아	7.04	5.85	4.97	4.63	4.20	3.71
말레이시아	3.58	3.17	2.73	2.54	2.38	2.06
필리핀	7.96	7.00	5.59	5.07	4.80	3.75
베트남	6.06	3.78	3.30	2.90	2.89	2.02
미얀마	4.47	4.45	4.38	3.32	3.31	3.19
라오스	5.00	5.00	5.00	5.00	5.00	5.00
전체평균	5.37	4.77	3.87	3.65	3.25	2.68

자료: ASEAN 사무국

나. 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관세율 구조

아세안은 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따로 구분한 자료를 없기 때문에 한국의 수산물 분류표(HS코드)를 기준으로 아세안의 공동유효특혜관세를 구분하였다.[6] 그 중 싱가폴과 브루나이는 수산물을 비롯한 전품목이 무관세이기 때문에 굳이 수산물 관세 분류표를 만드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두 국가는 제외시켰고, ASEAN 후가입국인 라오스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수산물 생산이 미비하여 수산물 관세율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6) 제1류 산동물,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수생무척추동물,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 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등임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산물 품목 수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며, 그 뒤를 이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순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 가운데 역외국에 대한 관세율 적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태국으로써 역내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또는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40~60%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수산물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01류, 02류, 05류, 12류, 13류에 대해서는 역내국과 역외국에 모두 무차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지만 03류의 0305(건염훈)류와 0306(갑각류)류에 대해서는 역내국은 0% 또는 5%를 적용하고 역외국은 0%, 7%, 8%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류(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의 1603류는 역외국에 대해서 역내국의 4배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1604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어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는 역내국은 0% 또는 5% 관세를 적용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0%, 5%, 6%, 8%, 20% 등 5등급의 관세율로 분류해 적용하고 있어 역외국 차별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 ASEAN 6개국의 수산물 관세 총 품목수와 적용관세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총 품목수	195	194	190	188	186	142
역외국 적용관세율	0~20%	40~60%	1~40%	0~15%	0~30%	0~10%
역내국 적용관세율	0%, 5%	0%, 5%	0, 3%, 5%	0%, 2%, 5%	0%, 5%, 15%	0%, 1%, 1.5%, 5%

자료: 아세안 CEPT관세율표.

다. ASEAN 6개국의 03류 관세율 구조

아세안 6개국의 03류는 전체 수산물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7] 특히 인도네시아의 03류 품목수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순이다. 하지만 전체 수산물 대비 03류의 비중으로 보면 인도네시아의 03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미얀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03류의 적용관세율은 역내국에게 대해서는 아세안 선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는 무관세 또는 3%, 5%의 저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아세안 후가입국인 베트남은 역내국에 대해서는 15%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역외국에 대해서는 아세안 선가입국, 후가입국에 상관없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태국은 03류에 대해서 일괄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태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역외국은 아세안 경제무역지역으로 가장 큰 차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베트남이 10%, 3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은 역외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가장 세분화시켜서 부과하고 있다.

<표 4-4> 아세안 6개국의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03류 기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03류 총 품목수 (비중%)	145 (77)	137 (72)	136 (70)	136 (73)	118 (60)	100 (70)
역내관세율	0%, 5%	0%, 3%, 5%	5%	0%, 5%, 15%	0%, 5%	0%, 1%, 5%
역외관세율	0%, 5%, 15%	1%, 3%, 5%, 7%, 10%, 15%	60%	0%, 10%, 30%	0%, 7%, 8%	0%, 1%, 10%

자료: 아세안 CEPT관세율표.

7) 03류는 0301(활어), 0302(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0303(냉동어류), 0304(어류의 피렛트와 기타의 어육),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 0306(갑각류), 0307(연체동물)등 7개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음

2. 한국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

가. 한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우리나라 수산업은 WTO/DDA 다자간 협상에서 관세인하와 보조금 철폐 주장의 확산, 국제기구에서 자원관리의 강화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압력과 연근해 어장의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자원감소로 인하여 최근 수산업이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은 지금까지의 수산물을 어획하는 생산위주의 정책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및 기르는 어업을 강화하여 불법 및 과잉 어획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생산정책의 변화와 함께 안정적인 수입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60년대 절대빈곤의 탈출이라는 경제개발 정책을 바탕으로 수산물 수출진흥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1970년대 수산물 수출 진흥기를 경험하였다. 1980년대 품목 다양화와 수출국 다변화, 수출추천품목의 선정 등을 통하여 수출진흥책을 이어나갔으나, 1990년대 들어와 국내 수산물 생산이 감소 추세에 따라 수산물 수출도 감소로 전환되게 되었다.

수산물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적 조치를 중심으로 시장개방화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1946년 이래 1955년 후반까지는 품목별 수출입면허제와 수입할당제를 실시하였으며, 허가 또는 금지되는 수출입 품목의 명세를 포함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의 무역계획을 발표하고 수입허가 품목의 목록에는 반기별 쿼터를 명세화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에도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포지티브리스트는 계속 실시되었으나, 1964년 정부는 전면적인 수출입 링크제를 폐지하고 반기별 무역계획에 포함된 수입쿼터 품목을 축소함으로써 비관세 수입규제를 완화하였음. 이러한 수입쿼터 품목은 점차 축소되어 마침내 1967년 상반기 수출입 공고부터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수산물의 경우, 1966년 수산청이 발족함에 따라 같은 해 하반기부터 무역계획 중 수산청 추천분에 대한 수입추천요령이 공고되었다. 1967~1977년에는 당시의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로 변경시키는 등 산업·무역 정책분야에

서 정부는 무역자유화를 취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수입을 줄이기 위해 수입부담금 적립제를 1968년부터 강화하기도 하였으나 1970년에는 지정지역에 대한 수입부담금 적립제도는 폐지하였다.

1982년에는 생산어업인의 소득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는 비대중성 어종과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수입될 수 없는 수출 주도 품목 등 23개 품목을 선정하여 수입을 자유화하였으며, 1986년 이전 기간 동안의 수산물 수입추이는 주로 수출용 원자재 위주로 수입되었으며, 1977년까지 전면 금지되었던 내수용 수입이 1978년에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산물의 국내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국내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대중성 어종도 수입하기도 하였으며, 해외합작사업에 의한 어획물 중 해외의 비기호품과 현지 수출 불가품의 국내반입을 위한 수입도 허용되었다.

1986년 UR협상에서 수산물은 임산물과 함께 시장접근그룹에 포함되어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수산업 구조 및 국제경쟁력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무세화나 관세하향 평준화를 핵심으로 하는 관세조화방식이 아닌 관세인하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수산물의 수입개방은 1986년도 세율과 1988년도 무역수입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약 32.3%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1990년 7월 각국이 관세양허계획(IRP : Initial Reduction Plan)제출에 합의하고 양자협상을 통하여 무역상대국에 대해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0년 11월 협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양허가 불가피한 품목 144개에 대한 양허계획(C/S)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1989년 10월 26일 GATT/BOP(국제수지위원회)에서는 한국이 1986년부터 3년간 국제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불허를 결정하였다(소위 BOP 결정). 따라서 한국은 수입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5년간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1997년 7월 1일자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개방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1986년 이전 수산물 시장개방화 정책은 수입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방법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을 허용하는 품목도 수출용 원자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물가 안정과 국산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게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계의 시장개방화 추세 및 수산물 국내시장의 수급 불안정으로 수

산물 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1년에 수산물 무역수지에 있어 72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2년에는 전체 수산물 수급에 있어 약 41.7%를 차지하는 등 수입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 수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수산물 시장개방 추세를 감안하고, 시장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나가되, 전략적 필요성과 타당성 및 국내 취약산업 등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나. 한국의 수산물 관세체계

현행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종가세 중심의 관세체계를 유지하면서 극히 일부 물품에 한하여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종량세, 종가세와 더불어 종가종량선택세와 종가종량복합세(병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대비되는 관세체계이다.[8] 종량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식품의 경우 농산물의 곡류, 서류, 채소류, 특작류, 축산물의 천연꿀, 임산물의 산림부산물, 수산물(종가종량선택세) 등이며, 공산품의 경우는 영화용 필름과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전체 수입품의 0.2%에 지나지 않아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종가세 위주의 관세체계는 관세운영이 투명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저가·저질의 수입급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조정관세품목중 7개 품목에 종가종량선택세제도를 도입·운영하였으나,[9]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관리 및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정관세제도는 수산물 이외에도 일부 식료품 및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수산물에 부과되는 조정관세는 기본세율(10~2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10]

조정관세품목을 포함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격차에 상당한 비율을 가산한 관세율의 범위 안에서 부과

8) 우리나라의 관세율 체계는 총 수입대상품목(HS 10단위 기준 10,417개 품목)의 99.8%가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미국, EC,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9) 연도별 종가종량선택 조정관세품목 현황은 2001년 6개, 2002년과 2003년은 4개 품목임.

10) 1999년 3090%, 2000년도 2580%, 2001년도 2570%임.

할 수 있는 할당관세와 비관세제도의 병행을 통해 수입관리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관세제도는 수산식품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정관세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 1994년(94.1.1 , 94.6.30)에 냉동어류(HS 0303)와 갑오징어 및 오징어(HS 0307)의 2개 품목에 대해 각각 126,500 톤과 80,500 톤을 넘는 수입에 5%의 할당관세를 부과한 사례 등 극히 적용사례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탄력관세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조정관세에 의해서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HS품목은 총 40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1] 총 403품목 중에서 03류가 262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6류 66개(16.5%), 12류 39개(9.8%)로 3개 부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식품 전체의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표 5-1>과 같이 수산식품의 종류는 제1류부터 제23류까지 10개류로 구성되어 있고, 관세율 범위는 2~70%까지 1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제기준상 고관세로 분류되고 있는 15% 이상이 276개로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있다.

다. 한국의 수산물 관세율 구조

2003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HS품목은 총 406개 품목이다. 그 중에서 03류가 265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6류 66개(17%), 12류 39개(9.8%)로 3개 부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전체 406개 수산물 품목(HS 분류)의 기본관세는 3%~5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7.58%이다. 그 중 92%에 해당하는 373개 품목이 중심 세율인 8%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전체 수산식품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 (HS 03류, 265개 품목)는 3단계(5%, 10%, 20%)의 관세율 구조로 매우 단순하며, 그 중에서 굴치패(0307-10-1010) 1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10%(100개), 20%(164개)라는 2단계의 균등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산가공식품류인 16류는 관세율 20%를 적용받는 품목이 63개, 30%의 관세율에 해당하

11) 2003년 신설 HSK품목은 냉동 틸라피아 피레트(0304-20-7000, 10%), 산것·신선냉장 대게(0306-24-1020, 20%), 기타 냉동문어(0307-59-1090, 20%) 등 3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었음, 해양수산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2003.

는 품목이 3개로 다른 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표 4-5> 한국의 수산물 전체 관세 체계 (HS 2단위 기준)

구 분	한 국	
	기본관세	실행관세
총 품목수	406	
관세율 구조	8단계	9단계
평균 관세율	17.5%	18.34%

자료: 해양수산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수산물」, 2003, 한국무역협회
주 : 01류: 산동물, 02류: 육과 식용설육, 0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0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13류: 락, 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5류: 동·식물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 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한국의 전체 수산물 가운데 03류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6>에서 보는 것처럼 03류의 품목 수는 265개이며 수입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 구조는 9단계이며, 실행평균 관세율은 18.3로써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적용된다.

<표 4-6> 03류의 한중일 수산물 관세 체계 비교 (HS 4단위 기준)

구 분	한 국	
	기본관세	실행관세
품목 수	265	
관세율 구조	3단계	9단계
평균 관세율	16.2%	18.3%

자료: 한국해양수산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수산물」, 2003, 한국무역협회
주 : 03류의 HS 4단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0301: 활어, 0302: 신선 또는 냉장어류, 0303: 냉동어류, 0304: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305: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 갑각류, 0307: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3류(HS 4단위) 중 15%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전체 총 265개 품목 중 81%인 173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0301(활어), 0303(냉동어류) 및 0304(어류의 필렛 및 기타어육) 등은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0302(신선냉장어류) 및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은, 0307(연체동물과 수중무척추동물) 등은 비교적 고관세의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03류의 실행관세율이 고차 가공될수록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0305류인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의 관세율은 다른 류의 평균 관세율보다 월등이 높아 한국은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가공수산물의 경우,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저질의 저가 수산물 수입은 제한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표 4-7> 03류의 실행 관세율 (HS 4단위 기준)

	0301류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0306류	0307류
0%							
1~5%							1
6~10%	24		51	11			5
11~20%		38		6	38	20	59
21~30%	1		1			1	1
31~40%	1		2				1
41~50%							
51~60%	2					1	
61~70%			1				
합 계	28	38	55	17	38	22	67

주 : 0301: 활어, 0302: 신선 또는 냉장어류, 0303: 냉동어류, 0304: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305: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 갑각류, 0307: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표 4-8> 아세안 주요국의 03류 수산물의 관세율체계

국가	03류																				총품목수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태국	13	60	5	25	60	5	30	60	5	3	60	5	13	60	5	25	60	5	27	60	5	136
인도네시아	15	0%:6 5%:2 15%:7	0%:7 5%:8	27	0%:1 5%:26	0%:1 5%:26	31	0%:1 5%:30	0%:1 5%:30	3	4	4	15	0%:1 5%:14	0%:1 5%:14	26	5	5	28	5	5	145
베트남	13	0%:3 10%:10	0%:3 5%:7 15%:3	25	30	5	30	30	5	3	30	5	13	30	5	25	0%:3 30%:22	0%:3 5%:22	27	30	5	136
필리핀	14	1%:3 3%:7 7%:4	0%:7 3%:7	25	5%:12 7%:10 10%:5	0%:13 3%:5 5%:7	30	5%:9 7%:18 10%:3	0%:12 3%:8 5%:10	3	7	5	13	10%:7 15%:6	5	25	5%:7 7%:7 10%:1 15%:10	0%:14 5%: 11	27	3%:8 10%: 17	0%:8 5%:19	137
미얀마	5	0	0	21	10	5	24	10	5	3	10	5	12	1%:7 10%:5	1%:7 5%:5	16	0%:4 1%:2 10%:10	0%:4 1%:2 5%:10	19	0%:7 10%:12	0%:7 5%:12	100
말레이시아	7	0	0	11	0	0	28	0	0	3	0	0	25	0%:4 7%:17 8%: 4	0%:4 5%:21	17	0%:13 8%: 4	0%:14 5%:3	27	0	0	118

<표 4-8> 아세안 주요국의 03류 외 수산물의 관세율체계 - 계속

국가	01류			02류						05류												12류			13류		
	0106			0208			0210			0507			0508			0509			0511			1212			1302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태국	10	40	0%:7 5%:3	3	60	5	2	60	5	1	35	5	3	35	5	1	35	5	3	35%:2 60%:1	0	3	40	0	1	30	0
인도네시아	4	0	0	2	5	0	2	5	5	2	5	5	3	0	0	1	5	2,5	3	5%:2 15%:1	5	3	5	5	1	5	5
베트남	3	5	5	2	20	EX	2	20	5	1	5	5	3	5	5	1	5	5	3	20%:1 5%:2	5	3	10	5	1	5	5
필리핀	3	5	0	2	7	0	2	40	5	1	3	0	3	3	0	1	3	0	3	3	0	3	10	3	6	1%:1 3%:5	0%:5 5%:1
미얀마	1	0	0	0	15	5	1	10	5				3	1.5%:1 3%:1 5%:1	1	1	5	5	1	5	5	1	5	5	1	2	EX
말레이시아	5	0	0	1	0	0	2	0	0	2	0	0	1	0	0	1	0	0	4	0	0	1	0	0	1	0	0

<표 4-8> 아세안 주요국의 03류 외 수산물의 관세율체계 - 계속

국가	15류									16류									21류						23류		
	1504			1516			1521			1603			1604			1605			2104			2106			2301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품목수	세율(%)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태국	4	30	0%:1 5%:3	1	30	5	1	30	5	2	60	5	14	60	5	7	60	1%:1 5%:6	0			1	60	5	1	10	5
인도네시아	4	5		0	0		1	5	0	2	5		15	5	0%:8 5%:7	7	5	0%:1 5%:6				1	5		1	0	
베트남	4	10	5				1	3		2	50	15	15	50	15	7	50	15				1	20	15	1	10	5
필리핀	4	3	0				1	3	3	2	3	0	13	15	5	7	10%:4 15%:3	5				1	7	5	1	1	0
미얀마	5	1%:3 1.5%:2		2	1%:1 1.5%:1		1	1.5		1	15	10	17	7.5%:9 10%:8	5	5	10	5	1	15	15				1	10	EX
말레이시아	6	0		4	5%:2 10%:2	5	1	0		1	20	5	25	0%:7 5%:1 6%:3 8%:5 20%:9	0%:8 5%:17	16	0%:9 6%:5 8%:2	0%:9 5%:7	4	0%:2 20%:2	0%:2 5%:2				3	0	0

제2절 한-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비관세제도

1. 아세안의 수산물 비관세제도

비관세제도(비관세장벽)란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 지자체, 업계 등이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직·간접의 선별적 규제로 정의된다. 이러한 비관세제도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운용에 있어 자의적인 요소가 강하여 관세장벽에 비해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크다.

비관세 제도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WTO(세계무역기구) 기준, UNCTAD(UN무역개발회의)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WTO기준에 따르면 <표 4-9>와 같이 정부관여, 수입절차, 제품기준, 수입에 관한 특정 제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4-9> WTO의 비관세 장벽 분류

구 분	내 역
정부관여	국영무역, 정부 조달 등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반덤핑관세, 자의적 관세 분류, 구비서류 요구, 원산지 증명 등
제품 기준	보건 및 안전 기준, 용기 규정, 제조기준, 가공 규정 등
수입에 관한 특정제한	수량 제한, 수입금지, 수입허가, 관세할당 등
가격에 의한 규제	수입담보금, 영사수수료 등
기타 규제	광고 및 운송 규제, 제한적 상관행 등

이러한 분류를 중심으로 아세안의 국가별 비관세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아세안 FTA의 원산지규정, 양자간 FTA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아세안 국가별 HS품목별 수산물의 비관세제도에 대해서는 표로서 예시할 것이다.

2. 아세안 국가별 수산물 관련 비관세 제도

가.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제도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직접 수입제한조치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도네시아는 회교권 국가로 식품에 대한 검사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식품 수출량은 많지 않으며, 설탕과 같은 품목은 까다로운 조건 없이 수출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정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이 남아 있다.

<표 4-10>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제도 유형

유 형	내 용	비 고
수입규제	- 환경관련 유해물질 수입금지 - 166여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 특별 수입허가 취득 의무화 규정	
통관절차	- 통관규정 자의적 해석	
정부조달	- 외국인 제한 및 정부조달 입찰의 불투명성 - 외국업체 참가 제한	
기술장벽	- 식품에 대한 검사 요건 - 인도네시아어 사용설명서 및 보증서 규정	
지적재산권	- 벌칙조항 유명무실	
서비스장벽	- 영상물 산업 제한 - 건설, 건축, 엔지니어링 제한	
투자장벽	-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 외국인 고용제한 및 현지인 교육훈련 의무 - 체류비자 취득관련 애로 - 노동허가 취득관련 애로	
기타	- 수입부과금	

자료 : 미국(미구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무역협회(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등의 자료에서 발췌.

2001년 상반기 현재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는 8개,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투자개방분야는 9개, 조건부 외국인 투자 개방분야는 20개 분야이며,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인력관리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요건을 좀 더 완화시키고 외국인 고용제한 및 현지인 교육훈련 의무의 부담이 크다. 구체적 사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관절차

인도네시아 통관규정은 1997년 4월 수입후 검사제도(post-entry audit system) 및 수입자·은행·세관을 연결하는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 도입 이후 종전의 절차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실제운영에 있어서 검사관의 자의적인 규정해석 등 행태가 문제되고 있다.

(2) 수입규제

인도네시아는 국가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수입금지나 수입쿼타와 같은 수량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입은 허가된 수입업자만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은 환경관련 유해물질, 오존파괴물질, 납폐기물, 중국어로 표기된 인쇄물 등인데, 납폐기물, 중국어 표기 인쇄물 등은 특별허가를 얻을시 수입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데, 수입허가 대상품목은 1990년의 1,112개 품목에서 현재는 166개 품목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는 수입의 비중이 이제는 총수입의 10% 이하로 하락하였으나, 제조업생산의 30%와 농업생산의 35%는 아직도 허가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허가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주요 품목으로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음료수, 엔지니어링 제품, 수송장비, 기초금속 및 화학제품 등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와 수입허가품목의 수가 대폭 축소되고 제한범위가 완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도의 복잡성은 아직도 심각한 비관세 수입장벽이 되고 있다.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은 수입자에 한하여 수입을 할 수 있

다.

- 수입제한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General Importer : IT)
- 자기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생산자
- 대형장비, 전자장비 및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 등
- 폭발물의 경우 DAHANA(인도네시아 폭발물 공사) 및 Multi Nitrotama Kimia
- 석유 및 가스의 경우 PERTAMINA(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

그밖에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민감품목들에 대해서 수입쿼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건, 안전, 환경 및 치안상의 이유 외의 수량제한을 2001년 11월말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수입쿼타의 대상품목은 대체로 정부지정업체들이 수입하는 품목이나 정부기관 등이 수입하는 품목들이다.

(3) 반덤핑.상계관세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반덤핑 제소 등의 조치를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는 모든 무역관련 규정들이 해당부처의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규제 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즉각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반덤핑 제소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96년 6월 인도네시아 반덤핑 조사위원회 관계 규정이 정비되고, 1996년 9월에는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 인도네시아 업체들로부터 섬유, 주석판(tin plate), 철강 등 인도네시아 국내생산 제품과 경쟁이 되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여부의 조사요청을 받아 1997년 말까지 17개 품목(한국관련 1개 품목)에 대해 덤핑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다.

(4) 원산지규정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관세환급 신청시에나 요구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나. 베트남의 비관세 제도

베트남의 비관세제도도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은 검사·검역 및 통관제도, 수입규제조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검역·검사 및 통관

상업용 견본에도 일일이 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시간과 경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다. 베트남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회사들은 간혹 전혀 예상치 못한 까다로운 문제와 해결지연으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입절차가 특별히 복잡하지 않은데도 중앙 및 지방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처리 공무원에 따라 관계규정을 일관되게 적용치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생기는 현상이다.

(2) 수입규제

2001년 5월부터 2005년까지 적용될 베트남수출입운용시행령에 의한 수출입 금지품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금지 품목 : 무기류, 폭약류, 골동품, 마약류, 독극물, 원목, 야생동식물, 숯, 국가기밀보호와 관련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및 전문장비
- 수입금지 품목 : 무기류, 독극물, 폭약 및 폭죽류, 담배류, 음란문화상품, 중고소비제품(섬유류, 신발류, 의류, 전자제품, 냉동기기, 가전제품, 인테리어 제품, 도자기류, 가정용 금속/플라스틱/고무제품(세부품목 추후 별도공고), 우측핸들 차량(특장차 제외), 중고기기 및 제품(엔진, 타이어 및 튜브, 자동차부품, 오토바이, 자전거, 삼륜차, 30CV 이하의 연소엔진, 엠뷸런스, 16인승 이하의 중고자동차, '95년 이전에 생산된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5톤 이하의 트럭), 각섬석(amphibole)계통 석면 함유제품, 국가기밀보호와 관련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및 전문장비

(3) 환경관련 규제 조치

베트남 정부는 공해방지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은 산업발전 단계가 미미하여 시행에 융통성을 보이고 있으나, 공단입주기업 선정시 피혁산업, 염색산업 등 공해관련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베트남에도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997년 2월 18일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시행령(1997년 3월 1일부터 공식시행)에 따르면, 화학, 염료 등 일부분야에 대한 투자시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다른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투자가가 환경보호 관련법규의 준수를 확인해야 한다.

다. 말레이시아의 비관세 제도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장벽 유형은 <표 4-1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직접 수입제한조치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말레이시아는 수입허가 대상품목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수입허가제도(Approval Permit)가 대표적인 수입규제 장벽이다. 말레이시아는 총 관세대상품목의 약 17%가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허가 기준이 모호하고 수입허가권을 가진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투자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지부품 사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특히 노동허가 취득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외국인 취업자수가 제한되어 있어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수입규제

말레이시아에의 수입금지 또는 수입허가 상품은 1967년 관세법(Customs Act 1967), 1998년 관세령(Customs Order 1988)에 열거되어 있는데, 종교적·환경적 이유에 의한 수입금지상품(First Schedule), 치안 또는 환경적 이유로 수입금지되나 관계당국의 수입허가서가 있으면 예외로 수입이 허가되는 상품(Second Schedule),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상품(Third Schedule), 공공위생

과 안전을 위해 관련기관이 정한 수입요령에 의해 증명서, 승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상품(Fourth Schedule)으로 구분된다.

<표 4-11>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제도 유형

유 형	내 용	비 고
수입규제	- 수입허가 - 자동차 및 모터싸이클에 대한 수입허가제도(AP)의 일관성 결여 - Poly Ethylene에 대한 NOL 첨부의무	
보조금	- 수출상에 대한 세금 혜택	
정부조달	- 내국기업 특혜 부여	
서비스장벽	- 통신업 규제 - 건축 서비스 규제 - 엔지니어링 규제 - 광고 및 방송 규제	
투자장벽	-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 현지부품 사용 촉진 - 노동허가 취득상의 애로 - 외국인 취업자수 제한	
경쟁정책	- 포괄적인 경쟁법규 부재	

수입허가의 종류로는 자동허가(Automatic licenses)와 비자동허가(non-automatic licenses)가 있다. 자동허가는 통상산업부에서 허가하는데 동향감시 및 자료수입목적으로 활용되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허가증이 발행되는데, 다만, 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를 받는 품목중 철강편, 봉강 및 조강, 비전기케이블 및 기타항목은 비자동허가 품목이다. 비자동허가는 관계 당국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된 경우 해당기관에서 허가하며, 주로 공공안전, 환경고려, 검역기준, 동식물검역(SPS) 규정 및 인체안전 등의 요건부합여부와 관련이 있다. 그밖에 통신기기에 대한 수입허가는 말레이시아 전화회사(JTM : Jabatan Telekorm Malaysia)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2) 수입부가금

말레이시아는 관세이외에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의 적용대상은 약 5,000여 관세품목이며, 수입품과 국산품 모두에 부과된다. 세율은 식료품, 건축자재 및 반제품에 대해서는 5%, 음료수 및 담배는 10%, 그리고 기타 품목은 10%이다.

(3) 반덤핑·상계관세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상계 및 반덤핑에 관한 법(1993년 7월 15일 발효)과 관련 규정(1994년 4월 28일 발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관련 법령들은 1995년 12월 WTO의 '반덤핑 관행 및 상계관세 조치 위원회'에서 WTO 관련조항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WTO 규정상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판정받은 바 있다.

라. 태국의 비관세 제도

태국은 정부조달 측면에 비관세장벽이 집중되어 있고 기술장벽, 투자장벽에서 외국인 차별이 두드러진다. 정부조달시 입찰에서 사후까지 겹겹이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실상 자국산 원자재 사용, 자국산 업체와의 제휴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사업법, 외국인 지분한도 축소, 산업표준원 인증 획득 요구 등 각종 명문화된 규제 장치가 비관세 장벽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2> 태국의 비관세제도 유형

유 형	내 용	비 고
수입규제	- 1차 산품에 대해 수입쿼터제 실시	
정부조달	- 외국업체의 입찰참여제한 - 국내제품 우선구매 규정 - 상무부의 연계구매제도 - 불투명한 사후자격심사	
기술장벽	- 산업표준원 인증 및 품질표시 요구 - 복잡한 식품·의약품 관련절차 - 까다로운 의약품(주사제) 등록제도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보호단속 미흡 및 경미한 제재	
서비스장벽	- 소극적인 외국은행지점 설치 허가 -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 한도 축소	
투자장벽	- 투자 진출분야 제한	
기 타	-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지연	

협상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완화 및 자율화 확대에 대한 협상이 주로 요구되며, 각 사안별 관련 미가입 국제조직 및 협정에 가입토록 협상하여 제도관련 고비용 구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1) 수입규제

태국은 농·수산물 등 1차 산품에 대해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주관업체나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2) 기술장벽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일부 품목은 태국 산업표준원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품질표시(labelling)가 요구된다. 인증을 획득하여야만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하며 품질표시와 실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유통이 제한된다. 초기 수출시 품질표시가 문제될 수 있으며, 새로운 규격제정이나 인증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3) 복잡한 식품·의약품 관련 절차

태국 식품의약청은 식품, 담배, 화장품, 의약품, 마약, 사료, 비료, 유해물질, 동물, 식물, 종자, 의료기기, 향정신성 의약품, 휘발성 물질 등의 생산, 유통,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 의약품 등의 관리에 따른 제반 절차에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싼 편이다. 또한 식품의약청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 성분내용을 모두 밝혀야 한다.

(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단속 미흡 및 경미한 제재를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 집접회로 보호법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제도적으로는 정비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다.

지적재산권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서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으나 미흡하며 처벌도 가볍다.

(5) 서비스 장벽

외국은행지점 허가기준으로 20억 바트의 채권 등의 구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과실송금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장기자금차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1년 이내 단기자금에 대해서는 6%의 지불준비금을 적립토록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6) 투자장벽

외국인 사업법(New Alien Business Act)에는 3개 그룹의 외국인 업종참여 제한이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참여가 제한된 업종은 48개이다.

그룹 I은 태국인이 50% 이상 취득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50% 미만의 지분참여만 허용된다.(제8조 1항) 대상업종은 ① 신문, 라디오, TV방송, ② 쌀 농사, 다른 곡물경작, 목초재배, ③ 축산, ④ 삼림 및 목재가공, ⑤ 어업, ⑥ 태국약초 채취, ⑦ 태국 고대풍습이나 문화재에 대한 거래나 경매, ⑧ 불상 및 절에서 사용하는 접시의 제조, ⑨ 부동산거래 등이다.

그룹 Ⅱ는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없이 가능하나, 50% 이상은 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투자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대상업종은 ① 정미, 도정공장, 제분, ② 어업, 수산, ③ 산림조성, 임업, ④ 합판, 베니어, Chip board, Hard board 제조, ⑤ 석회(Lime)제조, ⑥ 회계산업, ⑦ 법률서비스, ⑧ 건축, ⑨ 엔지니어링, ⑩ 특수건축, 중개인, 경매, 국내농산물 또는 국내상거래, 소매, 도매, 광고, 호텔, 여행사, 음식, 식물번식, 기타 서비스 등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부동산과 법인주식의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 어업, 광물자원개발사업 등은 외국인에게 제한된다.

(7)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지연

태국 세관당국의 관세환급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내에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세환급업무의 전산화 미비로 환급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이 신청일로부터 5개월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자금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관세환급승인이 나도 관할세관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 필리핀의 비관세 제도

필리핀의 비관세 제도는 <표 4-13>과 같이 주로 정부조달, 서비스, 투자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3> 필리핀의 비관세제도 유형

유 형	내 용	비 고
수입규제	- 농산물 및 기타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 자동차 관련제품 및 농수산물에 대한 수량규제 - 사전 승인제도	
통관절차	- 불합리한 관세평가제도, 선적전 검사제도 시행	
반덤핑·상계관세	- 반덤핑법 강화	
보조금	- 수출보조금	
정부조달	- 국내 공급자 특혜 부여 -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조건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기술장벽	- 표준규격 부합 의무, 라벨링 의무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관련법 집행 미비	
서비스 장벽	- 보험업 규제, 은행 규제, 광고 규제 - 공공사업 규제, 전문직 활동 규제	
투자장벽	-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지사, 사무소 설치 제한 -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환경규제	- 소각시설 사용 금지법	

필리핀은 특정제품에 대한 수량제한 및 사전 승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 개발계획,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 촉진계획 등 국내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관련제품들의 수입수량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관세평가제도로 인해 실제 수입가격보다 관세부과자격이 높아져 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선적전 검사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다.

불합리한 관세평가제도 개선 및 선적전 검사 절차의 간소화, CRF(Clean Report of Findings) 발급 소요시간 단축 등이 요망된다.

(1) 수입규제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종자용 이외의 양파, 가지, 마늘, 양배추 등 채소류, 중고의류, 장난

감 총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 자동차개발계획,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 촉진계획 등 국내 산업정책에 의거, 관련제품들에 대한 수입수량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서 국내 농수산업보호차원에서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2) 사전 승인제도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자동차 및 부품, 중고 타이어, 중고자동차, 군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 휴대폰 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3) 반덤핑·상계관세

현재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은 2001년 6월에 제소된 세라믹 타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뿐이다.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99년 8월에 개정되었으며,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개정된 반덤핑법 중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법칙조항 신설 등의 내용은 반덤핑법을 강화하여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통관절차

필리핀 관세당국은 96년 7월부터 수입관세 평가기준을 Home Consumption Value(수출국 국내소비가격)방식에서 Export Value(수출가격(Published Value)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Korea의 선적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필리핀의 선적전 검사제도는 87년부터 일부국가에 한정되어 시행되어오다가 91년 3월 1일부터 전세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선적품에 대하여 적용·시행해오고 있다.

SGS 선적전 검사제도 절차상 L/C 개설후에나 수출국가 SGS 사무소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및 CRF(Clean Report of Findings)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즉 수출업체는 제조 또는 집하 완료 후 SGS 서울사무소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때부터 현지 바이어가 CRF를 발급받은 때까지 최소 10일 이상(근무일 기준)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종 선적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CRF 상의 가격, Invoice 및 Published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관세부행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필리핀 정부가 책정한 Published Value가 가장 높다고 한다. 이는 HCV(Hone Consumption Value)를 적용했던 당시의 Published Value를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이나 개선시기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선적전 검사가 검사시행국 입장에서는 부정부패방지, 세수확보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통과서류 증가, 시간지체, 물류지 증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검사회사의 비효율적이고 자의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피해까지 있다. 따라서 선적전 검사에 따른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선적전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을 여러개 선정하여 수출기업이 선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선적전 검사제도의 개선으로 적정한 과세율에 의한 관세책정으로 수출가격 인하효과, 물류비용의 감소 및 기타 부대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증대가 기대된다.

(5) 기술장벽

75개 품목(화장품, 의료기기, 조명기구, 전선 및 케이블, 가전용품, 시멘트, 타이어, 위생도구 등)은 필리핀 국가표준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섬유, 기성복, 악세사리, 공공시설용 린넨 등은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6) 정부조달

정부가 자체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쌀, 옥수수, 철장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내 공급자에 대한 특혜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재(물, 전력공급, 통신, 교통시설 등) 독점권을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필리핀의 투자비율이 적어도 60% 이상이어야 한다.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한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7) 수출 보조금

필리핀 정부의 '투자우선정책(Investment Priorities Plan)' 활동에 관여하는 기업 또는 수출상은 투자 인센티브를 위해 BOI(Board of Investment)에 등록 가능하다. 투자 인센티브는 4~6년간 소득세 면제, 고용자 임금의 50%에 상응하는 세금 감면, 가축, 유전자물질 수입에 대한 세금, 관세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BOI에 등록된 기업 중 개발이 저조한 지역의 기업은 기반시설(infrastructure) 비용의 100%, 인건비 증가분의 100%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8) 투자장벽

1991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은 해외투자를 제안하는 분야에 대한 'negative lists'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는 외국인 최대지분소유가 25%까지 허용하고 있다.

광고업은 외국인 최대 지분소유가 40%까지 허용되며, 자연 자원개발,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 조달업, 국내 및 해외 건설업, 공공시설 건설업, 납입 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고유 상한선이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수혜기업의 경우 개척산업(pioneer industry)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지 않는 경우 무한하나, 비개척사업은 40%로 지분 소유가 제한되어 있다.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기법등록관리위원회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며, 외국제조기업만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고 외국상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아세안 FTA와 원산지 규정

아세안은 외국인 투자유치확대와 역내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아세안 자유무역지대(FTA)를 강화·발전시켜 왔다.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선언'이 채택되고, '아세안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기본협정'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공동특혜관세(CEPT)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AFTA가 공식화되었는데,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1992년 4월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고위급회의에서 AFTA내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었고, AFTA평의회가 동년 12월 공동특혜관세(CEPT) 시행절차와 함께 원산지규정을 작성하였다.

아세안의 특정상품이 CEPT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품목이 아세안 역내에서 제조되어 아세안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아세안 특혜원산지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산품에 아세안 특혜원산지 자격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긴 원산증명서 「Form D」가 첨부되어야 한다.

CEPT의 실시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 특히 Form D와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협정에는 상세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일정의 통일적인 원칙인 「CEPT 원산지 규정」과 증명절차에 대한 운용사항을 정한 「CEPT 원산지 운용 증명절차」가 있다.

기본적으로 CEPT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개 국가 또는 아세안내에서 부가가치비율 누계가 40% 이상이어야 한다. AFTA 출범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역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고관세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원산지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원산지 비율과 관련하여 아세안내 40%와 최종 수출국 25%의 원칙을 요구한 반면, 싱가포르는 아세안내 부가가치 누계 40%의 원칙을 요구한 바 있다.

AFTA 출범이전에 적용되던 특혜무역협정(PAT)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CEPT협정 제2조 4항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싱가포르가 주장한 역내 부가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 : RVC) 40% 이상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아세안 컨텐츠의 RVC 계산방식은 어느 제품의 제조를 위해 수입된 비아세안 재료의 가격과 원산지불명의 재료의 가격의 합계액을 FOB가격으로 나누어, 이 값이 60% 미만이면 해당제품은 아세안원산지로 간주된다. 그러나 수산부문의 경우 가공품보다는 원어상태로 수출·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원어상태의 수산물의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이상에서 요약한 아세안 FTA의 원산지규정 및 아세안과

제3국간 FTA 원산지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2)]

가. AFTA(CEPT) 원산지규정 및 적용

(1) CEPT 무역의 확장

AFTA(아세안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지역 내 관세가 축소됨에 따라 CEPT 협정을 활용한 무역이 급증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2003년 CEPT 협정을 통한 수출이 250% 증가하였고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Form D)의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 원산지 증명서 : 선정과 절차

Form D에 대한 선정과 절차는 모든 나라에게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다. 또한 발급 받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의 국가별 편차가 존재한다. 싱가포르와 태국은 관세 환급 프로그램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도입하고 있다.

(3) 일본기업들에 의한 CEPT 협정이용

기업들이 40% 혹은 그 이상의 ASEAN 컨텐츠의 기준(상품제조과정 전체 중 아세안 국가 내에서 생산된 부품 및 생산 공정의 비율)을 준수하기는 매우 쉽다. 그러나 부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제조업체에게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다. 관련 산업의 규모가 작은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위 기준을 일부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조달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국가들의 역내 조달율은 ASEAN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급 절차를 간단히 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라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12) JETRO, Mr. Isamu Wakamatsu Senior Economist (Asia), JETRO Bangkok, Rule of orgin(2004)에서 요약.

(4) CEPT 협정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

ASEAN 과세표준번호(AHTN)의 전면적인 도입은 2004년 초에 시작되었고, CEPT 협정 또한 제3국과의 중개 무역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나. ASEAN-중국 FTA 에서의 원산지 규정과 적용

(1) ASEAN-중국 FTA 원산지 규정

공동유효특혜관세와 유사하게, 원산지 규정에는 상품들이 40% 이상의 ASEAN-중국 역내 조달율을 갖도록 명기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Form E로 명명된다.

(2) 조기자유화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의 시행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조기자유화프로그램은 중국과 태국간의 교역을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태국의 수출업자들은 중국 측의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절차상 문제점들

Form E의 발급 절차는 Form D(CEPT 협정이 반영된 원산지 증명서)와 유사하다. 조기자유화프로그램이 시행되었을 당시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4) 일본기업들에 의한 활용

조기자유화프로그램이 농산물에도 적용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의 수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태국 소재의 한 일본 제과업자는 원재료에 대한 수입품 관세 환급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업자는 관세가 폐지되어야만 위 프로그램이 유용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태국·싱가포르 FTA의 원산지 규정

(1) 태국의 경우

2004년 9월 1일 인도에서 시행된 조기자유화프로그램은 상품들이 40% 이상의 지역 내 상품 조달율과 CEPT 협정 보다 좀 더 엄격한 관세조항을 변화시키는 기준을 요구한다. 태국과 호주 간의 FTA는 관세조항의 변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들이 개별 상품들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2)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의 FTA 는 뉴질랜드, 일본, EFTA, 호주와 미국 간에 체결되었다. 여러 원산지 규정들이 변화된 관세 조항에 기초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의 기준(지역 조달율 기준 : 40% 이상)은 뉴질랜드와 호주와의 FTA에서만 적용되었다.

4. 아세안 FTA의 국가별 HS 품목별 수산물 비관세 제도

아세안은 외국인 투자유치확대와 역내분업 촉진을 위해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아세안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기본협정'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공동특혜관세(CEPT)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AFTA가 공식화되었는데,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1992년 4월 고위급회의에서 AFTA내 관세인하 프로그램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AFTA평의회가 동년 12월 공동특혜관세(CEPT) 시행절차와 함께 비관세제도를 작성하였다. 여기서 국가별 HS 품목별 비관세제도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4> 브루나이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HS Code				품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9 dgt			
03	-	-	-	CITES의 항목에서 제외된 어류와 기타수산물	수입허가 비자동적인 갱신 [Non-automatic licensing (6100)] ※ 수산부에서 발행한 면허/허가증 [License/Permits Issued by Fisheries Department]	APEC
03	-	-	-	보리새우, 게, 갑오징어 및 기타갑각류와 연체동물	수입허가 비자동적인 갱신 [Non-automatic licensing (6100)] ※ 수산부에서 발행한 면허/허가증 [License/Permits Issued by Fisheries Department]	APEC
03	-	-	-	파라니아와 Arawana	수입허가 비자동적인 갱신 [Non-automatic licensing (6100)] ※ 수산부에서 발행한 면허/허가증 [License/Permits Issued by Fisheries Department]	APEC
03	0301	-	-	치어(Fish fry)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1	-	-	해수어와 담수어 (수족관 이용에 한함)	수입라이센싱과 건강진단서 [Import Licensing & Health Certificate]	BD Input

<표 4-14> 브루나이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계속

HS Code				품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9 dgt			
03	0302	-	-	해수어와 담수어 (수족관에 이용되지 않는 것에 한함)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3	-	-	냉동해수어와 담수어 (피레트는 제외)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6	0306.13	0306.13.100	새우(냉동)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6	0306.13	0306.13.200	보리새우(냉동)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6	0306.14	0306.14.000	게(냉동)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6	0306.19	0306.19.000	기타 냉동수산물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6	0306.21	0306.21.1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파누리루스종 자수스종)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6	0306.22	0306.22.100	바다가제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6	0306.23	0306.23.110	새우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6	0306.23	0306.23.210	보리새우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6	0306.24	0306.24.100	게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6	0306.29	0306.29.100	기타 수산물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7	0307.10	0307.10.000	굴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7	0307.31	0307.31.000	홍합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표 4-14> 브루나이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계속

HS Code				품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9 dgt			
03	0307	0307.39	0307.39.000	홍합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7	0307.41	0307.41.000	갑오징어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7	0307.49	0307.49.000	갑오징어(냉동)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7	0307.91	0307.91.000	새조개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7	0307.99	0307.99.000	새조개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7	0307.91	0307.91.000	전복, 해파리 그리고 기타 연체동물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03	0307	0307.99	0307.99.000	전복, 해파리 그리고 기타 연체동물	수입라이센싱[Import Licensing]	BD Input

NOTE : Further detail information on non-tariff measures related to agriculture sectors, telecomunication sectors and customs matters are reffered to the attached explanatory notes accordingly

Attachment 1 : Non-Tariff Measures - Agriculture

Attachment 2: Substantive Comments on the Telecommunication Sector

Attachment 3: Non-Tariff Measures - Customs

<표 4-15> 인도네시아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 dgt			
03	0303	-	-	냉동어류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기술적인 조치들-품질표준 [Technical Measures-Quality Standard] ※ 신선, 냉장 또는 냉동어류 수입물은 위생증명서가 요구된다 [Importation of fresh, chilled or frozen fish requi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certificates]	UNCTAD TRAINS-Country Notes
03	0303	0303.41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 (터너스 알라룽가)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s (8100)] ※ 품질기준은 냉동다랑어에 부과된다 [Quality Standard are imposed on frozen tuna]	UNCTAD TRAINS-Country Notes
03	0303	0303.42	-	황다랑어 (터너스 알바카레스)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s (8100)] ※ 품질기준은 냉동다랑어에 부과된다 [Quality Standard are imposed on frozen tuna]	UNCTAD TRAINS-Country Notes
03	0304	-	-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 어육 (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신선·냉장, 냉동한 것에 한한다.)	기술적인 조치들-품질표준 [Technical Measures-Quality Standard] ※ 신선, 냉장 또는 냉동어류 수입물은 위생증명서가 요구된다 [Importation of fresh, chilled or frozen fish requi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certificates]	UNCTAD TRAINS-Country Notes

<표 4-15> 인도네시아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계속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 dgt			
03	0306	-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신선,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를 포함한다.]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s(8100)] ※ 품질기준은 냉동새우류에 부과된다 [Quality Standard are imposed on frozen shrimps]	UNCTAD TRAINS-Country Notes
03	-	-	-	어류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s (8100)] ※ 방사능의 최고한도는 신선 조제된 어류와 해산물을 토대로 정한다 [A ceiling of radio-activity is established on fresh and prepared fish and seafood]	UNCTAD TRAINS-Country Notes
03	-	-	-	어류	기술적인 조치들-검사, 정밀검사 및 검역 요건들 [Technical Measures-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수입어류는 다양한 검역, 정밀검사, 검사가 요구된다[Imports of fish requires various quarantine, inspection or testing]	UNCTAD TRAINS-Country Notes

<표 4-15> 인도네시아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계속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 dgt			
16	1603	-	-	육·어류·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s(8100)] ※ 방사능의 최고한도는 신선 조제된 어류와 해산물을 토대로 정한다 [A ceiling of radio-activity is established on fresh and prepared fish and seafood]	UNCTAD TRAINS-Country Notes
16	1604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s(8100)] ※ 방사능의 최고한도는 신선 조제된 어류와 해산물을 토대로 정한다 [A ceiling of radio-activity is established on fresh and prepared fish and seafood]	UNCTAD TRAINS-Country Notes
16	1605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s(8100)] ※ 방사능의 최고한도는 신선 조제된 어류와 해산물을 토대로 정한다 [A ceiling of radio-activity is established on fresh and prepared fish and seafood]	UNCTAD TRAINS-Country Notes

<표 4-15> 인도네시아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계속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 dgt			
16	-	-	-	조제된 육류/어류 [Preparations Meat/Fish]	기술적인 조치들-품질표준 [Technical Measures-Quality Standard] ※ 육류와 육류제품의 수입물, 동물을 이용한 원료는 위생증명서가 요구된다. [Importation of meat and meat products, materials of animal origin requi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certificates]	UNCTAD TRAINS-Country Notes
16	-	-	-	조제된 육류, 어류, 패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Preparations of meat, of fish and of crustaceams, mollusk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기술적인 조치[Technical Measure] ※ 수입품은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생산품 등록을 맞추어야한다 (그 과정은 3달이상 걸린다) [Import is subject to product registration requirement by Department of Drug and Food Control which process takes more than 3 months]	TH Cross Notification

<표 4-16> 캄보디아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 dgt			
03	-	-	-	어류와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수생무척추동물	기술적인 조치들[Technical Measures] ※ 수입품은 위생증명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mport is subject to sanitary certificate requirement]	Cambodia Submission

<표 4-17> 라오스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 dgt			
03	0301	0301.93	0301.93.10	잉어 종묘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8100)] ※ (1)농림부 축산과로부터의 승인 (2)특별구역 비엔티안주 무역과로부터의 승인 [A technical approval from: (1)Department of Livestock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Trade Department of Provinces, Vientiane Capital, Special Zone]	Based on Notification No.0285/MOC Dated 17/3/2004

<표 4-17> 라오스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계속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 dgt			
03	0301	-	-	활어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8100)] ※ 보건부와 식약청으로부터의 승인 [A technical approval from Department of Food and Drugs, Ministry of Health]	Based on Notification No.0285/MOC Dated 17/3/2004
03	0302	-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8100)] ※ 보건부와 식약청으로부터의 승인 [A technical approval from Department of Food and Drugs, Ministry of Health]	Based on Notification No.0285/MOC Dated 17/3/2004
03	0303	-	-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8100)] ※ 보건부와 식약청으로부터의 승인 [A technical approval from Department of Food and Drugs, Ministry of Health]	Based on Notification No.0285/MOC Dated 17/3/2004
03	0304	-	-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8100)] ※ 보건부와 식약청으로부터의 승인 [A technical approval from Department of Food and Drugs, Ministry of Health]	Based on Notification No.0285/MOC Dated 17/3/2004

<표 4-17> 라오스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계속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 dgt			
03	0306	-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를 포함한다]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8100)] ※ 보건부와 식약청으로부터의 승인 [A technical approval from Department of Food and Drugs, Ministry of Health]	Based on Notification No.0285/MOC Dated 17/3/2004
03	0307	-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이외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분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에 한한다]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8100)] ※ 보건부와 식약청으로부터의 승인 [A technical approval from Department of Food and Drugs, Ministry of Health]	Based on Notification No.0285/MOC Dated 17/3/2004

<표 4-17> 라오스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계속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 dgt			
16	1604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기술적인 조치들-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s-Technical regulation(8100)] ※ 보건부와 식약청으로부터의 승인 [A technical approval from Department of Food and Drugs, Ministry of Health]	Based on Notification No.0285/MOC Dated 17/3/2004

<표 4-18> 말레이시아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9 dgt			
03	0301			피라니아류	총 규제[Total prohibition (6310)] ※ 완전금지[Absolute prohibition]	APEC
03				어류	기술적인 조치[Technical Measure] ※ 수입품은 말레시아로부터 생산된 컨테이너에 적절하게 탑재되어져야 한다 [Imports are subject to container requirement (container must be produced from Malaysia only)]	TH Cross Notification

<표 4-19> 필리핀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 dgt			
16	-	-	-	조제한 육류와 어류	기술적인 조치-라벨링 [Technical Measure-Labeling(8130)] ※ 라벨은 식품명과 고유의 특징, 비율이 적은 순서대로 성분을 나열한 목록, 본래의 내용물와 유출된 무게, 제조업자명과 주소, 포장업체, 유통업체, 로트확인코드 그리고 제업일과 만기일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Labels must contain the name and true nature of the food, list of ingredient in decreasing order of proportion, net contents and or drained weight,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packer and or distributor, lot identification code and manufacturing and expiration dates]	UNCTAD TRAINS-Country Notes
16	-	-	-	조제한 육류와 어류	기술적인 조치-기술적인 규제 [Technical Measure-Technical Regulations (8100)] ※ 건강과 안전기준요건을 식료품에 부과한다 [Health and safety standard requirements are imposed on food products]	UNCTAD TRAINS-Country Notes

<표 4-20> 싱가포르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8/9 dgt			
03	-	-	-	어류	자동갱신 수입인증[Automatic Import Licensing] ※ 장식용을 위한 장식용 어류, 수입품, 수출품 옮겨 싣는 물품 보다 일반수입품, 수출품, 옮겨싣는 물품들이 건강, 안전, 환경, 국가보안 그리고 국제협정의 준수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자동, 비자동라이센싱를 통하여 규제되어 진다 [Imports, exports and transshipments of fish other than ornamental fish, imports, exports or transshipments of ornamental fish are regulated through the automatic and 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for reasons of health, safety, environment, national security and obligations froms international agreements]	APEC
05	0507	-	-	아이보리, 귀갑, 고래수염과 그털, 뿔, 사슴뿔, 발굽, 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품질통제조치-금지 [Quantity Control Measures- Prohibitions(6300)] ※ 상업적인 판패를 위한 상아 및 호랑이를 원료로한 상품들 [Ivory for commercial consignments and tiger products]	APEC

<표 4-21> 태국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비관세장벽 규정 근거
2 dgt	4 dgt	6 dgt	7/8/9 dgt			
23	2301	2301.20	2301.20.0106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60%이하로 단백질이 포함된 어분	수입허가:자동갱신이 불가 [Import license: Non-Automatic Licensing] ※ 수입허가는 외교통상부/농림부의 요구되어질 수 있다 [Import license is required by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Ministry of Agriculture]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 Ministry of Agriculture; 34th CCCA
01	-	-	-	산동물	수입허가 비자동 갱신 [Non automatic licensing] ※ 산동물의 수입량은 관련부처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Importation of live animal is subject to take certificate from authorised departments]	Livestock Breeding & Veterinary Department Fishery Department
All	-	-	-	모든 수입품	수입허가 비자동 갱신 [Non automatic licensing] ※ 모든 상업용 수입물은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All commercial imports are subjected to import license]	Directorate of Trade Ministry of Commerce

<표 4-22> 베트남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2 dgt	4 dgt	6 dgt	8 dgt		
03	0302	-	-	어류와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수생무척추동물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8150)] ※ 수상의 의해 결정된 Decision 46/2001/QD, 농림부의 Decision 344/2001/QD-BTS, 과학기술부의 Decision No.117/2000/QD-BKHCNMT에 근거하여 설정된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 [Meet requirements as set Decision 46/2001/QD-TTg by Prime Minister, Decision 344/2001/QD-BTS by Ministry of Fishery , Decision No.117/2000/ QD-BKHCNM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03	0302	-	-	어류와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수생무척추동물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8150)] ※ 수상의 의해 1999년 3월 8일에 결정된 Decision 178/1999/QD-TTg, 수산부의 Circular 03/2000/TT-BTS, 과학기술부의 Decision No.117/2000/QD-BKHCNMT에 근거하여 설정된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Meet requirements as set in Decision 178/1999/QD-TTg dated 30/08/1999 by Prime Minister and Circular 03/2000/TT-BTS by Ministry of Fisher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03	0304	-	-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 어육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수상의 의해 1999년 3월 8일에 결정된 Decision 178/1999/QD-TTg, 수산부의 Circular 03/2000/TT-BTS, 과학기술부의 Decision No.117/2000/QD-BKHCNMT에 근거하여 설정된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Meet requirements as set in Decision 178/1999/QD-TTg dated 30/08/1999 by Prime Minister and Circular 03/2000/TT-BTS by Ministry of Fisher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표 4-22> 베트남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계속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2 dgt	4 dgt	6 dgt	8 dgt		
03	0306	-	-	갑각류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수상의 의해 1999년 3월 8일에 결정된 Decision 178/1999/QD-TTg, 수산부의 Circular 03/2000/TT-BTS, 과학기술부의 Decision No.117/2000/QD-BKHCNMT에 근거하여 설정된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Meet requirements as set in Decision 178/1999/QD-TTg dated 30/08/1999 by Prime Minister and Circular 03/2000/TT-BTS by Ministry of Fisher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03	0306	0306.11	-	닭새우류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수상의 의해 1999년 3월 8일에 결정된 Decision 178/1999/QD-TTg, 수산부의 Circular 03/2000/TT-BTS, 과학기술부의 Decision No.117/2000/QD-BKHCNMT에 근거하여 설정된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Meet requirements as set in Decision 178/1999/QD-TTg dated 30/08/1999 by Prime Minister and Circular 03/2000/TT-BTS by Ministry of Fisher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03	0306	0306.12	-	바닷가재류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수상의 의해 1999년 3월 8일에 결정된 Decision 178/1999/QD-TTg, 수산부의 Circular 03/2000/TT-BTS, 과학기술부의 Decision No.117/2000/QD-BKHCNMT에 근거하여 설정된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Meet requirements as set in Decision 178/1999/QD-TTg dated 30/08/1999 by Prime Minister and Circular 03/2000/TT-BTS by Ministry of Fisher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표 4-22> 베트남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계속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2 dgt	4 dgt	6 dgt	8 dgt		
03	0306	0306.13	-	새우와 보리새우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수상의 의해 1999년 3월 8일에 결정된 Decision 178/1999/QD-TTg, 수산부의 Circular 03/2000/TT-BTS, 과학기술부의 Decision No.117/2000/QD-BKHCNMT에 근거하여 설정된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Meet requirements as set in Decision 178/1999/QD-TTg dated 30/08/1999 by Prime Minister and Circular 03/2000/TT-BTS by Ministry of Fisher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03	0306	0306.19	-	기타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수상의 의해 1999년 3월 8일에 결정된 Decision 178/1999/QD-TTg, 수산부의 Circular 03/2000/TT-BTS, 과학기술부의 Decision No.117/2000/QD-BKHCNMT에 근거하여 설정된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Meet requirements as set in Decision 178/1999/QD-TTg dated 30/08/1999 by Prime Minister and Circular 03/2000/TT-BTS by Ministry of Fisher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03	0307	0307.31	-	홍합(산것 신선 또는 냉장)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수상의 의해 1999년 3월 8일에 결정된 Decision 178/1999/QD-TTg, 수산부의 Circular 03/2000/TT-BTS, 과학기술부의 Decision No.117/2000/QD-BKHCNMT에 근거하여 설정된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Meet requirements as set in Decision 178/1999/QD-TTg dated 30/08/1999 by Prime Minister and Circular 03/2000/TT-BTS by Ministry of Fisher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표 4-22> 베트남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계속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2 dgt	4 dgt	6 dgt	8 dgt		
03	0307	0307.41	-	갑오징어(산것 신선 또는 냉장)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수상의 의해 1999년 3월 8일에 결정된 Decision 178/1999/QD-TTg, 수산부의 Circular 03/2000/TT-BTS, 과학기술부의 Decision No.117/2000/QD-BKHCNMT에 근거하여 설정된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Meet requirements as set in Decision 178/1999/ QD-TTg dated 30/08/1999 by Prime Minister and Circular 03/2000/TT-BTS by Ministry of Fisher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16	1604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수상의 의해 결정된 Decision 46/2001/QD, 농림부의 Decision 344/2001/QD-BTS, 과학기술부의 Decision No.117/2000/QD-BKHCNMT에 근거하여 설정된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Meet requirements as set Decision 46/2001/QD-TTg by Prime Minister, Decision 344/2001/QD-BTS by Ministry of Fishery , Decision No.117/2000/QD-BKHCNM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16	1604	1604.13	-	청어(통조림)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지정된 기관에 의해서 발행된 품질증명서는 Decision No.117/2000/ QD-BKHCNMT를 근거로 인증되어진다[Certificate of Quality issued by designated agencies/regulated b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표 4-22> 베트남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 계속

HS Code				품 목	비관세장벽 유형
2 dgt	4 dgt	6 dgt	8 dgt		
16	1604	1604.14	-	다랑어(통조림)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지정된 기관에 의해서 발행된 품질증명서는 Decision No.117/2000/QD-BKHCNMT를 근거로 인증되어진다 [Certificate of Quality issued by designated agencies/ regulated b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16	1605	1605.10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제동물 및 기타수생무척추동물	Labelling 요건들[Labelling requirements (8130)] ※ 수상의 의해 1999년 3월 8일에 결정된 Decision 178/1999/QD-TTg, 수산부의 Circular 03/2000/TT-BTS, 과학기술부의 Decision No.117/2000/QD-BKHCNMT에 근거하여 설정된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 [Meet requirements as set in Decision 178/1999/QD-TTg dated 30/08/1999 by Prime Minister and Circular 03/2000/TT-BTS by Ministry of Fisher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16	1605	1605.20	-	기타	검사, 정밀검사, 검역요건들[Test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8150)] ※ 지정된 기관에 의해서 발행된 품질증명서는 Decision No.117/2000/QD-BKHCNMT를 근거로 인증되어진다 [Certificate of Quality issued by designated agencies/ regulated by Decision No.117/2000/QD-BKHCNMT]

제3절 아세안 수산물 무역제도의 시사점

한·아세안 FTA는 관세철폐 및 국내보조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수산업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세계 유수의 수산물 수출국이기 때문이며, 더욱이 한국과 아세안간 수산물 생산비와 가격 차이가 크고, 수산물 생산면에서도 국내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 또는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자급률 또한 감소하고 있으므로 수입증대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수산물 무역특화지수면에서도 한국은 수입특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는 수산물 수출특화 경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라는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수산업보다 아세안의 수산업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부존자원의 차이 등으로 인한 아세안 국가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아세안의 무역자유화는 단계적이면서 산업별 예외를 대폭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세안은 민감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기간을 확대하거나 자유화의 예외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입장이 한국과의 FTA에서도 유지될 경우 동남아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은 현격하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아세안이 요구하는 예외에 대한 조건으로 한국은 민감산업인 수산업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물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의 수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 FTA를 통한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생산이 많은 국가로부터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세안의 수산업은 발전단계가 매우 낮으며 수산업의 수출(원어수출)을 통하여 획득한 자금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투입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량의 감소 추세에 따라 자원의 보존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FTA를 통해 수산업 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는 전술한 두 가지 정책을 반영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협상전략으로서도 이 두 가지 정책을 고려한 전략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03류의 적용관세율은 역내국에게 대해서는 아세안 선발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는 무관세 또는 3% 또는 5%의 저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아세안 후발가입국인 베트남은 역내국에 대해서는 15%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역외국에 대해서는 아세안 선발가입국, 후발가입국에 상관없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태국은 03류에 대해서 일괄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태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역외국은 아세안 경제무역지역으로 가장 큰 차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베트남은 10% 또는 3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역외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가장 세분화시켜서 부과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FTA 체결시 협상관세율을 AFTA 역내국 관세율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율도 대폭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역외국 관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우리가 대아세안 국가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품목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협상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관세율로 관세인하를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도 역외국에 대한 수산물 수입관세율을 고관세로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5장 한-아세안 FTA의 수산부문 영향분석

제5장 한-아세안 FTA의 수산부문 영향분석

제1절 관세인하의 사회경제적 영향

FTA에 따라 물품 관세가 인하될 경우, 대체적으로 해당 물품의 소비는 증가하고 국내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되고, 생산자 잉여와 정부의 관세 수입은 감소하게 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즉 관세 인하는 순수 후생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그림 5-1>에서 나타내자면, 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국가의 입장에서 특정 수입 물품의 공급곡선은 MS0에서 MS1로 수직으로 이동하게 된다.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에 품질의 차이가 전혀 없어서 두 품목 간에 완전 대체가 성립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수입국가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과 수입을 모두 고려한 해당 품목의 전체 공급 곡선은 관세 인하에 따라 HB-MS0에서 HG-MS1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은 P0에서 P1으로 떨어지고 국내 소비는 QC0에서 QC1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국내 생산은 해당품목 가격의 하락으로 QP0에서 QP1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른 후생학적 영향은, 소비자 잉여의 경우 ICP0에서 IDP1로, 사각형 P0CDP1만큼 증가하게 되고 생산자 잉여는 HBP0에서 HGP1으로 감소하며, 정부의 관세 수입은 BCEF만큼 줄어들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잉여는 삼각형 BFG와 CED를 합한 것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경제의 완전고용 상태와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에 완전대체성을 가정한 경우이다.

<그림 5-1> 관세인하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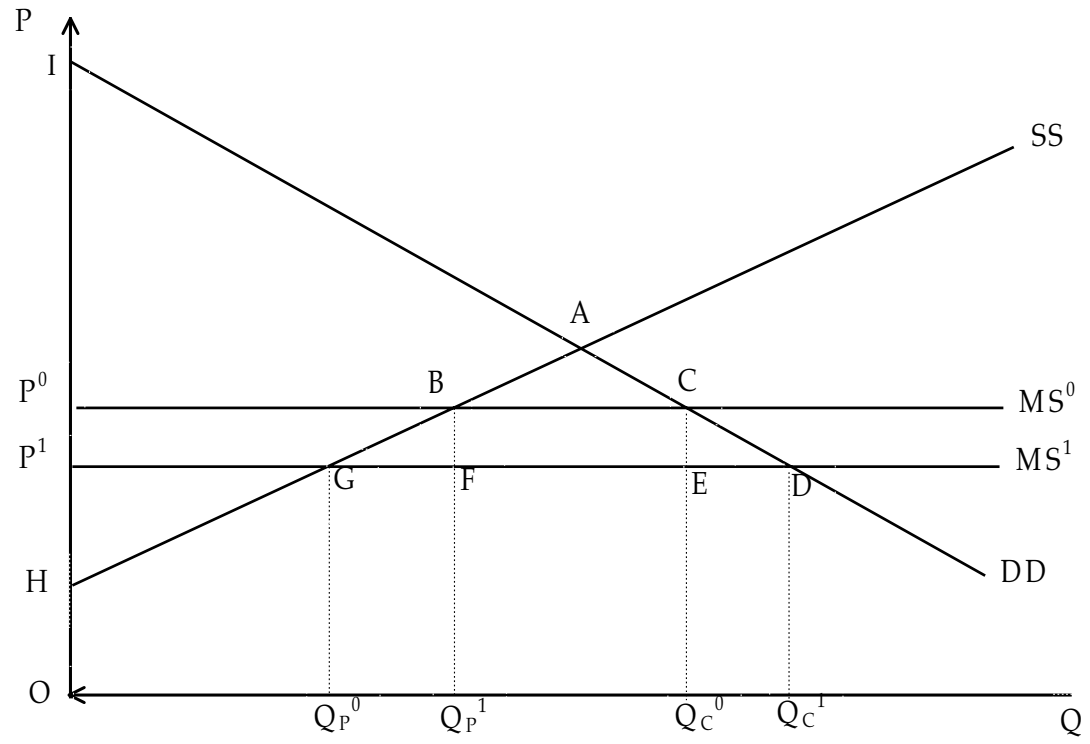

현실적으로 수산업에 고용되었던 생산요소가 이탈될 경우 다른 생산활동에 재고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므로, <그림 5-1>에서 생산 감소로 이탈된 생산요소 GBQP1QP0가 전량 유휴화된다고 가정하면 사회적으로 그만큼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어선 등 생산요소가 생산활동에서 이탈될 경우 유휴화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인하에 따라 국내생산이 줄어들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도 잉여가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다수 어업인들의 실업 발생으로 지역 정주체제가 위협받고 도시로의 이주가 발생하는 등 사회가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한-아세안 FTA에 따른 영향 분석

1. 모형설정

수산물 수입자유화 등에 따른 관세인하(또는 철폐)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수요 가격탄력성분석모형[13]을 이용하였으며 이 경우 가장 큰 경제적 효과는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와 그로 인해 국내 생산에 파생되어 미치는 영향이다.

수입가격에 대한 수입량 변화 분석을 위하여 각 품목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각 품목별 수입가격에 대한 탄력성을 구하는데 여기서는 아래의 모형을 적용하였다.[14].

$$\ln Q_{it} = \alpha_9 + \alpha_1 \ln P_{it} + \alpha_2 \ln M_t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text{모형 1}>$$

Q_{it} : i품목의 t기 수입량

P_{it} : i품목의 t기 수입단가

M_t : t기의 국민소득

분석 대상은 수산물에 해당하는 HS 코드 406개 품목 중 최근 3개년 동안 수입량이 없는 201개와 국내생산 실적이 없는 129개를 제외한 76개 품목이고, 분석에 사용된 수입량과 수입액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소득은 한국은행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을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소득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또 상대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증대 효과도 추정하기 위

13) P. J. Verdoon and A. N. Schwarz, "Two Alternative Estimates of the Effects of EEC and EFTA on the Pattern of Trade"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 1976, pp. 291-335.
William Cline, *Trade Negotiations in the Tokyo Round ; A Quantitative Assessment*,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8, pp. 257-264.

14) 한층 더 정교한 분석을 하려면 이 모형보다 더 많은 설명 변수를 포함해야 하나 대아세안 수산물 교역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진하여 현재로서는 설명력 있는 변수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하여 수출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ln Q_{it} = \beta_0 + \beta_1 \ln P_{it} + \beta_2 \ln Y_t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text{모형 2}>$$

Q_{it} : i품목의 t기 수입량

P_{it} : i품목의 t기 수입단가

Y_t : t기의 국민소득

분석 대상은 수출 실적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할 수 있는 품목으로만 한정하여 태국 5개 품목, 필리핀 2개 품목, 인도네시아 1개 품목이다.

2. 분석결과

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모형 1>을 이용하여 FTA 체결에 따라 아세안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고 가정할 경우, 아세안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 연간 3,500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액으로는 연간 1,800만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아세안에서 수입한 연평균 수입액의 7% 수준이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은 특정 품목에 한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 쥐치포(통조림외 조제품), 갑오징어(냉동)의 수입이 크게 늘어 이들 상위 3개 품목이 관세 철폐에 따른 아세안산 수산물 수입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품목의 수입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해당 품목의 수입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아세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수입량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관세 철폐로 인해 새로이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으로는 건조 멸치, 새우와 보리새우(염장, 염수장), 기타 연체동물(염장, 염수장), 냉동 황다랑어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품목 중 황다랑어를 제외하면 모두 관세율이 20%로 높은 품목이고 수입

비중 또한 큰 편이다.

<표 5-1> 주요 품목별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변화

단위 : 천 달러, 톤, %

HS 코드	품 목 명	수입 증가액	수입 증가량	수입량 증가율	관세율
1604-19-9010	쥐치포(통조림외 조제품)	15,407	2,426	39.6	20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709	204	7.1	10
0306-23-1000	새우와 보리새우 (산 것, 신선, 냉장)	526	180	12.6	20
0305-59-2000	멸치(건조)	354	132	9.0	20
0307-49-3000	오징어(건조)	342	122	6.9	10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 (염장, 염수장)	320	111	2.8	20
0303-79-3000	갈치(냉동)	273	77	1.3	10
0307-99-3190	기타연체동물(염장, 염수장)	119	19	6.0	20
0303-79-7000	전갱이(냉동)	109	142	2.2	10
0306-13-9000	기타새우와 보리새우(냉동)	76	12	0.2	30*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68	4	1.1	10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63	29	1.4	10
	전체	18,477	3,494		17**

주 : 1) 수입 증가액이 5만 달러가 넘는 품목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음
2) '*'는 조정관세율, '**'는 수산물(HS 코드 03, 16) 평균관세율임
3) '수입비중'은 각 해당품목의 전체 수입량 중 아세안산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그러나 <표 5-1>에 나타난 품목의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도,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을 제외하고는 해당품목 혹은 유사품목의 국내 생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우선 무역통계에 나타난 품목이 설사 국내 생산 품목과 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된 어종과 국내 생산된 어종 간에는 생물학적

으로 차이가 있어서 맛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많다. 또 국내 연근해산 어종의 경우 주로 활·선어 상태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높고 또 냉동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산은 선상에서 급속으로 냉동된 제품의 비중이 높으므로, 같은 어종이라 하더라도 수입 냉동제품과는 신선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세안 국가들로 수입되는 수산식품은 국내산과 유통경로 및 소비처가 달라서 수입 품목과 국내산 품목 간에는 시장이 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낙지나 갑오징어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절대량이 작아, 동일 어종의 냉동품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국내 생산에는 사실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조미 쥐치포의 경우에는 국내 제품이 수입산에 대해 경쟁력을 상실하여 이미 관련 가공업체들이 대부분 명태가공 등으로 전업하거나 폐업한 실정이어서, 동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도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수산식품은 시장에서 국내산보다는 다른 국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식품과 일차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의 경우에는 수송 방법의 개발에 따라 최근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활선어 상태의 수입 새우는 국내 대하(왕새우)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최근 태국에서는 양식새우의 종류가 블랙타이거 새우에서 질병에 강한 흰다리새우로 급속하게 교체되었는데, 흰다리새우는 서해안에서 주로 양식되어 현지에서 주로 활선어 상태로 소비되는 대하와 모양과 맛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현상으로서, 충남 태안군 등 대하 양식이 성행하는 현지에서 양식대하 수확철인 가을에 중국 해남도에서 수입된 값싼 활선어 상태의 흰다리새우 유통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수송방법이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활선어 상태의 새우 수입이 최근에야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본 연구의 수입수요함수에 의한 수입증가액 추정 결과는 연간 53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에는 아세안 국가로부터 항공을 이용한 활선어 상태의 새우 수송의 보편화로 동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 어업생산에의 영향을 수입가격 인하폭을 바탕으로 하여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으로부터 수입되는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의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 어업생산의 영향은 경쟁 품목 생산에 따른 총 수입의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

$$E = P_0 \times Q_0 - P_1 \times Q_1$$

E : 새우와 보리새우(산것, 신선, 냉장)의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 어업생산의 영향

P_0 : 관세철폐 이전의 국내산 양식대하의 시장가격

P_1 : 관세철폐 이후의 국내산 양식대하의 시장가격

Q_0 : 관세철폐 이전의 국내산 양식대하의 소비량

Q_1 : 관세철폐 이후의 국내산 양식대하의 소비량

<그림 5-1>과 같이 국내산 양식대하와 아세안산 활선어 새우 간에 완전한 대체관계가 형성된다고 가정한다면,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산 양식대하의 가격 인하 폭은 아세안산 새우의 가격 인하 폭과 동일하게 된다.

활선어 새우에 대한 현재의 관세율은 20%이므로, 관세철폐 후 국내산 양식대하의 시장가격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_1 = P_0 \times (100/120)$$

또 관세철폐 이후의 국내산 양식대하의 소비량은 국내산 양식대하의 가격에 대한 공급 탄성치를 α라 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Q_1 = Q_0 \{1 - \alpha \times (P_0 - P_1)/ P_0\}$$

국내산 양식대하의 가격에 대한 공급 탄성치는 관련 통계자료의 부족(관측치 부족)으로 계량분석을 통해 추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선행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약 1.3으로 가정하였다[15].

2004년도 국내산 양식대하의 (산지)평균가격(P0)은 ㎏당 16,308원, 소비량(생산량, Q0)은 2,426 천 ㎏으로 나타났으므로[16], 이로부터 관세철폐 이후의 국내산 양식대하의 가격과 소비량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P_1 = 16,308 \times (100/120) = 13,590$ (원)

$Q_1 = 2,426 \{1 - 1.3 \times (16,308-13,590)/16,308\} = 1,900$ (천 kg)

따라서 아세안산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의 관세 철폐가 국내 어업생산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E = P_0 \times Q_0 - P_1 \times Q_1 = 16,308 \times 2,426,000 - 13,590 \times 1,900,000 = 13,742$ 백만원

아세안산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의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 어업 수입 감소는 연간 약 1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아세안산 활선어 새우와 국내산 양식새우가 완전 대체관계에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내산 양식새우가 수입새우의 가격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

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아세안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액은 연간 100만 달러, 수출량은 1,400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연평균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액의 2%에 불과한 수치이다.

또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 냉동 고등어와 오징어도 국내외 자원량 감소

15) 이계임 등(2003)은 양식어종에 대한 공급함수 추정결과 우렁쉥이, 다시마, 김 등 3개 품종에 대해서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음. 이 중 우렁쉥이의 가격에 대한 공급 탄성치가 1.326으로 추정되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국내산 양식대하의 가격에 대한 공급 탄성치를 1.3으로 가정하였음(이계임 등, 「수산물 수급실태 분석과 중장기 전망에 대한 연구」, 해양수산부 용역보고서, 농촌경제연구원, 2003. 3., p. 37)

16)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2004. 12.

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주 수출품목인 다랑어류는 원양산이기 때문에 일부 원양업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국내 어업인과는 관련이 적다.

이처럼 수입증대 효과에 비해 수출증대 효과가 작은 것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아세안의 수산물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데다, 우리나라가 현재 주로 수출하는 품목의 관세율은 5%에 불과해 관세철폐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표 5-2> 주요 품목별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변화

단위 : 천 달러, 톤, %

HS 코드	품목명	수출 증가액	수출 증가량	수출량 증가율	수입 비중	관세율	주수출 대상국
0303-74-0000	고등어(냉동)	545	1,091	26.6	39	5	필리핀
0303-4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 (냉동)	378	214	10.6	5	5	태국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	-	-	6	5	
0303-43-0000	가다랑어, 줄무늬버니토우(냉동)	-	-	-	5	5	
0303-49-0000	기타 다랑어(냉동)	-	-	-	11	5	
0307-49-1020	오징어(냉동)	60	50	6.1	8	5	
		38	64	4.3	-	5	인도네시아
전 체		1,021	1,419	16.8			

주 : '수입비중'은 각 국 해당 품목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산의 비율임(2001~02년 자료)

다만 베트남은 HS코드 03류 수산물의 관세율이 대부분 30%이고 수산 가공품의 관세율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장기적으로 베트남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또한 태국의 일부 고율 관세 부과 품목도 관세 장벽 해소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중 관세율이 높으면서도 태국이 비교적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게살·어류·연체동물 가공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필리핀은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높으나 수산물 교역량이 많지 않아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아 수출 증대를 예상하기 어렵다.

<표 5-3> 관세철폐 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가능 품목 분석표

단위 : 천 달러, 톤, %

수출 순위	HS 코드	품 목 명	태국		필리핀	
			관세율	평균 수입액	관세율	평균 수입액
4	1604-30-2000	캐비어 대용품	20	427*	15	9*
5	0301-99-8000	넙치류(활어)	30	-	-	-
9	1605-10-1090	기타 게살(조제, 저장처리)	20	11,984	15	144
10	1604-20-4010	게맛 생선묵	30	-	15	-
11	0307-10-2000	굴(냉동)	5	-	15	-
12	1605-90-1010	굴(조제, 저장처리)	20	-	15	-
14	0307-91-1500	피조개(산 것, 신선, 냉장)	5	2,892	15	-
16	0307-91-1800	바지락(산 것, 신선, 냉장)	5	-	15	-
17	0301-99-5000	붕장어(활어)	30	-	-	-
19	0307-99-1190	기타 연체동물(냉동)	5	200	15	77
22	0307-10-1090	기타 굴(산 것, 신선, 냉장)	5	-	15	59
24	1604-20-9000	기타 어류(조제, 저장처리)	30	1,250	15	120
25	1605-90-9090	기타 연체동물 (조제, 저장처리)	20	576	15	247
27	0307-91-1300	소라(산 것, 신선, 냉장)	5	-	15	-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FAO, Fishstat Plus; APEC Tariff Database(www.apectariff.org)
주 : 1) '수출 순위'는 2003년 수출액이 기준이며 27위까지 실적은 1,000만 달러 이상임
2) '평균 수입액'은 2000~2002년 수입액의 평균임
3) '*'는 캐비어와 캐비어 대용품 수입액의 합임
4) FAO 수산물 무역 통계가 HS 코드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제6장 한-아세안 FTA 수산부문 대응방안

제6장 한-아세안 FTA 수산부문 대응방안

제1절 현재까지의 협상 경과 및 쟁점사항

한-아세안 간 FTA 협상은 2004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03년 말부터 진행되어 온 공동연구 결과의 채택과 함께 공식협상 개시가 선언된 후, 2005년 6월 말 현재 3차까지 진행되었다.

상품양허 방식은 중-아세안 FTA에서 채택되었던 double track system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세양허 방식이 일반품목(Normal Track,; NT)과 민감품목(Sensitive Track; ST)으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양허 수준에 대해서는 양측이 자유화율을 90% 이상으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그 달성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일반품목에 포함되는 품목이 전체 품목의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원산지 기준, 분쟁해결절차 등에 있어서 양측이 입장 차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산지 판정 원칙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아세안 측은 CEPT와 중국-아세안 FTA에서와 같이 부가가치 기준만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 부패가능성이 높은 농·수산식품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 경제협력 방안 등과 관련하여 양측이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양허안을 중심으로 수산부문의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6-1> 한-아세안 FTA3차협상에서 한국측이 제안한 상품양허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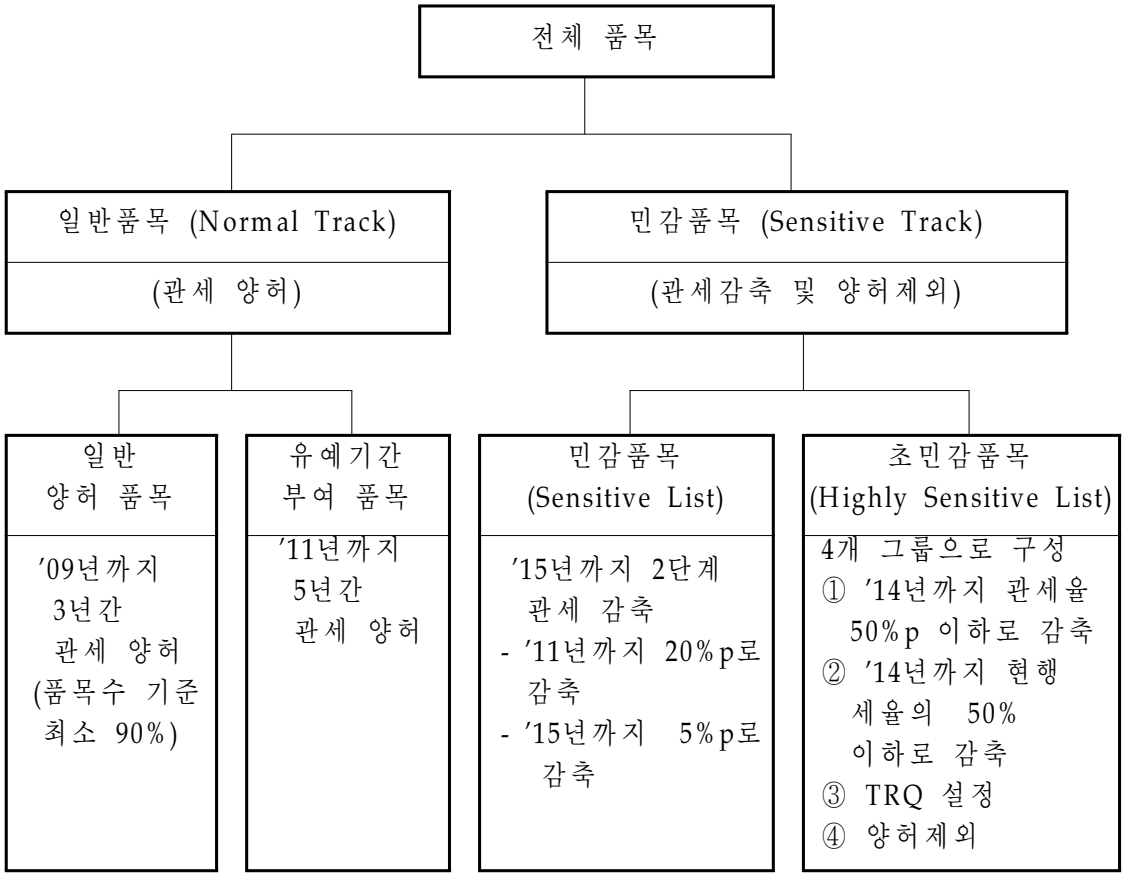

제2절 수산부문 상품 양허안

1. 민감품목 선정기준

관세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감품목 선정기준으로 관세양허시 수입증가로 국내 관련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관련산업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협상상대국으로부터의 품목별 수입금액
- 품목별 우리나라 수출금액
- 품목별 국내생산액
- 관련 산업의 종사자 수
- 수입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성치
- 우리나라 및 협상상대국의 품목별 경쟁력 관련 지수

그러나 이러한 지수나 수치는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 우선 품목별 수입금액이 큰 경우 관세철폐시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조미 쥐치포의 경우와 같이 국내 관련산업이 이미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감품목 선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수출 혹은 생산(종사자 수)이 많은 품목은 우리나라가 일단 경쟁력을 갖춘 품목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관세철폐시에는 경쟁력(비교우위)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FTA에 따른 관련 산업의 피해가 매우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또 수입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성치가 높은 품목이 관세철폐시 국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통계자료의 부족 및 부정확성으로 정확한 가격 탄성치를 추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품목별 경쟁력 관련 지수로서 관세철폐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수는 정부 정책, 환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어느 한 가지 혹은 복수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아세안으로부터의 품목별 연간 수입금액,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규모, 국내생산액 및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하되 아세안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체계 및 소비형태 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 혹은 유사 품종과의 경쟁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활어나 김, 미역 등의 해조류와 같이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나, 일본 및 중국 등 타 국가와의 FTA 추진시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수산부문의 전체적인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서 관세양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표 6-2> 한-아세안 FTA 수산부문 민감품목 선정 방법

선정기준	평가방법
1) 관세철폐시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관련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① 계량적 평가 - 아세안으로부터의 품목별 수입금액 - 품목별 국내생산액 및 종사자 수 - 품목별 우리나라 수출금액 - 우리나라 및 아세안 국가의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
	② 정성적 평가 - 수입품목의 유통체계 및 소비형태 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 혹은 유사 품종과의 경쟁 정도 평가
2) 일본, 중국 등 타 국가와의 FTA 추진시 국내 관련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 적용 수산품목 - 활어, 신선·냉장 어류, 해조류 중 국내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

2. 품목별 아세안으로부터의 연간 수입금액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아세안 10개 국가로부터 연평균 10만 달러 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64개에 이른다. 연평균 수입실적이 5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인 품목이 16개 품목이며, 연평균 5만 달러 미만인 품목이 무려 325개 품목이다. 5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도 179개 품목에 달한다.

연간 수입 품목이 매우 작은 품목은 관세철폐 이후에도 국내 관련산업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세안 10개 국가로부터 연간 총 수입실적이 10만 달러 이하인 341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양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 일본 및 중국 등 어장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와의 FTA 추진시, 한-아세안 FTA가 상대국으로부터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실적이 매우 적더라도 중국 및 일본과의 FTA에 대비하여 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할 전략 품목은 사후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다.

<표 6-3> 아세안으로부터 연평균 10만 달러 이상 수입되는 수산품목

단위 : 천 달러

품목번호	품 목 명	기본관세 (%)	연평균 수입액 ('00~'04)
0301-10-2000	열대어(활어)	10	1,391
0302-32-0000	황다랑어(신선,냉장)	20	165
0303-39-0000	기타넙치류(냉동)	10	175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10	954
0303-43-0000	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우(냉동)	10	230
0303-44-0000	눈다랑어(냉동)	10	619
0303-49-0000	기타 다랑어류(냉동)	10	263
0303-50-0000	청어(신선,냉장)	10	184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상어(신선,냉장)	10	698
0303-79-3000	갈치(신선,냉장)	10	8,226
0303-79-4090	기타돔류(신선,냉장)	10	219
0303-79-6000	조기(신선,냉장)	10	269
0303-79-7000	전갱이(신선,냉장)	10	8,381
0303-79-9094	밀크피쉬(신선,냉장)	10	314
0303-79-9095	민어(신선,냉장)	10	106
0303-79-9096	가오리(신선,냉장)	10	1,634
0303-79-9099	기타어류(신선,냉장)	10	3,604
0304-20-9000	기타어류(냉동피레트)	10	8,004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10	32,818
0304-90-9000	기타어육(냉동)	10	551
0305-20-2000	건조 어란	20	258
0305-30-1000	어류의피레트(건조)	20	101
0305-41-0000	태평양연어(훈제)	20	141
0305-49-9000	기타어류(훈제)	20	374
0305-59-2000	멸치(건조)	20	2,367
0305-59-9000	기타어류(건조)	20	104
0306-13-1000	새우살(냉동)	20	15,269
0306-13-9000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20	39,951
0306-14-3000	꽃게(냉동)	20	7,474
0306-14-9000	기타갑각류(냉동)	20	823
0306-23-1000	새우와보리새우(산것/신선,냉장)	20	11,734
0306-23-3000	새우와보리새우(염장,염수장)	20	1,536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년도.

<표 6-3> 아세안으로부터 연평균 10만 달러 이상 수입되는 수산품목-계속

단위 : 천 달러

품목번호	품 목 명	기본관세 (%)	연평균 수입액 ('00~'04)
0307-29-1000	가리비와조개(냉동)	20	166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10	6,395
0307-49-1020	오징어(냉동)	10	1,169
0307-49-3000	오징어(건조)	10	19,897
0307-59-1010	문어(냉동)	20	402
0307-59-1020	낙지(냉동)	20	4,698
0307-59-1030	쭈꾸미(냉동)	20	14,699
0307-99-1150	피조개(냉동)	20	837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20	251
0307-99-3120	바지락(염장,염수장)	20	1,153
0307-99-3190	기타연체동물(염장,염수장)	20	319
0307-99-3930	해파리(염장,염수장)	20	5,611
0511-91-1010	부화용 알(브라인슈림프알)	8	407
1212-20-9019	코토니및즈피노잠(냉동 이외 기타)	20	5,324
1504-10-1000	어류의간유,분획물(상어의 간유)	3	843
1603-00-3000	어류의 엑즈	30	225
1603-00-4000	어류의 즙	30	457
1603-00-9000	기타즙및추출물	30	124
1604-11-9000	연어(기타 조제품)	20	324
1604-14-1011	다랑어(기름담근 것)	20	365
1604-14-1019	다랑어(기타(밀폐용기에 넣은것)	20	311
1604-14-1029	가다랑어류(기타조제품)	20	267
1604-19-9010	쥐치포(조제품)	20	23,967
1604-19-9090	기타어류(조제품)	20	1,878
1604-20-9000	기타율(기타조제품)	20	422
1605-10-1090	게류(기타조제품)	20	122
1605-20-9020	새우와보리새우(브레드한 것)	20	754
1605-20-9090	새우와보리새우(기타조제품)	20	16,294
1605-90-1091	전복(밀폐용기에 넣은것)	20	112
1605-90-1099	기타연체도물(밀폐용기에넣은것)	20	197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품)	20	2,659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기타조제품)	20	2,703

자료 : 상게서

3. 품목별 우리나라 수출액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수산품목은 다랑어류 가공품으로서 전체 수출액의 약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어종별로 보면 오징어, 넙치, 굴, 붕장어 등의 활선어 및 가공품이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100만 달러 이상 수출된 품목은 총 32개에 달한다.

우리나라 수출 수산품목 중 아세안에 많이 수출품목 역시 다랑어 및 가다랑어 제품이며, 그밖에 굴, 고등어, 오징어 냉동 및 건조품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

<표 6-4>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수산품목

단위 : 천 달러

순위	품목번호	품 목 명	연평균 수출액 ('00~'04)	비율 (%)	누적비율 (%)
1	0303-44-0000	눈다랑어(냉동)	135,026	10.64	10.64
2	0307-49-1020	오징어(냉동)	70,204	5.53	16.17
3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69,721	5.49	21.67
4	1604-30-2000	캐비아 대용물	56,749	4.47	26.14
5	0301-99-8000	넙치류(활어)	43,879	3.46	29.60
6	0304-20-9000	기타어류(냉동 피레트)	38,100	3.00	32.60
7	1604-20-4010	게맛 생선묵	36,940	2.91	35.51
8	0307-10-2000	굴(냉동)	34,065	2.68	38.19
9	0304-10-1010	붕장어(신선,냉장 피레트)	32,598	2.57	40.76
10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32,048	2.53	43.29
11	0307-91-1500	피조개(산 것,신선,냉장)	31,871	2.51	45.80
12	1212-20-3010	톳(건조)	31,594	2.49	48.29
13	1605-10-1090	게(기타 조제품)	29,250	2.30	50.59
14	0307-10-1090	굴(산 것,신선,냉장)	28,444	2.24	52.83
15	1605-90-1010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	27,576	2.17	55.01
16	0307-91-1800	바지락(산 것,신선,냉장)	22,504	1.77	56.78
17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기타조제품)	20,558	1.62	58.40
18	2106-90-4010	조미김	20,369	1.61	60.01

자료 : 상게서

<표 6-4>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수산품목 - 계속

단위 : 천 달러

순 위	품목번호	품 목 명	연평균 수출액 ('00~'04)	비율 (%)	누적비율 (%)
19	0301-99-5000	붕장어(활어)	20,081	1.58	61.59
20	0303-49-0000	기타 다랑어류(냉동)	19,574	1.54	63.13
21	1604-20-9000	기타어류(밀폐용기에 넣은 것)	16,9843	1.34	64.47
22	1212-20-1010	김(건조)	16,192	1.28	65.74
23	0303-74-0000	고등어(냉동)	14,289	1.13	66.87
24	0303-43-0000	가다랑어(냉동)	14,209	1.12	67.99
25	0303-79-7000	전갱이(냉동)	13,506	1.06	69.05
26	1212-20-2010	미역(건조)	12,959	1.02	70.08
27	0307-91-1300	소라(산 것,신선,냉장)	12,733	1.00	71.08
28	2301-20-9000	기타수생동물 (분·조분,펠리트)	12,687	1.00	72.08
29	0307-91-1990	기타연체동물 (산 것,신선,냉장)	12,147	0.96	73.04
30	0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11,902	0.94	73.97
31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10,752	0.85	74.82
32	1604-19-9090	기타어류(기타조제품)	10,701	0.84	75.66

자료 : 상게서

4. 어종별 국내 생산금액

국내 연근해어업(일반해면어업)에 의해 생산되는 어종 중 가장 큰 수입을 창출하는 어종은 오징어로서 전체 생산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멸치, 갈치, 고등어, 꽃게, 붕장어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종의 활선어 및 가공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어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양식어업에 의한 생산물 중 가장 큰 수입을 가져다주는 품목은 넙치이며 연간 3,000억 원 이상 생산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김, 조피볼락, 굴, 전복의 순이며,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양식어업 생산금액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양식

어업 수입 중 활어의 비중이 높아서 현재 민어, 돔 등 일부 활어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철폐 혹은 감축될 경우 FTA 협상 상대국에 따라서는 국내 양식어가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요 생산 어종으로 다랑어류(가다랑어 포함)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그리고 오징어와 갑오징어가 약 17% 정도, 민어류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종의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협상상대국에 따라서는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시 국내 원양어업 업체들이 받는 타격이 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 중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다랑어류 생산대국이지만 태국은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양의 다랑어를 수입하고 있어서,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다랑어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의 득실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6-5> 국내 연근해어업 주요 생산어종(2002~2004년)

순 위	어 종	3개년 생산액 (백만원)	비율(%)	누적비율(%)
1	오징어류	1,120,222	14.93	14.93
2	멸 치 류	669,987	8.93	23.86
3	갈 치	598,330	7.98	31.84
4	고등어류	562,538	7.50	39.33
5	꽃 게	341,804	4.56	43.89
6	붕 장 어	331,788	4.42	48.31
7	낙 지	321,557	4.29	52.60
8	가자미류	242,891	3.24	55.83
9	참 조 기	231,054	3.08	58.91
10	기타어류	189,196	2.52	61.44
11	문 어	183,048	2.44	63.88
12	삼 치 류	138,645	1.85	65.72
13	병 어 류	109,946	1.47	67.19
14	소라고둥	102,571	1.37	68.56
15	기 타 게	100,701	1.34	69.90
16	주 꾸 미	96,116	1.28	71.18
17	붉은대게	94,950	1.27	72.45
18	조피볼락	82,267	1.10	73.54
19	바 지 락	80,760	1.08	74.62
20	아 귀	75,712	1.01	75.63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www.momaf.go.kr.

<표 6-6> 국내 양식어업 주요 생산어종(2002~2004년)

순 위	어 종	3개년 생산액 (백만 원)	비율(%)	누적비율(%)
1	넙 치 류	926,906	29.24	29.24
2	김	460,876	14.54	43.78
3	조피볼락	431,085	13.60	57.37
4	굴 류	293,597	9.26	66.63
5	전 복 류	131,127	4.14	70.77
6	바 지 락	123,465	3.89	74.66
7	대 하	105,973	3.34	78.01
8	미 역	105,326	3.32	81.33
9	피 조 개	95,688	3.02	84.35
10	참 돔	81,114	2.56	86.90

자료 : 상게서.

<표 6-7> 우리나라 원양어업 주요 생산어종(2002~2004년)

순 위	어 종	3개년 생산액 (백만 원)	비율(%)	누적비율(%)
1	눈다랑어	527,251	20.13	20.13
2	가다랑어	441,791	16.87	37.00
3	오징어류	326,989	12.48	49.48
4	황다랑어	319,413	12.19	61.68
5	민 어 류	252,774	9.65	71.33
6	기타어류	197,440	7.54	78.86
7	갑오징어	111,777	4.27	83.13
8	기 타 돔	85,531	3.27	86.40
9	꽁 치	77,919	2.97	89.37
10	명 태	68,468	2.61	91.98

자료 : 상게서.

5. 품목별 국내 종사자 수

2001년도 주요 수산품목별 국내 종사자수 추계결과를 보면, 바지락, 갈치, 굴, 김, 오징어 생산에 많은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6-8> 주요 품목별 국내 종사자수(2001년)

순위	품목번호	품 목 명	종사자수	비율	누적비율
1	0307-91-1800	바지락(산것,신선,냉장)	19,719	7.07	7.07
2	0302-69-3000	갈치(신선,냉장)	19,044	6.83	13.91
3	0302-69-9090	기타 어류(신선,냉장)	18,364	6.59	20.50
4	0307-10-1090	굴기타(산것,신선,냉장)	16,228	5.82	26.32
5	1212-20-1020	김(냉장)	13,977	5.01	31.33
6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냉장)	11,819	4.24	35.57
7	0307-91-1990	기타연체동물 (산것,신선,냉장)	10,352	3.71	39.29
8	0302-64-0000	고등어(신선,냉장)	10,132	3.64	42.92
9	0302-69-5000	붕장어(신선,냉장)	8,240	2.96	45.88
10	1212-20-2030	미역(냉장)	7,337	2.63	48.51
11	0302-22-0000	가자미(신선,냉장)	7,160	2.57	51.08
12	0307-51-0000	문어(산것,신선,냉장)	6,728	2.41	53.49
13	0305-59-2000	멸치(건조)	5,932	2.13	55.62
14	0302-69-4000	톰(신선,냉장)	5,616	2.01	57.64
15	0302-69-9010	삼치(신선,냉장)	5,100	1.83	59.47
16	0306-23-1000	새우와보리새우 (산것,신선,냉장)	4,566	1.64	61.11
17	0306-24-1010	꽃게(산것,신선,냉장)	4,435	1.59	62.70
18	1212-20-3020	톳(냉장)	3,828	1.37	64.07
19	0307-91-1500	피조개(산것,신선,냉장)	3,659	1.31	65.38
20	0301-99-9040	볼락(적어포함)(활어)	3,356	1.20	66.59

자료 : 조용훈외, 『한·일 FTA 협상 시나리오별 영향 평가 및 품목별 경쟁력』, 해양수산부, 2004.

6. 품목별 경쟁력 지수

본 연구 제3장에서 제사하였던 무역특화지수를 비교해 보면, 수산품목의 수출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간에는 그다지 높은 경합관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양국의 수출 특화 품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수산물 교역규모가 가장 큰 베트남과 비교해보면, 양국의 무역특화지수가 0.5 이상인 수산품목이 1개 품목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가장 경합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아세안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나, 어류가공품의 경우에는 품목번호가 같다 하더라도 원재료로 쓰이는 어종이 다르고 수출시장이 분화되어 있거나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많지 않은 품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국내산 제품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은 다랑어 혹은 가다랑어 관련 제품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와 실제적으로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은 다랑어 및 가다랑어 관련 제품이라 할 수 있으며, 그밖에는 멸치 관련 품목의 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조류의 경우에는 생산품종과 가공형태가 다르고 수출시장도 달라, 비록 지표상에는 경합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경합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아세안산 수입 수산품목의 국내 품목과의 경쟁도 평가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하여, 아세안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주요 품목에 대하여 유통체계 및 소비형태 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 혹은 유사 품종과의 경쟁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가. 새우관련 제품

(1) 국내 생산 및 유통실태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새우의 종류는 대하 새우이며, 세계적으로 많이 생

산되는 새우가 대게 아열대성인데 반해 대하 새우는 냉수성 어종이다.

우리나라의 양식새우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전국 양식새우 생산량이 2,368톤으로 전년에 비해 13%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새우양식장의 면적과 양식 어가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폐사율이 점증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새우양식의 손익분기 단위생산량은 ha당 1톤으로 추정되는 바,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새우양식은 전체적으로 손익분기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6-9> 연도별 전국 새우양식 현황

연도	양식장수	면적(ha)	방양량(천 미)	폐사율(%)	생산량(톤)	단위생산량 (톤/ha)
2000	390	2,223	650,560	77.5	2,925	1.32
2001	437	2,605	647,000	74.8	3,256	1.25
2002	461	2,563	715,380	80.0	2,850	1.11
2003	501	2,556	692,975	80.3	2,727	1.07
2004	468	2,332	611,390	NA	2,368	1.02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내부자료, 2005.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전체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전라남도만이 손익분기점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타 지역은 손익분기점을 크게 밑돌고 있다. 즉 주 소비지인 수도권에서 가까운 북쪽지역에서부터 흰반점 바이러스 등 질병으로 인한 대량폐사로 새우양식이 사양화되고 있다. 새우양식이 건재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주로 신안군 도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6-10> 지역별 새우양식 현황(2004년)

지 역	양식장수	생산량(톤)	단위생산량
인 천	29	45	·0.34
경 기	21	35	0.34
충 남	118	560	0.76
전 북	67	54	0.15
전 남	233	1,675	1.63
합 계	468	2,368	1.02

자료 : 상게서.

국내산 양식새우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선어 상태로 소비되어 왔다. 양식새우 수확이 이루어지는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대부분의 생산량이 소비된다.

최근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질병에 강하고 성장이 빠른 흰다리새우를 도입하여 시험양식하고 있는데, 대체품종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내 새우양식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며, 어가단위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에 비해 시설이 매우 열악하며, 질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990년대 초 외국으로부터 흰반점 바이러스가 유입되기 전까지는 새우양식의 수익성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폐사율이 낮을 경우, 투자비에 비해 3배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새우 수입 실태

과거에는 주로 냉동상태의 새우제품이 수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선어 및 염장 새우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 수입 냉동새우의 경우, 주로 활선어 상태로 소비되는 국내산 새우제품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며, 유통체계도 구별되어 서로 경합관계가 크지 않다. 수입 냉동새우 제품은 주로 식당, 급식업체 등에서 소비된다. 아세안 지역에서 수입되는 냉동 새우는 홍다리얼룩새우(Black Tiger Prawn)로서, 형태상 국산 새우와 뚜렷이 구별된다. 그리나 아세안산 냉동새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꽃새우 등 기타 새우제품과 경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송기술의 발달로 중국 해남도로부터 항공으로 염장 새우와

태국으로부터 활·선어 상태의 새우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선어 상태의 새우제품은 국내산 활선어 새우와 직접적인 경합관계가 형성된다. 중국산 염장 새우는 흰다리새우로서, 국내 대하새우와 맛과 형태가 비슷하여 일반인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산 염장 흰다리새우는 국내 양식새우에 비해 가격이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표 6-11> 새우제품(냉동) 국가별 수입실적

국 가	2003년		2004년	
	금액(천 달러)	중량(kg)	금액(천 달러)	중량(kg)
총 계	89,338	21,883,517	107,722	24,145,874
태 국	38,595	5,877,925	38,815	6,222,303
중 국	19,988	6,765,027	29,961	9,958,907
베트남	9,581	1,750,388	12,085	1,953,829
필리핀	5,879	613,287	6,591	782,059
캐나다	4,981	2,230,193	4,127	1,917,508
인도네시아	2,567	431,757	3,884	651,723
미얀마	624	157,294	2,850	464,437
말레이지아	843	227,237	1,935	395,279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표 6-12> 새우제품(산 것, 신선, 냉장) 국가별 수입실적

국 가	2003년		2004년	
	금액(천 달러)	중량(kg)	금액(천 달러)	중량(kg)
총 계	21,349	2,664,455	32,419	4,118,618
태 국	5,949	704,097	18,442	2,439,550
필리핀	11,362	1,313,490	10,184	1,028,384
중 국	1,994	414,214	2,161	469,719
인도네시아	1,838	213,354	1,501	169,539
베트남	57	5,773	76	9,316

자료 : 상게서.

<표 6-13> 새우제품(염장, 염수장) 국가별 수입실적

국 가	2003년		2004년	
	금액(천 달러)	중량(kg)	금액(천 달러)	중량(kg)
총 계	13,071	24,754,853	14,144	26,323,339
중 국	10,589	19,349,283	11,983	21,457,578
베트남	2,340	5,137,786	2,009	4,606,185
안도라	-	-	78	141,000
인도네시아	40	84,200	59	96,000
태 국	6	2,112	8	2,534

자료 : 상게서.

(3) 관세양허안

새우 냉동품과 가공품은 국내산 새우제품과 경합관계가 크지는 않으나, 꽃새우 등 국내 새우 냉동제품과 일정한 경합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수입 냉동새우(HSK 코드 0306-13 전품목, 1605-20 전품목)의 경우에는 국내산보다는 중국산과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새우 산 것, 신선, 냉장 제품과 염장 및 염수장 제품(HSK 코드 0306-23-1000, 0306-23-3000)은 국내산과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새우양식장 수를 고려할 때 종사자 수가 많으며, 둘째, 대하새우는 한국과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우리 고유의 수산물이라 할 수 있고, 향후 적절한 시설투자가 있을 경우 국내 새우양식은 질병관리가 이루어져서 생산성 및 채산성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으며, 셋째, 세계적으로 성행하는 흰다리새우 양식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높은 반면, 넷째, 활선어 새우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경우에는 수입급증으로 국내 새우양식 어가가 일시적으로 도산상태에 빠져 생산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선어 상태의 새우 제품에 대해서는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관세를 양허하지 않거나, 계절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꽃게

꽃게(HSK 코드 0306-14-3000, 0306-24-1010)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지만, 수입 냉동 꽃게의 6%는 베트남으로부터 반입되고 있다. 베트남산 수입꽃게는 껍질 색깔이 국내산과 다른 푸른 빛을 띄고 있으나, 등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 다리에 살이 붙은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되므로 국내산과 구별이 쉽지 않다.

냉동 및 활선어 상태의 꽃게는 국내산과 경합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의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2001년도 해양수산부의 품목별 종사자 수 조사에서 꽃게의 종사자 수가 4,435명으로 높게 나왔으며, 둘째, 현재 어장을 공유한 중국의 꽃게 불법조업으로 중국산 꽃게로부터의 시장보호가 요구되고, 셋째, 꽃게 조업은 서해안 도서지역의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 6-14> 꽃게(산 것, 신선냉장) 국가별 수입실적

국 가	2003년		2004년	
	금액(천 달러)	중량(kg)	금액(천 달러)	중량(kg)
총 계	2,218	434,979	3,675	712,825
중 국	2,211	432,930	3,642	697,825
미 국	6	2,042	31	14,840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표 6-15> 냉동 꽃게 국가별 수입실적

국 가	2003년		2004년	
	금액(천 달러)	중량(kg)	금액(천 달러)	중량(kg)
총 계	56,234	18,142,104	86,253	23,405,746
중 국	37,596	10,882,829	64,706	14,955,043
바레인	5,316	2,646,917	7,269	3,122,035
베트남	4,626	1,284,063	5,213	1,372,941
인 도	5,013	1,872,159	4,569	2,098,897
파키스탄	724	367,196	1,664	799,013
스리랑카	1,106	378,879	906	277,282
미얀마	293	110,676	629	244,019
태 국	506	146,667	471	125,244

자료 : 상게서

다. 활어

아세안으로부터 수입되는 활어는 소량의 능성어와 틸라피아를 제외하면 모두 관상용 열대어로서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이 많다. 세계적으로 관상어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관상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수입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 관상어 산업은 토종어종을 중심으로 차별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상어에 대한 시장보호의 의미는 크지 않다. 따라서 활어류(0301류) 전체에 대한 관세양허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머지않은 장래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및 일본과의 FTA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0301류를 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 신선·냉장 어류

다랑어류와 갈치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두 합해 연간 40만 달러 이하로 수입양이 많지 않다. 가다랑어를 포함한 다랑어류의 경우 우리나라가 신선·냉장제품을 아세안 지역에 수출하지는 않지만, 냉동품의 경우에는 태국을 중심으로 다량 수출하고 있다. 다랑어 생산에 있어서 향후 필리핀의 부상이 예상되지만, 아세안에 대한 다랑어류 관련제품의 교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출초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선·냉장제품을 포함한 다랑어류 제품에 대한 시장 보호의 필요성은 인식하기가 어렵다.

갈치의 경우에는 수입량이 많지 않으며, 신선·냉장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산과 맛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관세양허를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선·냉장 어류(0302류) 전체에 대해 관세를 양허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나, 이 역시 중국 및 일본과의 FTA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0301류를 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 냉동어류

아세안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냉동어류로는 갈치, 전갱이, 황다랑어, 가오리 등이 있다. 수입 냉동갈치의 경우 선도와 맛이 떨어져서 주로 식당 및 급식업체에서 소비되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일부는 가정용으로도 소비된다. 따라서 국내산 갈치와 경합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1> 국내 갈치 생산 추세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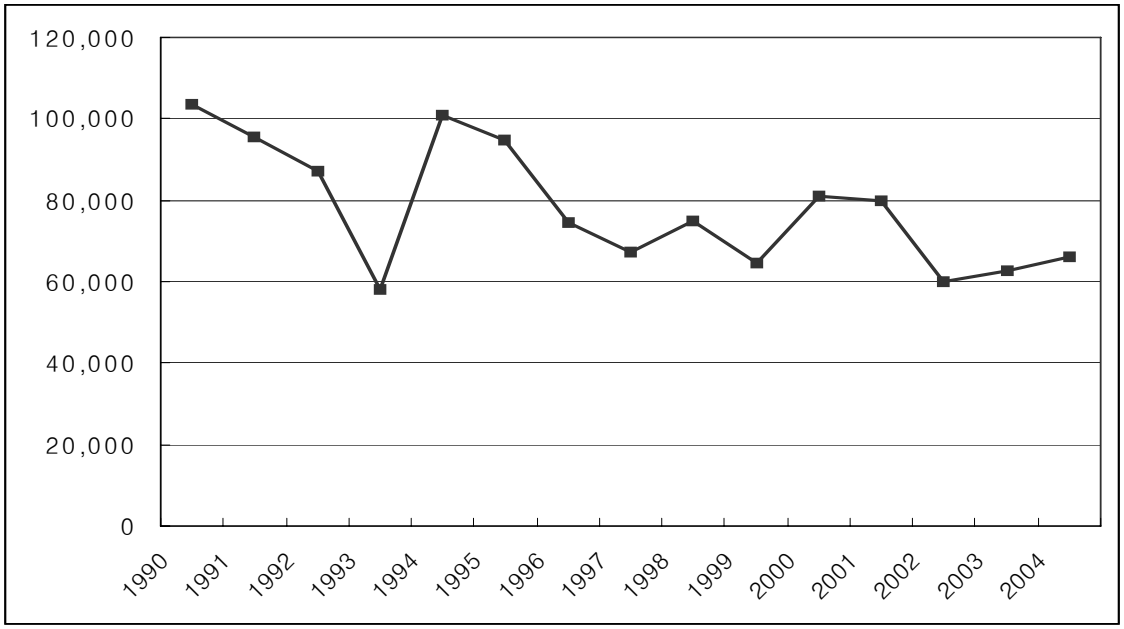

황다랑어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의 다랑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국내 원양산과의 경합관계가 우려되지만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대한 황다랑어 수출이 수입에 비해 4배 정도 높고, 태국 등 참치 가공산업의 발달로 아세안 국가의 원료 수요가 높아 향후에도 수출 전망이 밝으므로 양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오리류는 생산이 크게 줄어 국내 공급이 부족하고, 수입산의 선도가 떨어져 국내산과 경합관계가 크지 않으므로 양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냉동 어류 전체 품목에 대해 양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6-2> 국내 가오리류 생산 추세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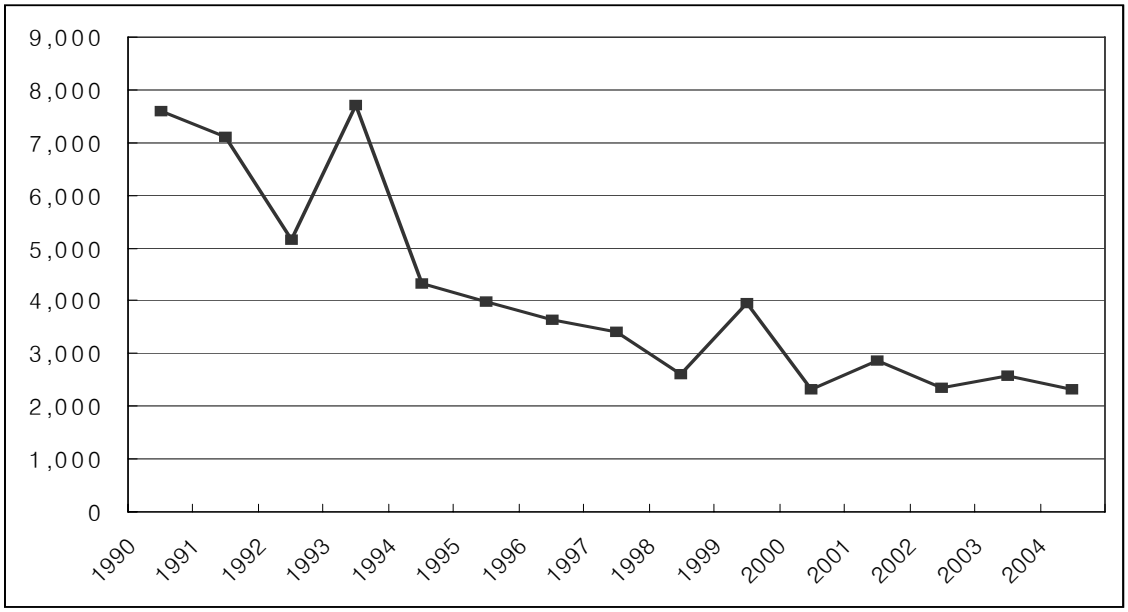

<그림 6-3> 국내 전갱이류 생산 추세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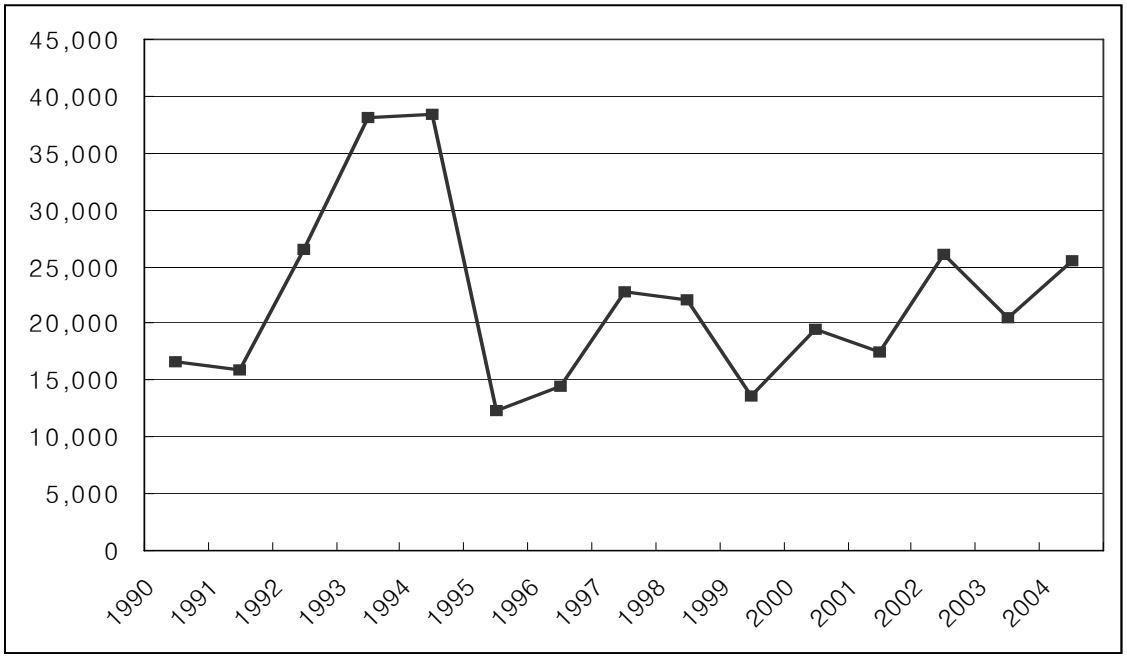

바. 어류 피레트 및 어육

국내 연근해산 어류가 피레트와 어육으로 가공되는 양이 미미하고, 아세안산 어류 피레트 및 어육 제품은 주로 중국산 및 미국산 등 수입산과의 경합관계가 성립하므로 전품목(0304류) 양허가 바람직하다.

<표 6-16> 어류 피레트 및 어육제품 (HSK 코드 0304류) 국가별 수입실적

국 가	2003년		2004년	
	금액(천 달러)	중량(kg)	금액(천 달러)	중량(kg)
총 계	201,827	127,125,709	200,856	134,735,123
중 국	52,530	36,089,574	60,274	44,106,655
미 국	53,709	32,656,099	53,277	37,994,214
베트남	24,106	26,494,677	22,349	25,148,441
태 국	18,137	14,353,651	12,222	10,180,359
대 만	7,529	1,172,807	9,400	1,473,676
일 본	6,295	948,918	6,027	1,037,794
페 루	4,389	1,987,493	4,432	1,918,483
말레이지아	3,235	3,634,380	3,929	4,637,300
인 도	4,361	3,193,730	2,883	2,679,340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사. 건조·염장 어류 제품

건조·염장 어류 제품의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량은 미미하고, 국내산과의 경합관계가 크지 않으므로 전품목 양허를 고려하되, 건조멸치(0305-49-1000)의 경우에는 아세안 국가의 무역특화지수가 높아 국내산과 경합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생산 및 관련산업 종사자 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TRQ 도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세안산 건조멸치는 저급품으로서 국내 멸치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에 주로 수입되며, 국내산과 경합관계가 크지는 않다.

<표 6-17> 건조·염장 어류제품 (HSK 코드 0305류) 국가별 수입실적

국 가	2003년		2004년	
	금액(천 달러)	중량(kg)	금액(천 달러)	중량(kg)
총 계	11,513	3,320,331	35,020	8,038,790
중 국	8,448	2,396,717	27,143	5,841,897
베트남	858	470,070	1,991	923,753
일 본	492	110,043	1,582	365,725
러시아 연방	38	9,007	1,065	233,551
인도네시아	463	187,802	811	223,392
미 국	118	7,877	506	33,166
태 국	48	37,306	436	267,077
싱가포르	205	10,242	420	23,995
북 한	312	39,706	273	33,260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아. 연체동물 및 기타 무척추 수생동물

(1) 오징어류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갑오징어(HSK 코드 0307-41-1000, 0307-49-1010)와 오징어 관련 제품(HSK 코드 0307-41-2000, 0307-49-1020, 0307-49-2000, 0307-49-3000)이 수입되고 있으나, 국내산과의 경합관계는 크지 않다. 갑오징어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소량이며, 태국산 건조오징어의 경우 화살오징어(한치)로서 국내산과 품종이 다르다. 그러나 화살오징어는 일반 오징어보다 고급품으로 인식되어 수입이 증가할 경우 국내 오징어 수요를 잠식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갑오징어와 건조오징어의 경우에는 민감품목에 포함시키되, 건조오징어의 경우에는 TRQ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건조 오징어의 경우에는 향후 대만, 중국과의 FTA 협상시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관련 어업의 종사자가 매우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오징어에 대한 TAC제도 도입이 계획되고 있어서, 수요와 생산량 차이에 대한 TRQ 적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쭈꾸미 및 낙지

국내에서 쭈꾸미 및 낙지(HSK 코드 0307-59-1020, 0307-59-1030)는 소량 생산되어 지역적으로 활선어 상태로 소비되고 있다. 식자재용으로 부족한 공급량은 수입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이미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보호의 의미가 더 이상 크지 않으나, 국내 관련 종사자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6-18> 낙지 냉동품 국가별 수입실적

국 가	2003년		2004년	
	금액(천 달러)	중량(kg)	금액(천 달러)	중량(kg)
총 계	48,096	27,596,387	63,278	33,531,648
중 국	40,429	23,413,132	53,277	28,453,706
베트남	5,951	3,197,993	8,129	4,001,024
태 국	768	482,571	1,044	624,506
일 본	743	356,327	459	213,281
인도네시아	48	40,606	226	153,921
말레이시아	140	94,435	112	67,5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표 6-19> 쭈꾸미 냉동품 국가별 수입실적

국 가	2003년		2004년	
	금액(천 달러)	중량(kg)	금액(천 달러)	중량(kg)
총 계	18,229	13,140,607	23,551	16,474,230
베트남	15,589	10,950,709	20,410	13,922,001
중 국	2,084	1,737,147	2,141	1,837,154
태 국	231	167,019	487	317,764
말레이시아	200	181,794	362	286,137
인도네시아	81	70,514	147	107,934

자료 : 상게서

(3) 기타 무척추 수생동물

바지락 및 피조개 등은 최근 아세안으로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종사자 수도 많은 품목이다. 따라서 관세양허시 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품목의 특성상 아세안 국가가 동 품목을 한국에 대량 수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바지락의 경우에는 국내산과는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맛도 현저하게 다다르다.

굴과 전복의 경우에도 대량 수출에 한계가 있으나, 전복의 경우에는 장차 태국 등에서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관련 어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삼의 경우 중국이 일차적인 관심국가이나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삼양식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체동물 및 기타 무척추동물(0307류)에 대해서는 시장보호의 의미가 크지는 않으나, 관련 어가가 많다는 점에서 오징어류, 낙지 및 피조개 등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 해조류

필리핀 등에서 많이 생산하는 해조류(코토니 및 스피노잠)는 국내산과 종류가 달라서 경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코토니 및 스피노잠은 식품의 원형유지를 위한 첨가물 제조를 위해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해조류 전품목(1212류)은 시장보호의 의미가 크지는 않다. 다만 일본과 중국과의 FTA 추진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 조제품

수산물 조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쥐치포는 사천시(구 삼천포 지역)와 부산 사하에 소재하던 국내 가공공장이 대부분 전업 혹은 도산한 상태이므로 시장보호의 의미가 없다.

새우와 보리새우 가공품(1605-20 전품목)의 경우에는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많고 국내산 새우관련 제품과 경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훈제 및 조미오징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수입물량은 많지 않으나, 아세안 국가의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관세양허시 중국, 대만 등으로부터 수입한 오징어를 가공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는 국내 오징어 가공산업에 큰 피해를 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민감품목에 포함하여 관세를 미양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조림을 중심으로 한 다랑어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미양허가 바람직하다. 첫째, 태국은 이미 세계 굴지의 참지통조림 가공국이고, 둘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역내 국가 중 다랑어 생산 대국이 존재하여, 셋째, 현재 아세안으로부터의 다랑어 조제품 수입은 많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다랑어 가공업체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랑어류 통조림에 대하여 미국, EU 등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서 다랑어 통조림에 대한 관세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대등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랑어류 조제품(1604-14류 전품목)은 미양허하고, 나머지 조제품류 전제품을 양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8. 수산부문의 민감품목 선정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수산부문의 민감품목을 일차적으로 다음과 선정하였다. 이러한 품목들은 한-아세안 FTA에 따른 관세 인하시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산물 수입급증으로 국내 어업에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표 6-20> 한국측의 수산부문 민감품목 중 초민감품목 1차 선정 결과(13개 품목)

품목번호	품목명	협상방안
0306 23 1000	새우와 보리새우 (산 것, 신선 또는 냉장)	관세 미양허 또는 계절관세 도입 고려
0306 23 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 또는 염수장)	관세 미양허 또는 계절관세 도입 고려
0305 49 1000	멸치(건조)	관세 미양허 또는 TRG 도입고려
0307 49 3000	오징어(건조)	관세 미양허 또는 TRQ 도입 고려
1604 14 1011	다랑어류(기름담근 것)	관세 미양허
1604 14 1012	다랑어류(보일드한 것)	관세 미양허
1604 14 1019	다랑어류(기타 조제품)	관세 미양허
1604 14 1021	가다랑어(기름담근 것)	관세 미양허
1604 14 1022	가다랑어(보일드한 것)	관세 미양허
1604 14 1029	가다랑어(기타 조제품)	관세 미양허
1604 14 1031	버니토우(기름담근 것)	관세 미양허
1604 14 1032	버니토우(보일드한 것)	관세 미양허
1604 14 1039	버니토우(기타 조제품)	관세 미양허

<표 6-21> 한국측의 수산부문 일반 민감품목 1차 선정 결과(21개 품목)

품목번호	품목명	협상방안
0306 13 1000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새우살)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6 13 9000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냉동품)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6 23 2000	새우와 보리새우(건조)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6 14 3000	꽃게(냉동)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6 24 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41 1000	갑오징어(산 것, 신선 또는 냉장)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41 2000	오징어(산 것, 신선 또는 냉장)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49 1010	갑오징어(냉동)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49 1020	오징어(냉동)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49 2000	오징어류(염장 또는 염수장)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59 1020	낙지(산 것, 신선 또는 냉장)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59 1030	쭈꾸미(산 것, 신선 또는 냉장)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91 1500	피조개(산 것, 신선 또는 냉장)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91 1800	바지락(산 것, 신선 또는 냉장)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99 1130	바지락(냉동)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99 1150	피조개(냉동)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99 3120	바지락(염장 또는 염수장)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0307 99 3190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염장 또는 염수장)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1605 20 9090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조제품)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1605 90 2010	오징어(훈제)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1605 90 9010	오징어(조미)	유예기간 및 관세감축

이와 별도로 어장을 공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활·선어의 교역이 많은 일본과 중국과의 FTA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품목을 별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품목들이 비록 아세안으로부터 수입될 가능성이 크

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 일본 및 중국과의 FTA 협상에 대비하여 전부 혹은 중요도에 따라 일부를 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략적 보호품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 국내 조정관세 부과대상 11개 수산품목
- 국내 생산과 종사자 수가 많은 활어류 품목
-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족자원
- 국내생산과 종사자 수가 많은 해조류 품목
- 국내 생산과 종사자 수가 많은 양식품목

먼저 현재 조정관세 부과대상 11 품목은 <표 6-22>와 같다. 이 중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새우와 보리새우(염장 또는 염수장), 오징어(냉동)는 한-아세안 FTA 협상에 대비한 민감품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들 3개 품목을 제외하고,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50개 품목을 선정한 결과는 <표 6-23>과 같다. 제품 종류별로 보자면, 활어 10개 품목, 선어 11개 품목, 냉동 어류 4개, 어류 가공품 5개, 패류 및 연체동물 10개, 그리고 해조류 제품 10개 품목 등이다.

결론적으로 한-아세안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이 제시할 수산부문 상품양허안에는 앞에서 아세안산 수산품목과의 경쟁관계를 바탕으로 선정한 초민감품목 및 일반 민감품목 대상 34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대해 제시할 민감품목 바스켓 중 수산부문에 배당되는 품목 수에 따라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50개 수산품목 중 일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6-22> 국내 조정관세 부과대상 수산품목

품목번호	품목명	기본관세	조정관세
0301 92 9000	뱀장어류(활어)	10	30% 또는 1,908원/kg 중 고액(율)
0301 99 4000	돔(활어)	10	45% 또는 3,292원/kg 중 고액(율)
0301 99 9050	농어(활어)	10	45
0301 99 9095	민어(활어)	10	36 (참조기,부세제외
0303 79 1000	명태(냉동)	10	30
0303 79 8000	꽁치(냉동, 학공치 포함)	10	40 (학꽁치제외)
0303 79 9093	홍어(냉동)	10	30
0303 79 9093	민 어(냉동)	10	70 (참조기,부세제외)
0306 13 9000[1)]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20	27 (새우살제외)
0306 23 3000[2)]	새우와 보리새우 (염장 또는 염수장)	20	55%또는 363원/kg 중 고액(율)
0307 49 1020[1)]	오징어(냉동)	10	27 (연육제외)

주 : 1) 일반 민감품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음
2) 초민감품목 대상 품목에 제안되어 있음

<표 6-23>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수산품목(50개 품목)

품목번호	품목명	2004 수입 (달러)	비고
0301-92-9000	뱀장어기타(앵귀라종 - 활어)	26,971,203	조정관세 부과품목
0301-99-2000	방어(활어)	1,150,029	
0301-99-4000	돔(활어)	25,344,725	조정관세 부과품목
0301-99-5000	붕장어(활어)	154,751	국내생산 많음
0301-99-8000	넙치(활어)	3,406,271	국내 최대 양식품목
0301-99-9010	능성어(활어)	1,223,136	고가 수산물, 향후 양식 잠재력 높음
0301-99-9020	복어(활어)	2,017,412	
0301-99-9050	농어(활어)	36,257,140	조정관세 부과품목
0301-99-9092	붕어(활어)	12,418,087	
0301-99-9095	민어(활어)	13,670,460	조정관세 부과품목
0302-29-0000	기타넙치류(신선,냉장)	221,893	
0302-50-0000	대구(신선,냉장)	4,957,133	

<표 6-33>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수산품목(50개 품목) -계속

품목번호	품목명	2004 수입(달러)	비고
0302-64-0000	고등어(신선,냉장)	4,039,556	국내생산액 2위(포획어업)
0302-69-1000	명태(신선,냉장)	38,485,753	
0302-69-3000	갈치(신선,냉장)	20,920,692	국내생산액 2위(포획어업)
0302-69-4000	돔(신선,냉장)	3,937,385	
0302-69-5000	붕장어(신선,냉장)	628,214	국내생산액 6위(포획어업)
0302-69-8000	꽁치(신선,냉장)	2,374,083	
0302-69-9020	복어(신선,냉장)	10,310,364	
0302-69-9040	아귀(신선,냉장)	2,254,270	
0302-69-9090	기타어류(신선,냉장)	31,014,628	
0303-79-1000	명태(냉동)	135,532,751	조정관세 부과품목
0303-79-8000	꽁치(학꽁치포함 -냉동)	27,344,551	조정관세 부과품목
0303-79-9093	홍어(냉동)	19,274,929	조정관세 부과품목
0303-79-9095	민어(냉동)	3,881,504	조정관세 부과품목
0305-49-1000	멸치(훈제)	77,165	종사자 수 많음
0305-59-2000	멸치(건조)	3,801,524	종사자 수 많음
0305-59-3000	명태(북어 - 건조)	19,540,384	국내 가공업체 많음
0305-63-1000	멸치젓(염장,염수장)	420	종사자 수, 국내 가공업체 많음
0305-63-9000	멸치기타(염장,염수장)	37,487	
0307-21-0000	가리비과의조개(산것/신선,냉장)	4,863,178	
0307-29-1000	가리비과의조개(냉동)	2,565,837	
0307-91-1200	전복(산것/신선,냉장)	4,118,312	최근 양식생산 급증
0307-91-1500	피조개(산것/신선,냉장)	2,546,983	국내 양식어가 많음
0307-91-1800	바지락(산것/신선,냉장)	1,990,934	종사자 수 1위
0307-91-9030	우렁쉥이(산것/신선,냉장)	5,190,605	국내 양식어가 많음
0307-99-1130	바지락(냉동)	524,080	종사자 수 1위
0307-99-1150	피조개(냉동)	1,790,882	국내 양식어가 많음
0307-99-1920	우렁쉥이(냉동)	1,058,158	국내 양식어가 많음
0307-99-3120	바지락(염장,염수장)	3,787,126	국내 양식어가 많음
1212-20-1011	김(마른것)	520,691	국내 생산, 종사자 수, 가공업체 많음

<표 6-33>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수산품목(50개 품목) -계속

품목번호	품목명	2004 수입 (달러)	비고
1212-20-1090	김(마른것,냉장,냉동이외기타)	727	
1212-20-2010	미역(건조)	1,170,096	
1212-20-2020	미역(염장)	1,682,571	
1212-20-3010	톳(건조)	211,090	
1212-20-5010	다시마(염장)	88,132	
1212-20-5030	다시마(냉동)	25,593	
1212-20-5090	다시마(염장,냉장,냉동 외 기타)	389,726	
2106-90-4010	김(조제한 식용 해초류)	28,576	
2106-90-4090	조제 식용 해초류 (김 이외 기타)	674,350	

제3절 기타 쟁점에 대한 협상방향

관세양허 외에 한-아세안 협상시 수산부문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원산지 기준과 위생·검역관련 규정, 통관절차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자간 입장 차가 명백하고 협상과정에서 양측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각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전망하고 우리의 협상방향만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아세안 측은 A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40% 이상)을 관철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HS code 6단위의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산물에 있어서는 세번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격한 HS code 2단위 기준의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데, 이 경우에도 03류 품목에서 16류 품목의 세번 변경은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

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수산가공업이 발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원산지 판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 사례를 볼 때[17], 아세안측이 한국 측이 제안하는 완전생산 기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끝까지 부가가치 기준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이 한-아세안 FTA 협상 타결을 지연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아세안 측이 농·수산물에 대해 끝까지 부가가치 기준을 고수할 경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완전생산 기준에서 HS 코드 2단위의 엄격한 세번변경 기준 적용(단, 03류에서 16, 21류 등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예외규정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제안도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고려할 수 방안은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되, 부가가치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원산지 확인과정을 가급적 철저히 적용하는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 원산지 규정과 함께 수산부문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위생·검역 관련 규정이다. 아세안 측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위생·검역 규정을 완화하여 아세안 국가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특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식품 위생·안전에 관한 규제강화로 수산물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정책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원산지 기준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측으로서는 원산지 판정규정과 연계하여 협상에 임하더라도,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위해 위생검역 기준에 있어서 아세안 측에 양보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7) 아세안은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 있어서도 부가가치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규정이 FTA 타결을 지연시키는 쟁점이 되고 있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7장 요약 및 결론

아세안 10개국을 한 단위로 보면, 아세안은 세계 어업생산의 13%, 전세계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15%를 차지하는 수산거대세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의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도 2004년을 기준으로 국내 수산물 총 수입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부문의 주요 교역 상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타결하였지만, 아세안은 수산부문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첫 번째 FTA 상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세안과의 FTA 협상은 장차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큰 영향을 주게 될 한-일, 한-중 FTA 협상의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산부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아세안 FTA가 국내 수산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다.

먼저 무역특화지수를 바탕으로 수산부문에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의 품목별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랑어류 제품을 제외하고는 양자 간에 경쟁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 국가로부터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못한 수산가공품이 주로 수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시장비교우위지수를 바탕으로 아세안으로 수입되는 수산품목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는 최근 들어 아세안 국가로부터 오징어, 갑오징어 등 연체동물 관련 품목과 쌍각 조개류 관련 품목, 활·선 상태의 새우제품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는 현재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종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체동물류 품목의 수입비중 증가는 국내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바지락, 피조개 등의 조개 제품과 활·선어 상태의 새우제품의 수입비중 증가도 국내 관련 양식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을 이용하여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가 철폐시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산물의 수입 변화를 전망한 결과,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은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 쥐치포(통조림외 조제품), 갑오징어(냉동)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3개 품목이 관세 철폐시 아세안산 수산물 수입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품목들은 수입액 자체가 크고, 전체 수입물량 중 아세안산의 비중이 큰 품목이다. 또한 현재 수입량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관세 철폐로 인해 새로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건조 멸치, 새우와 보리새우(염장, 염수장), 기타 연체동물(염장, 염수장), 냉동 황다랑어 등으로 예측되었다.

FTA 체결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한다 하더라도,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을 제외하고는 해당품목 혹은 유사품목의 국내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무역통계에 나타난 품목이 설사 국내 생산 품목과 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간에는 가공단계와 신선도, 맛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장이 서로 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국내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어서, 수입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단 기간에는 국내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있었다. 즉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다수의 수산식품은 시장에서 국내산보다는 다른 국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식품과 일차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내산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 신선, 냉장)의 수입 증가에 의한 국내 어업에의 영향은 137억 원의 어업수입 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은 연간 100만 달러, 1,400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연평균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액의 2%에 해당한다. 이처럼 수입증대 효과에 비해 수출증대 효과가 작은 것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아세안의 수산물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데다, 우리나라가 현재 주로 수출하는 품목의 관세율은 5%에 불과해 관세철폐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수산품목별 경쟁력 분석 및 FTA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와 품목별 연간 수입금액,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규모, 품목별 국내생산액 및 종사자 수 등을 참고하고, 아세안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체계 및 소비형태에 관해 별도로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아세안과의 FTA 협상시 수산부문의 민감품목 34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민감품목에는 새우관련 제품, 다랑어류 제품, 멸치가공품, 오징어 가공품, 꽃게 제품, 낙지 및 쭈꾸미 등의 연체동물 제품, 바지락, 피조개 등의 조개류 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또 이와 별도로 향후 전개될 활·선어 제품의 교역이 가능한 일본과 중국과의 FTA를 고려하여,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50개 품목을 선정하였는데, 여기에는 활어 10개 품목, 선어 11개 품목, 냉동 어류 4개, 어류 가공품 5개, 패류 및 연체동물 10개, 그리고 해조류 제품 10개 품목 등이 포함되었다.

한-아세안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이 제시할 수산부문의 상품 양허안에는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 어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34개의 민감품목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전략적 보호품목은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대해 제시할 전체 민감품목 바스켓 중 수산부문에 배당되는 품목 수에 따라 그 중 일부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품 양허안 외에 수산물 교역과 관련된 비관세제도에 대한 협상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식품 위생·안전에 관한 규제강화로 수산물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농·수산물에 대해 배타적인 위생·검역 규정의 적용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수산부문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전체의 보건과 후생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향후 전개될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협상타결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요청을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김남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한일FTA 협상과 수산부문 대응』, 한국수산회, 2004.

감수진, 『중국,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범한 자세 견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04.

무역연구소, 『ASEAN의 FTA 추진현황과 한-ASEAN FTA의 필요성』, 2004.

무역연구소, 『중국-ASEAN FTA의 주요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2005.

무역연구소, 『2004년 세계 FTA 추진 동향 및 2005년 전망』, 2005.

산업자원부, 『한·칠레 FTA 원산지 규정 주요내용』, 2002.

외교통상부, 『한·아세안 FTA 공동연구 추진경위 및 현황』, 2004.8.

이계임외, 『수산물 수급실태 분석과 중장기 전망에 대한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2003.

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

정성춘·권율, 『일본·말레이시아 FTA 타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정성춘, 『일본·멕시코 FTA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조용훈외, 『한·일 FTA 협상 시나리오별 영향 평가 및 품목별 경쟁력』, 해양수산부, 2004.

조정희·김봉태, 『한·아세안 FTA 협상전략 및 시사점』, 해양수산 현안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주문배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2003.

주문배외,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 부문 영향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최홍배외, 『한·싱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2004.

해양수산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수산물』, 한국무역협회, 2003.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입통계연보』, 각 년도.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2004. 12.

Anderson, J. L., 『The International Seafood Trade』, Woodhead Publishing Ltd., 2003.

FAO, 『Fishery Statistics 2002』, 2004.

Isamu Wakamatsu, 『JETRO Bangkok, Rule of origin』, 2004.

P. J. Verdoon and A. N. Schwarz, 『wo Alternative Estimates of the Effects of EEC and EFTA on the Pattern of Trade』,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 1976, pp. 291-335.

William Cline, 『Trade Negotiations in the Tokyo Round ; A Quantitative Assessment』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8, pp. 257-264.

아세안 사무국, www.aseansec.org, www.apectariff.org

유엔식량농업기구, www.fao.org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부 록

<부록 1>
한국과 아세안국가 간의 수산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표 A1-1> 한국과 베트남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HSK	품 목 명	한 국	베트남
0301-99	기타활어	-0.19	0.36
0303-49	기타 다랭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76	0.97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0.73	0.99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한 것 제외)	-0.06	0.99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0.92	0.87
0306-2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제외)	-0.95	-0.67
0306-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0.93	0.91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05	0.99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81	0.98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것)	-0.05	0.95
0508-00	산호,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 오징어뼈와 그들의 분과 웨이스트	-0.37	0.02
0511-91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그들의 사체(비식용)	-0.54	-0.46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0.74	-0.80
1302-31	한천	0.86	-0.59
2301-20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0.19	-0.63

<표 A1-2> 한국과 태국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HSK	품 목 명	한국	태국
0301-10	관상용활어	-0.81	0.97
0301-92	뱀장어(앵귈라종, 활어)	-0.66	0.92
0301-99	기타 활어	-0.19	0.98
0302-29	기타 넙치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0.05	0.84
0302-31	날개다랑어, 간지느러미다랑 어 (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0.09	1.00
0302-39	가타다랭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1.00	-0.65
0302-66	뱀장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0.50	1.00
0302-69	기타어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0.74	0.77
0302-70	어류의 간장과 어란(신선, 냉장)	-0.90	0.71
0303-19	기타	-0.94	-0.89
0303-22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98	-0.81
0303-29	기타 연어류(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94	-0.89
0303-31	냉동넙치(간장과 어란 제외)	0.07	0.40
0303-39	기타넙치류(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50	-0.64
0303-41	날개다랑어, 간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0.99	-0.98
0303-42	냉동황다랑어(간장과 어란 제외)	0.95	-0.97
0303-43	가다랑어, 줄무늬버니토우(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93	-1.00
0303-44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0.93	-1.00
0303-49	기타다랑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76	-0.21
0303-50	냉동청어(간장과 어란 제외)	-0.52	0.67
0303-71	냉동정어리(간장과 어란 제외)	-0.93	-0.85
0303-74	냉동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0.24	-0.95
0303-75	곱상어, 기타 상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87	-0.98
0303-76	냉동뱀장어(간장과 어란 제외)	0.02	0.63
0303-77	냉동농어(간장과 어란 제외)	1.00	-0.50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0.73	-0.56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0.84	-0.96
0304-10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 어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	0.96	0.05
0304-20	냉동한 피레트	-0.25	0.82

<표 A1-2> 한국과 태국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 계속

HSK	품 목 명	한국	태국
0304-90	기타 어육(냉동)	-0.98	0.99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0.77	0.10
0305-30	어류의 피레트(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제외	-0.73	0.92
0305-49	기타 훈제한 어류(피레트 포함)	-0.32	0.97
0305-51	건조대구(훈제한 것 제외)	-0.96	0.02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한 것 제외)	-0.06	0.87
0305-63	멸치(염장, 염수장한 것)	0.97	0.99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0.78	0.85
0306-12	냉동바다가재(호마루스종)	-0.34	0.22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0.92	0.70
0306-14	게 (냉동한 것)	-0.78	-0.15
0306-19	기타 냉동갑각류	-0.86	0.87
0306-23	새우 ,보리새우(냉동한것제외)	-0.95	0.61
0306-24	게(냉동한 것 제외)	-0.89	0.07
0306-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0.93	-0.49
0307-10	굴	0.98	-0.46
0307-21	가리비과의 조개(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90	-0.34
0307-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0.93	0.67
0307-31	홍합(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31	-0.99
0307-39	홍합(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73	0.69
0307-41	갑오징어, 오징어(산것, 신선, 냉장한 것)	-0.36	-0.11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05	0.71
0307-51	문어(산 것 ,신선 ,냉장한 것)	-1.00	0.99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81	0.52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49	-0.04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05	0.95
0508-00	산호,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 뼈 분과 웨이스트	-0.37	0.64
0509-00	동물성해면	0.69	-0.17

<표 A1-2> 한국과 태국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 계속

HSK	품 목 명	한국	태국
0511-91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그들의 사체(비식용)	-0.54	-0.60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0.74	-0.94
1302-31	한천	0.86	-0.84
1504-10	어류의 간유와 분획물	0.00	-0.84
1504-2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제외)	-0.75	-0.39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53	0.99
1604-13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스프랫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79	0.99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0.76	1.00
1604-15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35	1.00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	-0.74	0.94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 제외)	0.82	0.98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대용물	0.77	-0.91
1605-10	게(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84	0.87
1605-20	새우 ,보리새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00	1.00
1605-40	기타 갑각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93	0.97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18	0.96

<표 A1-3>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HSK	품 목 명	한국	인도네시아
0301-10	관상용활어	-0.81	-0.43
0301-91	송어(활어)	0.38	0.88
0301-92	뱀장어(앵귈라종, 활어)	-0.66	-0.53
0301-99	기타활어	-0.19	0.98
0302-21	넙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1.00	-0.98
0302-29	기타 넙치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0.05	0.10
0302-31	날개다랑어, 간지느러미다랑어 (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0.09	-0.84
0302-39	기타다랑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1.00	0.99
0302-40	청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1.00	0.26
0302-66	뱀장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0.50	-0.44
0302-69	기타어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0.74	1.00
0302-70	어류의 간장과 어란(신선, 냉장)	-0.90	0.97
0303-21	냉동송어(간장과 어란 제외)	0.39	-0.76
0303-29	기타연어류(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94	0.99
0303-31	냉동넙치(간장과 어란 제외)	0.07	0.17
0303-39	기타넙치류(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50	0.88
0303-41	날개다랑어, 간지느러미다랑어 (터너스 알라룽가)	0.99	0.65
0303-42	냉동황다랑어(간장과 어란 제외)	0.95	0.91
0303-43	가다랭어, 줄무늬버니토우 (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93	0.73
0303-49	기타다랑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76	1.00
0303-50	냉동청어(간장과 어란 제외)	-0.52	1.00
0303-71	냉동정어리(간장과 어란 제외)	-0.93	0.84
0303-74	냉동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0.24	0.94
0303-75	곱상어, 기타상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87	1.00
0303-76	냉동뱀장어(간장과 어란 제외)	0.02	-0.21
0303-77	냉동농어(간장과 어란 제외)	1.00	-0.62
0303-79	기타냉동한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0.73	0.99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0.84	0.71

<표 A1-3>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 계속

HSK	품 목 명	한국	인도네시아
0304-10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 어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96	1.00
0304-20	냉동한 피레트	-0.25	0.99
0304-90	기타어육(냉동)	-0.98	1.00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0.77	1.00
0305-30	어류의 피레트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 제외	-0.73	0.67
0305-49	기타 훈제한 어류(피레트 포함)	-0.32	0.98
0305-51	건조대구(훈제한 것 제외)	-0.96	1.00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한 것 제외)	-0.06	0.98
0305-61	청어(염장, 염수장한 것)	1.00	-0.98
0305-63	멸치(염장, 염수장한 것)	0.97	1.00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0.78	0.73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92	1.00
0306-14	게(냉동한 것)	-0.78	1.00
0306-19	기타 냉동갑각류	-0.86	1.00
0306-2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제외)	-0.95	-0.54
0306-24	게(냉동한 것 제외)	-0.89	1.00
0306-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0.93	0.94
0307-10	굴	0.98	0.92
0307-21	가리비과의 조개(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90	1.00
0307-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0.93	1.00
0307-39	홍합(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73	0.98
0307-41	갑오징어, 오징어(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36	0.35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05	1.00
0307-51	문어(산 것, 신선, 냉장한 것)	-1.00	0.59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81	1.00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49	0.99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05	0.71

<표 A1-3>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 계속

HSK	품 목 명	한국	인도네시아
0508-00	산호,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 오징어뼈와 그들의 분과 웨이스트	-0.37	1.00
0509-00	동물성해면	0.69	-0.99
0511-91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그들의 사체(비식용)	-0.54	0.59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0.74	1.00
1302-31	한천	0.86	0.97
1504-10	어류의 간유와 분획물	0.00	0.84
1504-2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 제외)	-0.75	0.99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53	1.00
1604-13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스프랫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79	-0.81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0.76	1.00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	-0.74	-0.85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 제외)	0.82	1.00
1605-10	게(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84	0.64
1605-20	새우와 보리새우(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00	1.00
1605-40	기타 갑각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93	0.46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18	0.80
2301-20	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0.19	1.00

<표 A1-4> 한국과 필리핀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HSK	품 목 명	한국	필리핀
0301-10	관상용활어	-0.81	0.99
0301-99	기타활어	-0.19	0.21
0302-39	기타다랑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1.00	-0.96
0302-40	청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1.00	1.00
0302-69	기타어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0.74	0.91
0302-70	어류의 간장과 어란(신선, 냉장)	-0.90	-0.48
0303-42	냉동황다랑어(간장과 어란 제외)	0.95	0.98
0303-43	가다랑어, 줄무늬버니토우 (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93	0.95
0303-50	냉동청어(간장과 어란 제외)	-0.52	1.00
0303-71	냉동정어리(간장과 어란 제외)	-0.93	0.95
0303-74	냉동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0.24	0.98
0303-76	냉동뱀장어(간장과 어란 제외)	0.02	-0.95
0303-77	냉동농어(간장과 어란 제외)	1.00	-0.95
0303-79	기타냉동한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0.73	0.98
0304-10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 어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96	1.00
0304-20	냉동한 피레트	-0.25	1.00
0304-90	기타어육(냉동)	-0.98	-0.19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0.77	-0.91
0305-49	기타 훈제한 어류(피레트 포함)	-0.32	1.00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한 것 제외)	-0.06	1.00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0.78	-0.87
0306-12	냉동바다가재(호마루스종)	-0.34	1.00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0.92	1.00
0306-14	게(냉동한 것)	-0.78	1.00
0306-19	기타 냉동갑각류	-0.86	1.00
0306-2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제외)	-0.95	1.00
0306-24	게(냉동한 것 제외)	-0.89	1.00
0306-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0.93	1.00
0307-10	굴	0.98	-0.99

<표 A1-4> 한국과 필리핀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 계속

HSK	품 목 명	한국	필리핀
0307-21	가리비과의 조개(산것, 신선, 냉장한 것)	-0.90	-0.90
0307-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0.93	0.76
0307-39	홍합(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73	0.94
0307-51	문어(산 것, 신선, 냉장한 것)	-1.00	0.29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81	0.39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49	-0.65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05	0.48
0508-00	산호,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 오징어뼈와 그들의 분과 웨이스트	-0.37	1.00
0509-00	동물성해면	0.69	0.40
0511-91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그들의 사체 (비식용)	-0.54	0.52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0.74	0.99
1504-10	어류의 간유와 분획물	0.00	1.00
1504-2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제외)	-0.75	-0.99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53	-0.92
1604-13	청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스프랫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79	0.34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0.76	1.00
1604-15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35	0.09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	-0.74	0.00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 제외)	0.82	0.77
1605-10	게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84	0.87
1605-20	새우 ,보리새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00	1.00
1605-40	기타 갑각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93	1.00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18	0.86
2301-20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0.19	-0.99

<표 A1-5>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HSK	품 목 명	한국	말레이시아
0301-10	관상용활어	-0.81	0.56
0301-99	기타활어	-0.19	-0.06
0302-39	기타다랑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1.00	0.55
0302-40	청어(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1.00	1.00
0302-69	기타어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0.74	-0.96
0303-19	기타	-0.94	-0.95
0303-29	기타연어류(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94	-0.97
0303-39	기타넙치류(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50	-0.84
0303-42	냉동황다랑어(간장과 어란 제외)	0.95	-0.23
0303-43	가다랑어, 줄무늬버니토우(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93	-0.95
0303-44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0.93	-0.98
0303-49	기타다랑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76	-0.20
0303-71	냉동정어리(간장과 어란 제외)	-0.93	-0.95
0303-74	냉동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0.24	-0.92
0303-75	곱상어, 기타상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0.87	-0.99
0303-76	냉동뱀장어(간장과 어란 제외)	0.02	-0.64
0303-77	냉동농어(간장과 어란 제외)	1.00	-0.53
0303-79	기타냉동한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0.73	-0.86
0304-10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 어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96	-0.97
0304-20	냉동한 피레트	-0.25	-0.43
0304-90	기타어육(냉동)	-0.98	-0.84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0.77	-0.47
0305-30	어류의 피레트(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제외	-0.73	0.69
0305-49	기타 훈제한 어류(피레트 포함)	-0.32	-0.56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한 것 제외)	-0.06	-0.76
0305-63	멸치(염장, 염수장한 것)	0.97	0.33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0.78	1.00
0306-12	냉동바다가재(호마루스종)	-0.34	0.05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0.92	0.33
0306-14	게(냉동한 것)	-0.78	-0.72
0306-19	기타냉동갑각류	-0.86	0.30
0306-2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제외)	-0.95	-0.45
0306-24	게(냉동한 것 제외)	-0.89	-0.82

<표 A1-5>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 계속

HSK	품 목 명	한국	말레이시아
0306-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0.93	-0.11
0307-10	굴	0.98	-0.99
0307-21	가리비과의조개(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90	-0.88
0307-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0.93	-0.62
0307-31	홍합(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31	1.00
0307-39	홍합(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73	0.18
0307-51	문어(산 것 ,신선 ,냉장한 것)	-1.00	-0.09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81	0.64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49	0.54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0.05	0.56
0508-00	산호,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 오징어뼈와 그들의 분과 웨이스트	-0.37	-0.89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그들의 사체(비식용)	-0.54	-0.35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0.74	-0.60
1302-31	한천	0.86	-0.75
1504-10	어류의 간유와 분획물	0.00	0.91
1504-2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제외)	-0.75	0.04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53	-0.65
1604-13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스프랫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79	0.23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0.76	-0.54
1604-15	고등어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35	-0.66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	-0.74	0.89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 제외)	0.82	-0.89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대용물	0.77	0.70
1605-10	게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84	0.95
1605-20	새우 ,보리새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00	1.00
1605-40	기타 갑각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93	-0.51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18	-0.16
2301-20	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0.19	0.58

<부록 2>

아세안국가의 수산품목별 국내시장 비교우위지수

<표 A2-1> 베트남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중심)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1605-20-9010	새우와 보리새우(훈제한 것으로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5.48	15.10	15.76	0.89
1604-19-9010	쥐치포(조제 또는 저장처리)	15.17	14.51	15.27	0.34
0307-49-3000	갑오징어, 오징어(건조한 것)	12.94	13.44	13.66	2.71
0307-59-1030	쭈꾸미	13.63	12.91	13.65	0.10
1605-90-1030	바지락	15.02	8.79	12.41	-9.09
0307-99-1150	피조개(냉동)	5.47	9.98	12.23	49.52
0307-49-1010	냉동갑오징어	8.52	8.25	7.89	-3.74
0307-99-3190	기타연체동물(염장, 염수장)	9.89	14.03	5.39	-26.19
0304-90-1090	기타활어	4.02	4.84	5.25	14.21
0305-59-2000	건조문어	11.28	10.82	5.23	-31.92
0307-99-1130	바지락(냉동)	4.40	8.75	3.85	-6.45
0306-13-1000	새우살(냉동)	2.42	3.26	3.21	15.08
0304-90-9000	기타연육(냉동)	2.23	1.71	2.75	11.10
0303-79-9096	가오리	1.89	1.55	2.45	13.99
1604-16-9000	기타멸치(조제 또는 저장처리)	5.03	7.69	2.43	-30.58
0306-23-3000	새우, 보리새우(염장, 염수장)	2.41	2.70	2.24	-3.56
0307-59-1020	낙지(냉동)	1.59	1.87	2.02	12.74
0305-59-9000	기타건조한어류(훈제제외)	0.34	0.48	1.85	134.21
0307-99-3930	해파리(염장, 염수장)	0.50	1.55	1.66	82.73
1605-20-9090	새우, 보리새우 (기타조제, 저장처리한 것)	1.11	0.91	1.46	14.59
1604-14-9000	다랑어, 가다랑이 (조제, 저장처리한 것)	0.77	0.92	1.23	26.06
0303-79-4010	옥돔	1.14	0.12	1.14	0.12

<표 A2-1> 베트남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4-20-9000	기타어류의 피레트(냉동)	1.40	0.66	1.00	-15.20
0306-14-3000	꽃게	1.39	1.24	0.95	-17.35
1605-90-9090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	1.26	0.94	0.91	-15.14
0306-14-9000	기타게(냉동)	1.18	0.46	0.87	-14.00
1604-19-9090	기타어류(조제 또는 저장처리)	1.85	1.84	0.84	-32.73
0306-13-9000	기타냉동한 새우와 보리새우	0.94	0.63	0.79	-8.15
0303-79-3000	갈치(냉동한 것)	0.26	0.64	0.77	71.97
0307-49-1020	냉동오징어	0.62	0.95	0.76	10.65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0.17	0.20	0.70	102.60
1603-00-3000	어류의 엑스	0.71	0.67	0.67	-3.01
0307-99-3120	바지락(염장 또는 염수장)	9.83	5.63	0.46	-78.48
0303-79-4090	기타(옥돔을 제외한 것)	0.40	0.83	0.44	5.07
0307-91-1500	피조개(산 것, 신선, 냉장)	0.10	0.13	0.26	62.28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상어	0.11	0.10	0.24	51.20
0307-41-1000	갑오징어	0.52	0.07	0.19	-40.31
1603-00-4000	어류의 즙	0.10	0.00	0.09	-4.64
0303-79-6000	조기	0.03	0.04	0.05	30.18
0306-23-1000	새우와 보리새우 (산 것, 신선 또는 냉장)	0.15	0.04	0.04	-51.09
0303-79-9099	아귀, 먹장어 등을 제외한 냉동어류	0.07	0.01	0.03	-32.86
0307-29-1000	가리비과의 조개(냉동)	0.01	0.09	0.03	54.57
1605-90-9020	해삼	0.06	0.01	0.02	-44.17
0306-23-2000	새우, 보리새우(건조)	0.04	0.01	0.02	-35.47
0306-24-1090	꽃게 제외한 기타 게 (산 것. 신선, 냉장)	0.00	0.01	0.01	775.14
0306-19-0000	기타냉동한 갑각류 (분, 조분 및 펠리트 포함)	0.36	0.08	0.01	-82.95
0302-69-3000	갈치	0.09	0.08	0.01	-67.34

<표 A2-2> 베트남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중심)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6-24-1090	꽃게 제외한 기타 게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00	0.01	0.01	775.14
0305-59-9000	기타건조한어류(훈제제외)	0.34	0.48	1.85	134.21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0.17	0.20	0.70	102.60
0307-99-3930	해파리(염장, 염수장)	0.50	1.55	1.66	82.73
0303-79-3000	갈치(냉동한 것)	0.26	0.64	0.77	71.97
0307-91-1500	피조개(산 것,신선,냉장)	0.10	0.13	0.26	62.28
0307-29-1000	가리비과의 조개(냉동한 것)	0.01	0.09	0.03	54.57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상어	0.11	0.10	0.24	51.20
0307-99-1150	피조개(냉동)	5.47	9.98	12.23	49.52
0303-79-6000	조기	0.03	0.04	0.05	30.18
1604-14-9000	다랑어, 가다랑이 (조제, 저장처리한 것)	0.77	0.92	1.23	26.06
0306-13-1000	새우살(냉동)	2.42	3.26	3.21	15.08
1605-20-9090	새우, 보리새우 (기타조제, 저장처리한 것)	1.11	0.91	1.46	14.59
0304-90-1090	기타활어	4.02	4.84	5.25	14.21
0303-79-9096	가오리	1.89	1.55	2.45	13.99
0307-59-1020	닥지(냉동)	1.59	1.87	2.02	12.74
0304-90-9000	기타연육(냉동)	2.23	1.71	2.75	11.10
0307-49-1020	냉동오징어	0.62	0.95	0.76	10.65
0303-79-4090	기타(옥돔을 제외한 것)	0.40	0.83	0.44	5.07
0307-49-3000	갑오징어, 오징어(건조한 것)	12.94	13.44	13.66	2.71
1605-20-9010	새우, 보리새우(훈제한 것으로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5.48	15.10	15.76	0.89
1604-19-9010	쥐치포(조제 또는 저장처리)	15.17	14.51	15.27	0.34
0303-79-4010	옥돔	1.14	0.12	1.14	0.12
0307-59-1030	쭈꾸미	13.63	12.91	13.65	0.10
1603-00-3000	어류의 엑스	0.71	0.67	0.67	-3.01

<표 A2-2> 베트남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6-23-3000	새우, 보리새우(염장, 염수장)	2.41	2.70	2.24	-3.56
0307-49-1010	갑오징어	8.52	8.25	7.89	-3.74
1603-00-4000	어류의 즙	0.10	0.00	0.09	-4.64
0307-99-1130	바지락(냉동)	4.40	8.75	3.85	-6.45
0306-13-9000	기타 냉동한 새우와 보리새우	0.94	0.63	0.79	-8.15
1605-90-1030	바지락	15.02	8.79	12.41	-9.09
0306-14-9000	기타	1.18	0.46	0.87	-14.00
1605-90-9090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	1.26	0.94	0.91	-15.14
0304-20-9000	기타어류의 피레트(냉동)	1.40	0.66	1.00	-15.20
0306-14-3000	꽃게	1.39	1.24	0.95	-17.35
0307-99-3190	기타연체동물(염장, 염수장)	9.89	14.03	5.39	-26.19
1604-16-9000	기타멸치(조제 또는 저장처리)	5.03	7.69	2.43	-30.58
0305-59-2000	건조문어	11.28	10.82	5.23	-31.92
1604-19-9090	기타어류(조제 또는 저장처리)	1.85	1.84	0.84	-32.73
0303-79-9099	기타(아귀, 먹장어 등을 제외한 냉동어류)	0.07	0.01	0.03	-32.86
0306-23-2000	새우, 보리새우(건조한 것)	0.04	0.01	0.02	-35.47
0307-41-1000	갑오징어	0.52	0.07	0.19	-40.31
1605-90-9020	해삼	0.06	0.01	0.02	-44.17
0306-23-1000	새우, 보리새우 (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0.15	0.04	0.04	-51.09
0302-69-3000	갈치	0.09	0.08	0.01	-67.34
0307-99-3120	바지락(염장 또는 염수장)	9.83	5.63	0.46	-78.48
0306-19-0000	기타냉동한 갑각류 (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0.36	0.08	0.01	-82.95

<표 A2-3> 태국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중심)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1604-14-1019	기타다랑어	22.14	20.42	20.02	-4.91
1605-20-9020	새우와 보리새우(브레드)	20.79	18.62	19.19	-3.93
1604-14-1011	다랑어(기름 담근 것)	4.86	17.39	17.70	90.83
1603-00-4000	어류의 즙	9.82	16.57	15.27	24.70
1605-10-1010	게살(밀폐용기에 넣은 것)	19.64	18.39	14.62	-13.72
1604-13-1000	정어리(밀폐용기에 넣은 것)	11.90	11.81	13.78	7.63
1603-00-3000	어류의 엑스	9.50	11.10	13.17	17.78
0306-23-1000	새우와 보리새우 (산 것/신선, 냉장)	1.25	5.72	12.08	210.74
0307-99-3930	해파리(염장,염수장)	13.54	12.57	11.18	-9.11
0306-13-9000	기타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1.17	11.46	10.23	-4.29
1605-20-9090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15.71	13.95	10.13	-19.70
1604-20-4090	생선묵(기타)	7.01	8.65	9.13	14.08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4.13	6.70	6.64	26.84
1604-19-10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어류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8	0.67	4.35	622.00
1604-16-9000	멸치(통조림외조제품)	4.31	1.51	3.87	-5.29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6.45	4.57	3.83	-22.98
0301-10-2000	열대어(관상어/활어)	3.37	2.96	3.33	-0.59
0307-59-1010	문어(냉동)	0.04	0.00	2.99	817.63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1.20	3.02	3.78	77.62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4.82	4.28	3.60	-13.57
0511-91-1010	부화용알(브라인슈림프알)	2.65	3.43	2.75	1.76
0307-49-3000	오징어(건조)	3.24	1.44	2.17	-18.16
1604-20-9000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3.76	4.23	2.06	-26.09
0305-59-2000	멸치(건조)	2.02	0.61	1.96	-1.57
1604-15-1000	고등어(밀폐용기에 넣은 것)	12.12	15.02	1.56	-64.13
0304-20-9000	기타어류 피레트(냉동)	3.07	2.45	1.49	-30.34
0303-50-0000	청어(냉동)	0.09	0.29	0.73	192.87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0.31	0.38	0.61	40.11

<표 A2-3> 태국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1504-20-000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 (간유제외)	0.49	0.24	0.60	10.87
0303-79-9096	가오리(냉동)	0.37	0.87	0.59	25.34
0307-59-1030	쭈꾸미(냉동)	0.23	0.26	0.44	39.28
0307-49-1020	오징어(냉동)	0.14	0.54	0.39	69.94
0307-59-1020	낙지(냉동)	0.28	0.33	0.35	12.66
0306-11-0000	닭새우류(냉동)	0.01	0.66	0.33	376.61
2301-20-9000	어류외기타 분 조분 및 펠리트	0.80	2.27	0.18	-52.99
0306-14-9000	기타게(냉동)	0.02	0.08	0.17	184.56
0307-99-1140	개아지살(냉동)	0.41	0.34	0.16	-37.07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0.35	0.21	0.06	-58.46
0305-59-9000	기타어류(건조)	0.40	0.05	0.02	-76.46
1604-19-9090	기타어류(통조림외조제품)	0.05	0.01	0.02	-38.71
0303-74-0000	고등어(냉동)	0.00	0.01	0.01	48.21
0301-99-9099	기타어류(활어)	0.06	0.01	0.01	-65.93

<표 A2-4> 태국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중심)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7-59-1010	문어(냉동)	0.04	0.00	2.99	817.63
1604-19-10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어류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8	0.67	4.35	622.00
0306-11-0000	닭새우류(냉동)	0.01	0.66	0.33	376.61
0306-23-1000	새우와보리새우(산것/신선, 냉장)	1.25	5.72	12.08	210.74
0303-50-0000	청어(냉동)	0.09	0.29	0.73	192.87
0306-14-9000	기타게(냉동)	0.02	0.08	0.17	184.56
1604-14-1011	다랑어(기름담근 것)	4.86	17.39	17.70	90.83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1.20	3.02	3.78	77.62
0307-49-1020	오징어(냉동)	0.14	0.54	0.39	69.94
0303-74-0000	고등어(냉동)	0.00	0.01	0.01	48.21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0.31	0.38	0.61	40.11
0307-59-1030	쭈꾸미(냉동)	0.23	0.26	0.44	39.28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4.13	6.70	6.64	26.84
0303-79-9096	가오리(냉동)	0.37	0.87	0.59	25.34
1603-00-4000	어류의 즙	9.82	16.57	15.27	24.70
1603-00-3000	어류의 엑스	9.50	11.10	13.17	17.78
1604-20-4090	생선묵(기타)	7.01	8.65	9.13	14.08
0307-59-1020	낙지(냉동)	0.28	0.33	0.35	12.66
1504-20-000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제외)	0.49	0.24	0.60	10.87
1604-13-1000	정어리(밀폐용기에 넣은 것)	11.90	11.81	13.78	7.63
0511-91-1010	부화용알(브라인슈림프알)	2.65	3.43	2.75	1.76
0301-10-2000	열대어(관상어/활어)	3.37	2.96	3.33	-0.59
0305-59-2000	멸치(건조)	2.02	0.61	1.96	-1.57
1605-20-9020	새우와 보리새우(브레드)	20.79	18.62	19.19	-3.93
0306-13-9000	기타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1.17	11.46	10.23	-4.29
1604-14-1019	기타다랑어	22.14	20.42	20.02	-4.91
1604-16-9000	멸치(통조림외조제품)	4.31	1.51	3.87	-5.29

<표 A2-4> 태국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7--99-3930	해파리(염장, 염수장)	13.54	12.57	11.18	-9.11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4.82	4.28	3.60	-13.57
1605-10-1010	게살(밀폐용기에 넣은 것)	19.64	18.39	14.62	-13.72
0307-49-3000	오징어(건조)	3.24	1.44	2.17	-18.16
1605-20-9090	새우와보리새우(기타)	15.71	13.95	10.13	-19.70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6.45	4.57	3.83	-22.98
1604-20-9000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3.76	4.23	2.06	-26.09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3.07	2.45	1.49	-30.34
0307-99-1140	개아지살(냉동)	0.41	0.34	0.16	-37.07
1604-19-9090	기타어류(통조림외조제품)	0.05	0.01	0.02	-38.71
2301-20-9000	어류외기타 분, 조분 및 펠리트	0.80	2.27	0.18	-52.99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이외)	0.35	0.21	0.06	-58.46
1604-15-1000	고등어(밀폐용기에 넣은 것)	12.12	15.02	1.56	-64.13
0301-99-9099	기타어류(활어)	0.06	0.01	0.01	-65.93
0305-59-9000	기타어류(건조)	0.40	0.05	0.02	-76.46

<표 A2-5> 인도네시아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중심)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1504-10-1000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상어의 간유)	72.00	67.71	73.98	1.36
0302-34-0000	눈다랑어(신선, 냉장)	60.09	63.71	66.69	5.35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38.82	46.67	65.70	30.09
0305-49-9000	기타어류(훈제)	61.60	61.33	57.04	-3.77
0303-79-7000	전갱이(냉동)	54.91	41.23	50.13	-4.46
0302-32-0000	황다랑어(신선, 냉장)	3.98	39.66	31.66	181.88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19.32	18.06	21.28	4.97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7.09	0.03	20.22	68.83
0307-99-3920	해삼(염장, 염수장)	11.10	0.45	18.87	30.38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55.83	27.12	10.55	-56.54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14.42	11.15	9.86	-17.33
0307-99-3930	해파리(염장, 염수장)	7.63	3.58	9.82	13.44
1212-20-9019	코토니 및 스피노잠(냉동이외기타)	2.18	12.36	9.76	111.51
0303-79-3000	갈치(냉동)	6.10	7.00	6.29	1.58
0301-10-9000	활어(금잉어, 열대어이외 기타/관상용/활어)	4.26	2.97	6.02	18.81
0307-49-1020	오징어(냉동)	7.80	9.77	5.45	-16.47
0307-59-1010	문어(냉동)	0.64	1.48	5.24	187.14
0306-13-9000	기타새우와 보리새우(냉동)	3.61	3.06	4.51	11.76
0307-91-9090	기타수생동물	1.31	5.18	4.10	77.12
0306-23-1000	새우와 보리새우(산 것/신선, 냉장)	6.61	6.34	3.61	-26.10
0306-29-1000	기타갑각류(산 것, 신선, 냉동)	0.49	0.72	2.41	120.91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1.27	0.81	1.56	10.89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1.67	2.71	1.15	-17.24
0303-79-9095	민어(냉동)	1.19	1.01	0.96	-10.17
0305-59-1000	상어지느러미(건조)	0.50	0.66	0.82	27.55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1.11	0.34	0.78	-16.25

<표 A2-5> 인도네시아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1604-19-9090	기타어류(통조림외조제품)	0.51	0.14	0.54	2.67
0307-59-1030	쭈꾸미(냉동)	0.00	0.33	0.49	1040.09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 염수장)	0.34	0.22	0.32	-2.26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0.81	0.25	0.31	-37.95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43	0.57	0.30	-54.21
0306-11-0000	닭새우류(냉동)	0.03	0.75	0.29	212.20
1605-10-1090	기타게살(통조림, 훈제 제외)	0.03	0.70	0.23	204.70
0306-24-1090	기타게(산 것, 신선, 냉동)	0.00	0.53	0.19	680.16
0303-79-9096	가오리(냉동)	2.61	0.20	0.17	-74.15
0303-79-4090	기타돔(냉동)	1.30	0.05	0.11	-70.54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상어(냉동)	0.12	0.00	0.11	-3.72
1605-20-9090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0.44	0.15	0.09	-55.62
0306-14-3000	꽃게(냉동)	0.14	0.17	0.06	-32.62
0306-23-2000	새우와 보리새우(건조)	0.67	0.16	0.06	-70.15
0302-69-3000	갈치(신선, 냉장)	0.26	0.00	0.03	-64.83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냉동)	0.00	0.14	0.03	503.72
0306-14-9000	기타게(냉동)	0.04	0.06	0.02	-31.59
0306-22-00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냉동 제외)	0.00	0.00	0.01	385.25
0303-39-0000	기타넙치류(냉동)	0.01	0.01	0.00	-50.18
1302-31-2000	분한천	0.03	0.09	0.00	-66.44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0.71	0.23	0.00	-94.10
0301-99-9099	기타어류(활어)	0.00	0.00	0.00	106.88

<표 A2-6> 인도네시아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중심)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7-59-1030	쭈꾸미(냉동)	0.00	0.33	0.49	1040.09
0306-24-1090	기타게(산것,신선,냉동)	0.00	0.53	0.19	680.16
0302-69-3000	갈치(신선,냉장)	0.00	0.14	0.03	503.72
0306-22-00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냉동제외)	0.00	0.00	0.01	385.25
0306-11-0000	닭새우류(냉동)	0.03	0.75	0.29	212.20
1605-10-1090	기타게살(통조림,훈제외)	0.03	0.70	0.23	204.70
0307-59-1010	문어(냉동)	0.64	1.48	5.24	187.14
0302-32-0000	황다랑어(신선,냉장)	3.98	39.66	31.66	181.88
0306-29-1000	기타갑각류(산것,신선,냉동)	0.49	0.72	2.41	120.91
1212-20-9019	코토니 및 스피노잠 (냉동이외기타)	2.18	12.36	9.76	111.51
0303-39-0000	타넙치류(냉동)	0.00	0.00	0.00	106.88
0307-91-9090	기타수생동물	1.31	5.18	4.10	77.12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7.09	0.03	20.22	68.83
0307-99-3920	해삼(염장,염수장)	11.10	0.45	18.87	30.38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38.82	46.67	65.70	30.09
0305-59-1000	상어지느러미(건조)	0.50	0.66	0.82	27.55
0301-10-9000	활어(금잉어,열대어이외 기타/관상용/활어)	4.26	2.97	6.02	18.81
0307-99-3930	해파리(염장,염수장)	7.63	3.58	9.82	13.44
0306-13-9000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3.61	3.06	4.51	11.76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1.27	0.81	1.56	10.89
0302-34-0000	눈다랑어(신선,냉장)	60.09	63.71	66.69	5.35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19.32	18.06	21.28	4.97
1604-19-9090	기타어류(통조림외조제품)	0.51	0.14	0.54	2.67
0303-79-3000	갈치(냉동)	6.10	7.00	6.29	1.58
1504-10-1000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상어의간유)	72.00	67.71	73.98	1.36
0306-23-3000	새우와보리새우(염장,염수장)	0.34	0.22	0.32	-2.26

<표 A2-6> 인도네시아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3-79-4090	기타돔(냉동)	0.12	0.00	0.11	-3.72
0305-49-9000	기타어류(훈제)	61.60	61.33	57.04	-3.77
0303-79-7000	전갱이(냉동)	54.91	41.23	50.13	-4.46
0303-79-9095	민어(냉동)	1.19	1.01	0.96	-10.17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1.11	0.34	0.78	-16.25
0307-49-1020	오징어(냉동)	7.80	9.77	5.45	-16.47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1.67	2.71	1.15	-17.24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14.42	11.15	9.86	-17.33
0306-23-1000	새우와보리새우 (산것/신선,냉장)	6.61	6.34	3.61	-26.10
0306-14-9000	기타게(냉동)	0.04	0.06	0.02	-31.59
0306-14-3000	꽃게(냉동)	0.14	0.17	0.06	-32.62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이외)	0.81	0.25	0.31	-37.95
1302-31-2000	분한천	0.01	0.01	0.00	-50.18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1.43	0.57	0.30	-54.21
1605-20-9090	새우와보리새우(기타)	0.44	0.15	0.09	-55.62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	55.83	27.12	10.55	-56.54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냉동)	0.26	0.00	0.03	-64.83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0.03	0.09	0.00	-66.44
0306-23-2000	새우와보리새우(건조)	0.67	0.16	0.06	-70.15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상어(냉동)	1.30	0.05	0.11	-70.54
0303-79-9096	가오리(냉동)	2.61	0.20	0.17	-74.15
0301-99-9099	기타어류(활어)	0.71	0.23	0.00	-94.10

<표 A2-7> 필리핀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중심)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509-00-0000	동물성의 해면	54.34	24.47	80.48	21.70
0301-99-9030	틸라피아(활어)	97.04	73.25	80.48	-8.93
1212--20-9019	코토니 및 스피노잠 (냉동이외기타)	81.23	55.48	60.41	-13.76
1605-90-1091	전복(밀폐용기에 넣은 것)	19.16	14.27	53.98	67.84
0302-32-0000	황다랑어(신선, 냉장)	86.96	33.44	45.35	-27.78
0305-42-0000	청어(훈제)	10.82	21.67	26.85	57.55
0306-23-1000	새우와보리새우(산 것/신선, 냉장)	66.31	38.98	25.28	-38.25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34.76	18.01	22.61	-19.35
1604-13-1000	정어리(밀폐용기에 넣은 것)	14.42	29.13	19.89	17.44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45.39	22.92	10.93	-50.92
0306-13-9000	기타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88	7.66	8.23	-3.72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7.30	3.86	7.41	0.72
0303-79-7000	전갱이(냉동)	8.57	2.90	5.31	-21.26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0.35	0.79	2.30	154.87
1604-19-9090	기타어류(통조림외조제품)	4.96	4.91	2.25	-32.72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4.33	2.47	1.98	-32.46
0301-10-9000	활어(금잉어, 열대어이외 기타/관상용/활어)	3.41	2.40	1.47	-34.42
2104-10-2000	어류의 수우프, 브로드와 제조용조제품	0.50	0.22	0.92	36.28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1.67	0.47	0.78	-31.68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0.91	0.13	0.75	-8.88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0.25	0.14	0.60	54.77
0305-49-9000	기타어류(훈제)	0.28	0.01	0.22	-11.93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0.26	0.02	0.18	-16.71
0306-24-1090	기타게(산 것/신선, 냉장)	0.04	0.08	0.11	70.33

<표 A2-7> 필리핀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6-14-3000	꽃게(냉동)	0.46	0.36	0.08	-57.44
0305-59-9000	기타어류(건조)	0.02	0.03	0.04	28.97
0306-14-9000	기타게(냉동)	0.05	0.00	0.03	-15.80
0307-99-1140	개아지살(냉동)	0.01	0.75	0.03	100.42
0306-11-0000	닭새우류(냉동)	0.17	0.17	0.03	-58.30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0.71	0.13	0.03	-80.88
0307-49-1020	오징어(냉동)	0.46	0.01	0.01	-87.66
0301-92-9000	뱀장어기타(앵귈라종(활어))	0.01	0.01	0.00	-47.99
0302-69-9090	기타어류(신선, 냉장)	0.07	0.00	0.00	-81.43
0307-91-1200	전복(산것/신선,냉장)	21.60	1.36	0.00	-99.18
0307-99-2920	해삼(건조)	0.00	0.01	0.00	-53.63

<표 A2-8> 필리핀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중심)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0.35	0.79	2.30	154.87
0306-14-9000	기타게(냉동)	0.01	0.75	0.03	100.42
0306-24-1090	기타게(산것/신선, 냉장)	0.04	0.08	0.11	70.33
1605-90-1091	전복(밀폐용기에 넣은 것)	19.16	14.27	53.98	67.84
0305-42-0000	청어(훈제)	10.82	21.67	26.85	57.55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0.25	0.14	0.60	54.77
2104-10-2000	어류의 수우프, 브로드와 제조용조제품	0.50	0.22	0.92	36.28
0305-59-9000	기타어류(건조)	0.02	0.03	0.04	28.97
0509-00-0000	동물성의 해면	54.34	24.47	80.48	21.70
1604-13-1000	정어리(밀폐용기에 넣은 것)	14.42	29.13	19.89	17.44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7.30	3.86	7.41	0.72
0306-13-9000	기타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88	7.66	8.23	-3.72
1605-90-1099	틸라피아(활어)	0.91	0.13	0.75	-8.88
0301-99-903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97.04	73.25	80.48	-8.93
0305-49-9000	기타어류(훈제)	0.28	0.01	0.22	-11.93
1212--20-9019	코토니 및 스피노잠 (냉동이외기타)	81.23	55.48	60.41	-13.76
0307-99-1140	개아지살(냉동)	0.05	0.00	0.03	-15.80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0.26	0.02	0.18	-16.71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34.76	18.01	22.61	-19.35
0303-79-7000	전갱이(냉동)	8.57	2.90	5.31	-21.26
0302-32-0000	황다랑어(진전, 냉장)	86.96	33.44	45.35	-27.78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1.67	0.47	0.78	-31.68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4.33	2.47	1.98	-32.46

<표 3-35> 필리핀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1604-19-9090	기타어류(통조림외조제품)	4.96	4.91	2.25	-32.72
0301-10-9000	활어(금잉어, 열대어이외 기타/관상용/활어)	3.41	2.40	1.47	-34.42
0306-23-1000	새우와 보리새우 (산 것/신선, 냉장)	66.31	38.98	25.28	-38.25
0301-92-9000	뱀장어기타(앵귈라종(활어))	0.01	0.01	0.00	-47.99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45.39	22.92	10.93	-50.92
0302-69-9090	기타어류(신선, 냉장)	0.00	0.01	0.00	-53.63
0306-14-3000	꽃게(냉동)	0.46	0.36	0.08	-57.44
0306-11-0000	닭새우류(냉동)	0.17	0.17	0.03	-58.30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71	0.13	0.03	-80.88
0307-91-1200	전복(산것/신선, 냉장)	0.07	0.00	0.00	-81.43
0307-49-1020	오징어(냉동)	0.46	0.01	0.01	-87.66
0307-99-2920	해삼(건조)	21.60	1.36	0.00	-99.18

<표 A2-9> 말레이시아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중심)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15.41	14.07	15.82	1.31
0307-99-3930	해파리(염장, 염수장)	19.92	16.01	14.28	-15.34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2.52	9.74	7.02	66.80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5.62	4.45	6.98	11.45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55	1.09	5.43	87.45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3.49	9.74	5.36	23.94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1.00	2.30	4.63	115.49
0306-13-9000	기타새우와 보리새우(냉동)	4.99	4.06	4.07	-9.71
0307-59-1030	쭈꾸미(냉동)	3.22	3.41	3.95	10.78
0303-79-7000	전갱이(냉동)	4.01	4.61	3.94	-0.92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20.05	3.99	3.75	-56.75
0307-59-1020	낙지(냉동)	0.55	0.91	0.45	-9.38
0303-79-9096	가오리(냉동)	0.02	0.05	0.32	297.66
0306-14-3000	꽃게(냉동)	0.13	0.14	0.16	11.57
0303-74-0000	고등어(냉동)	0.02	0.05	0.09	97.85
0303-79-9095	민어(냉동)	0.02	0.07	0.03	7.16

<표 A2-10> 말레이시아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중심)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3-79-9096	가오리(냉동)	0.02	0.05	0.32	297.66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것이외)	1.00	2.30	4.63	115.49
0303-74-0000	고등어(냉동)	0.02	0.05	0.09	97.85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1.55	1.09	5.43	87.45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2.52	9.74	7.02	66.80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3.49	9.74	5.36	23.94
0306-14-3000	꽃게(냉동)	0.13	0.14	0.16	11.57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5.62	4.45	6.98	11.45
0307-59-1030	쭈꾸미(냉동)	3.22	3.41	3.95	10.78
0303-79-9095	민어(냉동)	0.02	0.07	0.03	7.16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15.41	14.07	15.82	1.31
0303-79-7000	전갱이(냉동)	4.01	4.61	3.94	-0.92
0307-59-1020	낙지(냉동)	0.55	0.91	0.45	-9.38
0306-13-9000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4.99	4.06	4.07	-9.71
0307-99-3930	해파리(염장,염수장)	19.92	16.01	14.28	-15.34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20.05	3.99	3.75	-56.75

<표 A2-11> 아세안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중심)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509-00-0000	동물성의 해면	4.09	2.23	6.92	30.11
0305-69-5000	고등어(염장,염수장)	5.16	6.68	6.92	15.80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6.83	6.68	6.92	0.65
0301-99-9030	틸라피아(활어)	7.30	6.68	6.92	-2.64
1605-20-9010	새우와 보리새우(훈제)	7.30	6.68	6.92	-2.64
1212--20-9019	코토니 및 스피노잠 (냉동이외기타)	6.35	6.63	6.87	4.04
1604-14-1011	다랑어(기름담근 것 (밀폐용기에넣은것))	1.60	5.67	6.79	106.31
1604-14-1019	다랑어(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7.27	6.66	6.78	-3.45
0307-49-3000	오징어(건조)	7.18	6.42	6.74	-3.08
1604-19-9010	쥐치포(밀폐용기에넣은것)	7.16	6.43	6.74	-2.95
0302-32-0000	황다랑어(신선,냉장)	6.90	6.65	6.71	-1.33
1504-10-1000	어류의간유, 분획물(상어의 간유)	6.34	6.15	6.57	1.80
0306-23-1000	새우와 보리새우 (산 것/신선, 냉장)	6.09	6.02	6.45	2.95
1605-10-1010	게살(밀폐용기에 넣은 것)	6.45	5.99	6.31	-1.11
0307-59-1030	쭈꾸미(냉동)	6.51	5.90	6.29	-1.64
1605-20-9020	새우와 보리새우(브레드)	6.86	6.07	6.28	-4.30
1604-13-1000	정어리(밀폐용기에 넣은 것)	4.99	6.51	6.21	11.48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5.65	6.23	6.01	3.18
0305-49-1000	멸치(훈제)	4.53	0.80	6.01	15.15
0302-34-0000	눈다랑어(신선, 냉장)	6.00	5.86	5.92	-0.68
0307-99-3930	해파리(염장, 염수장)	5.35	5.45	5.63	2.59
1605-90-1030	바지락(밀폐용기에 넣은 것)	7.09	4.23	5.45	-12.27
0307-99-1150	피조개(냉동)	2.58	4.42	5.38	44.29
0305-49-9000	기타어류(훈제)	5.66	5.64	5.09	-5.26
1603-00-4000	어류의 즙	3.27	5.40	5.07	24.46
0306-13-9000	기타새우와 보리새우(냉동)	5.12	5.11	5.05	-0.68
0303-79-7000	전갱어(냉동)	5.49	4.11	5.02	-4.44
1605-90-1091	전복(밀폐용기에 넣은 것)	1.44	6.19	4.64	79.44

<표 A2-11> 아세안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1603-00-3000	어류의 엑스	3.45	3.91	4.60	15.42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4.78	4.20	4.34	-4.71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4.36	3.66	4.05	-3.60
1605-20-9090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5.72	4.99	3.98	-16.57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3.48	3.84	3.95	6.50
1604--11-1000	연어(밀폐용기에 넣은 것)	0.64	4.89	3.76	142.02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4.56	4.64	3.51	-12.18
0305-41-0000	태평양연어(훈제)	0.37	3.07	3.51	208.42
0306-13-1000	새우살(냉동)	3.44	3.12	3.16	-4.26
0304-90-9000	기타어육(냉동)	5.15	5.34	2.99	-23.81
1604-20-4090	생선묵(기타)	2.33	2.82	2.98	12.91
0307-99-3190	기타(염장, 염수장)	4.67	6.21	2.97	-20.25
0305-59-2000	멸치(건조)	5.99	4.99	2.94	-29.96
1604-16-9000	멸치(통조림외조제품)	3.79	3.90	2.41	-20.26
0305-42-0000	청어(훈제)	0.81	1.98	2.31	68.43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5.38	3.46	2.24	-35.53
1604-11-9000	연어(통조림외조제품)	3.94	4.27	2.18	-25.66
0307-99-1130	바지락(냉동)	2.11	3.87	1.69	-10.36
0307-99-3920	해삼(염장, 염수장)	0.98	0.04	1.68	30.94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2.56	1.74	1.64	-20.05
0307-59-1010	문어(냉동)	0.09	0.19	1.45	293.53
1604-19-1090	기타어류(밀폐용기에 넣은 것)	0.47	0.41	1.44	75.44
1605-90-2090	기타연체동물(훈제)	0.04	0.32	1.43	484.36
0303-79-9096	가오리(냉동)	1.24	1.00	1.29	2.04
0303-79-3000	갈치(냉동)	0.66	0.94	1.08	27.71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0.77	0.47	1.04	16.17
0307-59-1020	낙지(냉동)	0.84	0.96	1.04	11.11
0306-23-3000	새우와보리새우(염장, 염수장)	1.16	1.27	1.02	-6.62
0307-49-1020	오징어(냉동)	1.06	1.67	0.95	-5.47

<표 A2-11> 아세안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3-44-0000	눈다랑어(냉동)	2.32	0.02	0.93	-36.51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상어(냉동)	1.25	0.67	0.93	-13.64
0511-91-1010	부화용 알(브라인 슈림프알)	0.87	1.12	0.90	1.41
0301--10-9000	활어(금잉어, 열대어이외 기타/관사용/활어)	1.19	0.68	0.88	-13.79
0305-59-9000	기타어류(건조)	0.29	0.23	0.88	73.32
1604-19-9090	기타어류(밀폐용기에 넣은 것)	1.39	1.39	0.76	-26.29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1.04	0.78	0.74	-15.46
0303-50-0000	청어(냉동)	0.03	0.54	0.74	412.15
0306-29-1000	기타갑각류(산 것/ 신선, 냉장)	0.04	0.42	0.72	308.00
1604-14-9000	다랑어,가다랑어,대서양버니토우 (기타조제)	0.36	0.51	0.71	39.10
1604-20-9000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1.37	1.40	0.69	-29.03
0307-99-1990	기타수생동물 (해삼, 우렁쉐이 이외 기타/냉동)	0.22	1.39	0.62	66.39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0.11	0.18	0.60	132.81
0306-14-3000	꽃게(냉동)	0.70	0.70	0.52	-13.79
1604-15-1000	고등어(밀폐용기에 넣은 것)	4.35	4.90	0.51	-65.81
0303-79-4010	옥돔(냉동)	0.54	0.05	0.50	-3.38
0306-14-9000	기타게(냉동)	0.57	0.32	0.50	-6.16
0306-14-1000	게살(냉동)	2.44	1.10	0.42	-58.79
0307-91-9090	기타수생동물	0.12	0.55	0.38	78.33
0306-12-0000	바다가재(냉동)	0.03	0.00	0.30	212.44
0306-19-0000	기타갑각류(냉동)	0.17	0.38	0.29	30.20
0303-39-0000	기타넙치류(냉동)	0.00	0.03	0.27	9038.84
0303-79-4090	기타돔(냉동)	0.20	0.37	0.25	12.70
0307-99-3120	바지락(염장,염수장)	4.64	2.49	0.20	-79.23
1504-20-000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 (간유제외)	0.16	0.09	0.19	10.48
2301-20-9000	어류와기타 분,조분 및 펠리트	0.76	0.74	0.19	-50.44

<표 A2-11> 아세안산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1605-10-1090	기타게살(통조림, 훈제 제외)	2.45	0.38	0.18	-72.61
0306-11-0000	닭새우류(냉동)	0.02	0.30	0.16	166.37
0303-79-9095	민어(냉동)	0.11	0.11	0.15	20.32
1605-90-1080	오징어(밀폐용기에 넣은 것)	0.64	0.03	0.14	-53.15
0307-91-1500	피조개(산 것/신선, 냉장)	0.05	0.06	0.11	56.61
1302-31-2000	분한천	0.00	0.19	0.10	808.80
2104-10-2000	어류의수우프, 브로드와 제조용조제품	1.35	1.72	0.08	-75.04
0307-41-1000	갑오징어(산 것/신선, 냉장)	0.25	0.71	0.08	-42.40
0304-20-2000	붕장어피레트(냉동)	0.02	0.02	0.08	100.62
0305-59-1000	상어지느러미(건조)	0.75	0.16	0.07	-68.88
0306-24-1090	기타게(산 것/신선, 냉장)	0.00	0.08	0.06	323.50
0307-99-1140	개아지살(냉동)	0.17	0.11	0.06	-43.02
0307-29-1000	가리비과의 조개(냉동)	1.01	0.72	0.03	-82.80
0303--80-2090	어란(명란냉동 이외 기타/ 피레트, 어육제외)	0.00	0.00	0.02	364.06
0303-79-6000	조기(냉동)	0.01	0.02	0.02	25.64
0303-74-0000	고등어(냉동)	0.00	0.01	0.02	260.55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0.04	0.01	0.02	-38.74
0306-23-2000	새우와 보리새우(건조)	0.08	0.02	0.01	-58.68
0302-69-3000	갈치(신선, 냉장)	0.05	0.05	0.01	-55.10
0303-79-9010	삼치(냉동)	0.02	0.04	0.01	-34.79
0301-99-9099	기타어류(활어)	0.08	0.02	0.01	-70.25
0301-92-9000	뱀장어기타(앵귈라종(활어))	0.00	0.00	0.01	13.30
0307-51-0000	문어(산 것/신선, 냉장)	0.00	0.00	0.00	1233.78
0304-10-1090	기타어류피레트(신선, 냉장)	0.04	0.19	0.00	-71.37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냉동)	0.03	0.00	0.00	-71.34
0306-22-00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냉동제외))	0.00	0.00	0.00	391.71
0303-79-9093	홍어(냉동)	0.00	0.00	0.00	-44.91
0302-69-9090	기타어류(신선, 냉장)	0.00	0.00	0.00	-75.11
0307-91-1200	전복(산 것/신선, 냉장)	0.01	0.00	0.00	-80.14

<표 A2-12> 아세안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중심)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303-39-0000	기타넙치류(냉동)	0.00	0.03	0.27	9038.84
0307-51-0000	문어(산것/신선, 냉장)	0.00	0.00	0.00	1233.78
1302-31-2000	분한천	0.00	0.19	0.10	808.80
1605-90-2090	기타연체동물(훈제)	0.04	0.32	1.43	484.36
0303-50-0000	청어(냉동)	0.03	0.54	0.74	412.15
0306-22-00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냉동제외))	0.00	0.00	0.00	391.71
0303--80-2090	어란(명란냉동 이외 기타/ 피레트, 어육 제외)	0.00	0.00	0.02	364.06
0306-24-1090	기타게(산것/신선, 냉장)	0.00	0.08	0.06	323.50
0306-29-1000	기타갑각류(산것/신선, 냉장)	0.04	0.42	0.72	308.00
0307-59-1010	문어(냉동)	0.09	0.19	1.45	293.53
0303-74-0000	고등어(냉동)	0.00	0.01	0.02	260.55
0306-12-0000	바다가재(냉동)	0.03	0.00	0.30	212.44
0305-41-0000	태평양연어(훈제)	0.37	3.07	3.51	208.42
0306-11-0000	닭새우류(냉동)	0.02	0.30	0.16	166.37
1604--11-1000	연어(밀폐용기에 넣은 것)	0.64	4.89	3.76	142.02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0.11	0.18	0.60	132.81
1604-14-1011	다랑어(기름담근 것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	5.67	6.79	106.31
0304-20-2000	붕장어피레트(냉동)	0.02	0.02	0.08	100.62
1605-90-1091	전복(밀폐용기에 넣은 것)	1.44	6.19	4.64	79.44
0307-91-9090	기타수생동물	0.12	0.55	0.38	78.33
1604-19-1090	기타어류(밀폐용기에 넣은 것)	0.47	0.41	1.44	75.44
0305-59-9000	기타어류(건조)	0.29	0.23	0.88	73.32
0305-42-0000	청어(훈제)	0.81	1.98	2.31	68.43
0307-99-1990	기타수생동물 (해삼, 우렁쉐이 이외 기타/냉동)	0.22	1.39	0.62	66.39
0307-91-1500	피조개(산것/신선, 냉장)	0.05	0.06	0.11	56.61
0307-99-1150	피조개(냉동)	2.58	4.42	5.38	44.29

<표 A2-12> 아세안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1604-14-9000	다랑어,가다랑어, 대서양버니토우(기타조제)	0.36	0.51	0.71	39.10
0307-99-3920	해삼(염장, 염수장)	0.98	0.04	1.68	30.94
0306-19-0000	기타갑각류(냉동)	0.17	0.38	0.29	30.20
0509-00-0000	동물성의 해면	4.09	2.23	6.92	30.11
0303-79-3000	갈치(냉동)	0.66	0.94	1.08	27.71
0303-79-6000	조기(냉동)	0.01	0.02	0.02	25.64
1603-00-4000	어류의 즙	3.27	5.40	5.07	24.46
0303-79-9095	민어(냉동)	0.11	0.11	0.15	20.32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0.77	0.47	1.04	16.17
0305-69-5000	고등어(염장, 염수장)	5.16	6.68	6.92	15.80
1603-00-3000	어류의 엑스	3.45	3.91	4.60	15.42
0305-49-1000	멸치(훈제)	4.53	0.80	6.01	15.15
0301-92-9000	뱀장어기타(앵귈라종(활어))	0.00	0.00	0.01	13.30
1604-20-4090	생선묵(기타)	2.33	2.82	2.98	12.91
0303-79-4090	기타돔(냉동)	0.20	0.37	0.25	12.70
1604-13-1000	정어리(밀폐용기에 넣은 것)	4.99	6.51	6.21	11.48
0307-59-1020	낙지(냉동)	0.84	0.96	1.04	11.11
1504-20-000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 (간유제외)	0.16	0.09	0.19	10.48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3.48	3.84	3.95	6.50
1212--20-9019	코토니 및 스피노잠 (냉동이외기타)	6.35	6.63	6.87	4.04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5.65	6.23	6.01	3.18
0306-23-1000	새우와 보리새우 (산것/신선, 냉장)	6.09	6.02	6.45	2.95
0307-99-3930	해파리(염장, 염수장)	5.35	5.45	5.63	2.59
0303-79-9096	가오리(냉동)	1.24	1.00	1.29	2.04
1504-10-1000	어류의간유, 분획물 (상어의 간유)	6.34	6.15	6.57	1.80

<표 A2-12> 아세안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0511-91-1010	부화용 알(브라인 슈림프알)	0.87	1.12	0.90	1.41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6.83	6.68	6.92	0.65
0306-13-9000	기타새우와 보리새우(냉동)	5.12	5.11	5.05	-0.68
0302-34-0000	눈다랑어(신선, 냉장)	6.00	5.86	5.92	-0.68
1605-10-1010	게살(밀폐용기에 넣은 것)	6.45	5.99	6.31	-1.11
0302-32-0000	황다랑어(신선, 냉장)	6.90	6.65	6.71	-1.33
0307-59-1030	쭈꾸미(냉동)	6.51	5.90	6.29	-1.64
0301-99-9030	틸라피아(활어)	7.30	6.68	6.92	-2.64
1605-20-9010	새우와 보리새우(훈제)	7.30	6.68	6.92	-2.64
1604-19-9010	쥐치포(밀폐용기에 넣은 것)	7.16	6.43	6.74	-2.95
0307-49-3000	오징어(건조)	7.18	6.42	6.74	-3.08
0303-79-4010	옥돔(냉동)	0.54	0.05	0.50	-3.38
1604-14-1019	다랑어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7.27	6.66	6.78	-3.45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4.36	3.66	4.05	-3.60
0306-13-1000	새우살(냉동)	3.44	3.12	3.16	-4.26
1605-20-9020	새우와 보리새우(브레드)	6.86	6.07	6.28	-4.30
0303-79-7000	전갱이(냉동)	5.49	4.11	5.02	-4.44
0301-10-2000	열대어(관상용/활어)	4.78	4.20	4.34	-4.71
0305-49-9000	기타어류(훈제)	5.66	5.64	5.09	-5.26
0307-49-1020	오징어(냉동)	1.06	1.67	0.95	-5.47
0306-14-9000	기타게(냉동)	0.57	0.32	0.50	-6.16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 염수장)	1.16	1.27	1.02	-6.62
0307-99-1130	바지락(냉동)	2.11	3.87	1.69	-10.36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4.56	4.64	3.51	-12.18
1605-90-1030	바지락(밀폐용기에 넣은 것)	7.09	4.23	5.45	-12.27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상어(냉동)	1.25	0.67	0.93	-13.64
0306-14-3000	꽃게(냉동)	0.70	0.70	0.52	-13.79
0301-10-9000	활어(금앙어, 열대어이외 기타/관사용/활어)	1.19	0.68	0.88	-13.79

<표 A2-12> 아세안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1.04	0.78	0.74	-15.46
1605-20-9090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5.72	4.99	3.98	-16.57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2.56	1.74	1.64	-20.05
0307-99-3190	기타(염장, 염수장)	4.67	6.21	2.97	-20.25
1604-16-9000	멸치(통조림외조제품)	3.79	3.90	2.41	-20.26
0304-90-9000	기타어육(냉동)	5.15	5.34	2.99	-23.81
1604-11-9000	연어(통조림외조제품)	3.94	4.27	2.18	-25.66
1604-19-9090	기타어류(밀폐용기에 넣은 것)	1.39	1.39	0.76	-26.29
1604-20-9000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1.37	1.40	0.69	-29.03
0305-59-2000	멸치(건조)	5.99	4.99	2.94	-29.96
0303-79-9010	삼치(냉동)	0.02	0.04	0.01	-34.79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5.38	3.46	2.24	-35.53
0303-44-0000	눈다랑어(냉동)	2.32	0.02	0.93	-36.51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0.04	0.01	0.02	-38.74
0307-41-1000	갑오징어(산 것/신선, 냉장)	0.25	0.71	0.08	-42.40
0307-99-1140	개아지살(냉동)	0.17	0.11	0.06	-43.02
0303-79-9093	홍어(냉동)	0.00	0.00	0.00	-44.91
2301-20-9000	어류외기타 분, 조분 및 펠리트	0.76	0.74	0.19	-50.44
1605-90-1080	오징어(밀폐용기에 넣은 것)	0.64	0.03	0.14	-53.15
0302-69-3000	갈치(신선, 냉장)	0.05	0.05	0.01	-55.10
0306-23-2000	새우와 보리새우(건조)	0.08	0.02	0.01	-58.68
0306-14-1000	게살(냉동)	2.44	1.10	0.42	-58.79
1604-15-1000	고등어(밀폐용기에 넣은 것)	4.35	4.90	0.51	-65.81
0305-59-1000	상어지느러미(건조)	0.75	0.16	0.07	-68.88
0301-99-9099	기타어류(활어)	0.08	0.02	0.01	-70.25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냉동)	0.03	0.00	0.00	-71.34
0304-10-1090	기타어류피레트(신선, 냉장)	0.04	0.19	0.00	-71.37
1605-10-1090	기타게살(통조림,훈제 제외)	2.45	0.38	0.18	-72.61

<표 A2-12> 아세안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중심) - 계속

HSK	품 목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변화율 ('02~'04)
2104-10-2000	어류의수우프, 브로드와 제조용조제품	1.35	1.72	0.08	-75.04
0302-69-9090	기타어류(신선, 냉장)	0.00	0.00	0.00	-75.11
0307-99-3120	바지락(염장, 염수장)	4.64	2.49	0.20	-79.23
0307-91-1200	전복(산 것/신선, 냉장)	0.01	0.00	0.00	-80.14
0307-29-1000	가리비과의 조개(냉동)	1.01	0.72	0.03	-82.80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